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이정림·최정원·최윤경

연구보고 2019-16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책임자 **이 정 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16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14-2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최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하나의 통합 기관 형태로 만들어서 취약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의 법적 권리가 확대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다, 이후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로 전환이 강조되면서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새로운 보호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신설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아동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인한 발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집단시설보호가 상대적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환경적인 상황 및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 아동보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위탁모, 아동,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해 주신 학계 교수님들, 현장 전문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연구 결과가 아동보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이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7
4. 연구의 범위	23
II. 연구의 배경	27
1.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29
2. 아동보호시설 지원 현황	38
3. 해외 사례	47
III. 아동양육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69
1. 조사 참여자 특성	71
2. 양육시설 거주 아동 특성	72
3. 원가정 교류	80
4.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83
5. 종사자 현황	89
6. 소결	95
I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99
1. 면담 참여자 특성	101
2.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에 관한 면담 분석	103
3. 소결	172
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발달 현황	183
1.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한 발달 특성	185

2. 아동보호시설의 양육자 면담을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195
3. 아동보육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203
4. 소결	208
VI.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211
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	213
2.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216
참고문헌	229
Abstract	235
부록	237
부록 1. 설문지	237
부록 2. 면담 질문지(5종)	248
부록 3. MSSB 주요 범주 및 점수 체계	253



표 목차

〈표 Ⅰ-3-1〉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8
〈표 Ⅰ-3-2〉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보육사 대상 설문내용	19
〈표 Ⅰ-3-3〉 심층면담 참여자 수	20
〈표 Ⅰ-3-4〉 위탁가정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20
〈표 Ⅰ-3-5〉 아동양육시설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21
〈표 Ⅰ-3-6〉 공동생활가정 및 일시보호시설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21
〈표 Ⅰ-3-7〉 애착표상(MSSB) 검사 참여 유아 수	22
〈표 Ⅰ-4-1〉 본 연구의 아동보호시설 범주	25
〈표 Ⅱ-1-1〉 보호필요아동 발생 수 및 발생원인	30
〈표 Ⅱ-1-2〉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현황	32
〈표 Ⅱ-1-3〉 위탁가정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36
〈표 Ⅱ-1-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37
〈표 Ⅱ-2-1〉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41
〈표 Ⅱ-2-2〉 일시보호시설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4])	42
〈표 Ⅱ-2-3〉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43
〈표 Ⅱ-2-4〉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44
〈표 Ⅱ-2-5〉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인건비, 운영비)	45
〈표 Ⅱ-2-6〉 위탁가정 지원	47
〈표 Ⅱ-3-1〉 2019년 지원금	51
〈표 Ⅱ-3-2〉 연령별 가정 외 보호 아동 현황	52
〈표 Ⅱ-3-3〉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52
〈표 Ⅱ-3-4〉 양육자 유형별 현황	53
〈표 Ⅱ-3-5〉 연령별 가정 외 보호 아동 현황	57
〈표 Ⅲ-1-1〉 조사 참여자 특성	71
〈표 Ⅲ-2-1〉 1인당 돌봄 영아 수; 영아만 돌보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73
〈표 Ⅲ-2-2〉 1인당 돌봄 유아 수; 유아만 돌보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74
〈표 Ⅲ-2-3〉 1인당 돌봄 영유아 수;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75
〈표 Ⅲ-2-4〉 현 시설에 온 주된 이유	76

〈표 Ⅲ-2-5〉 이전 보호 유형	77
〈표 Ⅲ-2-6〉 학원 이용 영유아 유무 및 영유아 수	78
〈표 Ⅲ-2-7〉 사교육 비용 주된 출처	79
〈표 Ⅲ-2-8〉 사교육 비용 부담 수준	79
〈표 Ⅲ-3-1〉 원가정과의 교류 여부	81
〈표 Ⅲ-3-2〉 주로 교류하는 사람	81
〈표 Ⅲ-3-3〉 원가정과의 교류 빈도	82
〈표 Ⅲ-3-4〉 원가정과의 교류 방식	82
〈표 Ⅲ-3-5〉 부모와의 연락 가능성	83
〈표 Ⅲ-4-1〉 정책 만족도	84
〈표 Ⅲ-4-2〉 개선 시급 정책 - 1순위	85
〈표 Ⅲ-4-3〉 개선 시급 정책 - 1+2+3순위	86
〈표 Ⅲ-4-4〉 아동양육시설 국가 지원 금액 충분성	87
〈표 Ⅲ-4-5〉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	88
〈표 Ⅲ-5-1〉 주된 근로형태	89
〈표 Ⅲ-5-2〉 본인 업무량에 대한 의견	90
〈표 Ⅲ-5-3〉 본인 급여 수준에 대한 의견	91
〈표 Ⅲ-5-4〉 이직 경험 유무 및 횟수	93
〈표 Ⅲ-5-5〉 필수교육 이외 교육	94
〈표 Ⅳ-1-1〉 양육시설 종사자 면담	102
〈표 Ⅳ-1-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102
〈표 Ⅳ-1-3〉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103
〈표 Ⅳ-1-4〉 가정위탁 종사자	103
〈표 Ⅳ-1-5〉 가정위탁 위탁모	103
〈표 Ⅴ-1-1〉 MSSB 대상 아동	186
〈표 Ⅴ-1-2〉 아동보호시설 유아와 일반 유아의 내적표상 하위 범주 평균 비교	188
〈표 Ⅴ-3-1〉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영유아 유무	204
〈표 Ⅴ-3-2〉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형 - 1순위	205
〈표 Ⅴ-3-3〉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형 - 1+2+3순위	206
〈표 Ⅴ-3-4〉 재활프로그램 받는 영유아 수	207



그림 목차

[그림 Ⅰ-2-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육아지원 방안 5차년도 연구계획	17
[그림 Ⅱ-1-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원인	31
[그림 Ⅱ-1-2]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조치현황	33
[그림 Ⅱ-1-3] 연도별 위탁가정 현황	33
[그림 Ⅱ-1-4] 보호아동 발생 시 흐름도	35
[그림 Ⅱ-2-1] 아동보호시설 전달체계	40
[그림 Ⅱ-2-2]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절차	46
[그림 Ⅱ-2-3] 일반 위탁가정 절차	46
[그림 Ⅱ-3-1] 2018년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58
[그림 Ⅱ-3-2]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64
[그림 Ⅱ-3-3] 가정 외 보호 기간 현황	64
[그림 Ⅵ-2-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216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3-1〉 유아의 내적 표상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 코드의 주요 범주 및 조작적 정의	253
--	-----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아동보호시설의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설아동의 양육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환경적인 상황 및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나. 연구내용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 등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현황을 파악함.
- 아동보호시설별 보호대상 영유아의 현황 및 보호조치 과정을 파악함.
- 아동보호시설 영유아를 위한 양육 지원 실태, 지자체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업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특성, 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 종사자별 인력 자격 및 체계를 파악함.
- 아동보호시설별 영유아의 양육환경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함.
-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한 최적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담당 보육사 대상 설문조사
 - 보육사 263명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현황, 원가정 교류, 종사자 현황,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응답자 인적 사항을 조사함.
- 집단 면접 및 심층 면담
 -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종사자 및 기관장을 포함하여 총 36명의 심층면담을 실시함.
- 유아대상 애착표상(MSSB) 검사 실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MSSB를 실시하여 유아 내적 실행 모델에 관하여 측정함.
- 아동보호시설 방문

라. 연구의 범위

- 아동보호시설 정의 및 범위
 -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을 보호필요아동이 원가정 복귀전이나 자립이전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나 사람으로 지칭함.
 - 이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 아동보호시설의 범위를 설정함.

2. 연구의 배경

가.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보건복지부는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함.
-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아동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유형별로는

미혼출산 및 혼외자, 부모 이혼으로 인한 발생은 점차 감소하나, 학대나 유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2018년 기준 양육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 순으로 조치함. 연도별로 양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입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조치 시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입양 → 위탁가정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의 순으로 보호하도록 함.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위탁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나. 아동보호시설 지원 현황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의 법적 권리가 확대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고,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로 전환이 강조되면서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새로운 보호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이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신설
- 아동보호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됨.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하며, 민간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 및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인건비 기준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음.

다. 해외 사례

□ 뉴질랜드

- 아동은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족에게서 분리 조치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가족 또는 후견인, 친척 및 문화적·사회적 이해집단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아동에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관련된 서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가정법원과 아동의 상황을 검토함.

□ 호주

-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정책의 우선순위임.
-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약 6%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아동(93%)이 위탁 가정에 배치되어 있음.

□ 미국

- 아동 복지의 목표는 아동의 가족이 가정 내에서 아동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의 웰빙, 영속성 및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임.
-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영구계획(Permanency Plan)을 세우고, 12개월마다 영구 계획 심의를 열게 되어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까지 시설보호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과 현 시점에서의 탈시설화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가정 복귀를 위해 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 보호필요아동 및 원가정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의 영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아동양육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및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서울, 경기, 충남, 마산 지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만0세부터 만6세까지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육사 263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요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아동 50인 미만 시설에 종사 33.8%, 50인 이상 시설 종사하는 경우는 66.2%, 연령은 20대 36.9%, 30대 31.2%, 40~50대 31.9%, 경력의 경우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였음.
-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 53.2%, 대졸 이상 46.8%, 응답자가 영아만 돌보는 경우가 34.2%, 유아만 돌보는 경우 38.4%, 영유아 모두 돌보는 경우가 27.4%로 나타남.

가. 양육시설 거주 아동 특성

- 종사자 배치 현황이 0~2세는 평균 4.2명, 유아는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영아의 경우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에 들어오는 영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많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으나, 영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과 환기가 필요.
 -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7세 이상 아동의 배치기준도 초과한 수준임.
- 보호필요아동 발생원인은 영유아 모두 베이비박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1순위 기준 영아 82.1%, 유아 72.3%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유입됨.
- 시설거주 영유아의 사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39.5%의 영유아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출처는 1순위 기준 후원금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 운영금 52.9%, 학원비 면제 14.4% 순임.
 - 보육사들은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 원가정 교류

- 원가측과 교류 여부에 대해서 교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영아 89.5%, 유아 87.3%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 거주 영유아들이 원가정과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호필요아동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베이비박스 유기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
- 교류하고 있는 경우(전체 영아의 10.5%, 전체 유아의 12.7%), 주 교류 대상은 영유아 모두 어머니(영아 56.5%, 유아 68.3%), 아버지(영아 29.0%, 유아 20.8%) 순으로 나타남.
 - 교류빈도는 영아는 한 달에 1번, 1년에 1번 정도, 6개월에 1번 정도 순이었으며, 유아는 3개월에 1번 정도, 6개월에 한번 정도, 1달에 1번 이상 순으로 나타남. 교류방식은 원가정이 아동을 방문하는 경우가 영아 88.7%, 유아 72.3%로 가장 많았음.

- 전체 영유아의 각 3.8%, 4.2% 만이 필요 시 부모와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다.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대체인력과 관련된 정책, 보육사의 보호자로서의 법적 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공간 기준이 순으로 나타남.
- 개선이 시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36.9%, 보육사 대 아동비율이 16.7%, 아동양육비원지원이 14.1%, 양육시설종사자 권리보장이 7.6% 순으로 나타남.
- 지원 금액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라. 종사자 현황

- 보육사의 주된 근로형태는 대부분의 경우가 2조 격일(57.0%), 2조 2교대임(30.4%).
- 본인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3.7%,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34.2%, 매우 과중하다는 응답이 14.4% 순으로 나타남.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육사들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보통 이상의 불만족함을 보임.
- 보육사 대 아동의 비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보육사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음.
 - 법정 배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육사의 업무를 줄이고, 처우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낮춰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

4.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가. 면담 참여자 특성

- 면담 참여자 36명 중, 양육시설 종사자가 총 12명,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8

명, 일시보호시설 종사자가 5명, 위탁지원센터 종사자가 4명, 위탁모가 7명이 면담에 참여함.

나.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에 관한 면담 분석

□ 시설 현황 및 특성

- 일시보호시설은 크게 지자체 사업으로 양육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 소규모 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운영 및 기능이 상이함.
- 양육시설은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이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위탁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양육 보조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가정위탁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있으며, 이는 지역 및 위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 현황 및 특성

- 일시보호의 경우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부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까지, 배치의 주된 이유가 보다 다양한 것으로 조사됨.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유기 및 학대로 인한 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반가정위탁 면담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계기로 위탁을 시작하였으며, 모두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정 외 보호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친인척 위탁 아동들은 다양한 배치 이유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남.
- 원가정 교류는 아동과 아동 부모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어려움 및 개선 요구

- 가정위탁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 지적됨.
-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 체계적인 원가정 대상 교육, 지원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에 대한 다각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법적 절차 및 권한에 따른 어려움 및 개선 요구는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인력부족은 대부분의 시설이 겪고 있는 고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다각적 처우 개선이 시급함.
- 시설 아동 양육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은 모든 가정 외 보호시설 유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운영비 및 양육비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공무원들의 현장 이해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정 외 보호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됨.

5.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발달 현황

가.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한 발달 특성

- 유아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총 15명을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과제(MacArthur Story Stem Battery: MSSB)를 진행함.
- 분석 결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수준, '회피/위축' 수준,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 뿐 아니라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은 없었음.

나. 아동보호시설의 양육자 면담을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들은

언어, 학습, 정서 등 다각적 측면에서 발달이 더딜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됨.

- 일반위탁 가정의 아동들 중, 수면 장애 및 분리불안을 겪는 아동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 아동보육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반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발달적 장애로 언어발달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양육시설에서 평균적으로 1.4명 정도의 영유아가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가.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

- 가정과 같은 성장 환경 제공
 - 영유아들을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아동보호시설이 나아가야할 전반적인 방향을 제안함.
 - 원가정이 있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함.
 - 보호 필요 영유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가정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원가정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가정 복귀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과 개입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가 원가정에 복귀해서 성장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원가정의 문제가 극복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영유아가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부모의 영유아 유기 등으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위탁가정에서 이러한 영유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나.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를 포함한 영아 양육 지원의 내실화, 아동보호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제안함.

-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원가정 복귀 우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사례 관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유기되는 영아가 가능한 위탁가정 등으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 해당 부서에서 위탁가정 풀에 대한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 유기 영아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아동 대 보육사의 배치 기준에 따른 보육사 배치 현실화, 영유아 담당 보육사 배치 전 사전 교육 의무화, 양육시설 기능과 역할 전환 지원을 통한 탈시설화 추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식 개선 등의 아동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방안 제안

□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의 내실화

- 영유아의 배치 체계 정비 및 현실성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함.
- 최근 신설된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양육시설 중앙 기관을 구성하여 포함되도록 해야 함.
- 가정위탁 등의 활성화 방안으로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체계 개편이 필요함.
- 종사자 근무 여건 향상 및 복지를 위해서 보조 인력 배치 등의 추가 인력 배치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함.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종사자(부모) 교육,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의 범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정부에서는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9.¹⁾). 해당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7월에 아동권리 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 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입양과 학대 관련 중앙기관이 통합된 형태로 아동양육시설 등을 전담하는 중앙기관의 부재로 이들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7년 기준 보호필요아동현황을 살펴보면 총 4,121명으로 2010년 8,590명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들었으나(보건복지부, 2018c), 보호필요아동들이 질 높은 양육환경에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부모 빈곤, 학대, 실직 등으로 인한 수가 2,769명으로 67.2%, 미혼모부의 자녀 중 양육을 포기한 경우가 850명(20.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²⁾. 2017년 기준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유형으로는 시설보호가 2,421명(5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탁가정이 1,413(34.3%), 입양은 285명 이었다³⁾. 입양(민법상의 입양은 미포함)의 경우 2010년의 1,393명⁴⁾에 비해 매우 줄어들었는데, 이는 각 국가가 아동보호체계를 개발하고 영구가정 배치로 국내 입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헤이그입양협약(중앙입양원, 2019) 이후로 국제입양보

1) 보건복지부(2019.2.19.). 알립, 보도자료,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1&CONT_SEQ=347826 (2019.3.11. 인출)

2)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2019. 3. 11. 인출)

3) 2)와 동일

4) 2)와 동일

다는 국내입양 우선 배치의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면서, 국외 입양이 줄어들면서 나타는 양상으로 여겨진다.

보호필요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만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아동의 생활과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활동·지도를 위해 아동위원이 신설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고 결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등의 역할은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도 간과할 수 없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집단으로 생활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아동들이 사회, 정서발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유아, 아동의 기본적인 사회적 능력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부모의 존재를 통해 배우고 발달해나 가게 된다(김은경·도현심·김민정·박보경, 2007). 하지만, 아동보호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들은 양육자와 1:1의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갖기가 어려우므로, 사회심리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보호시설의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설아동의 양육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 등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시기는 발달적으로 주양육자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건강한 사회적 유대감, 정서적 안정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친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성장하는 영유아들과 달리 부모 외의 다른 양육자에 의해서만 돌봄을 받고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의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세대의 사회적 책무이다.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의 범주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법적 범위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 대신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원가정 복귀전이나 자립 이전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나 사람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는 아동보호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의 경우, 각기 다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 등은 없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들의 규모 및 입소 조건, 연령 및 생활환경을 파악함으로써,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인 위탁가정,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 돌봄이 아닌 소그룹 형태의 돌봄을 받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하는 영유아가 친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 어떤 특성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특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과 같은 환경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 영유아시기에 이상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게 된 배경 및 양육 환경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후 학령기 및 청소년과 성인 시기의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시 1단계로는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시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일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30).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이긴 하지만 일시보호시설이 어린 영유아의 양육에 적절한 환경인지, 마찬가지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위탁모에 대한 관계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등에 관한 파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배경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추세로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정의 보호가 어려워 원가정에서 발달하고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 건강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 등을 파악하여,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영유

아에게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환경적인 상황 및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돌봄취약 계층으로 고려되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년 연속과제 중 5차년도 연구로, 5개년 연속과제의 내용은 다음 [그림 I-2-1]과 같다.

본 연구인 5차년도 연구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 등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현황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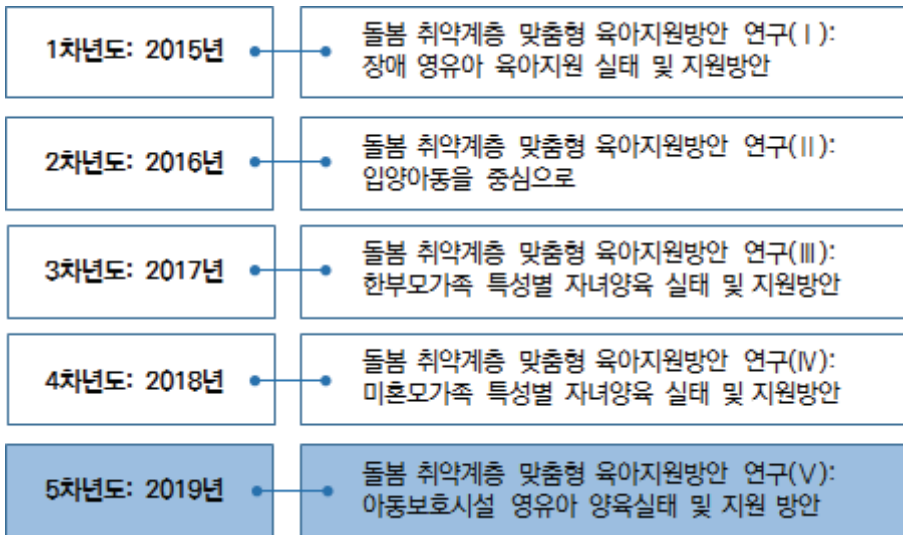
둘째,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보호대상 영유아의 현황 및 보호조치 방법을 파악한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영유아가 처음 신고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에 관하여 파악한다.

셋째,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아동보호시설 영유아를 위한 양육 지원 실태를 파악한다. 전국 지자체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대상 사회복지사 등 업무를 파악한다.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특성, 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 종사자별 인력 자격 및 체계를 파악한다.

넷째, 아동보호시설별 영유아의 양육환경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한다. 아동보호시설 유형에 따른 영유아 양육의 애로점, 육아지원 요구 등을 파악한다.

다섯째,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한 최적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한다.

[그림 I-2-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육아지원 방안 5차년도 연구계획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첫째, 아동보호시설 입소 현황 및 보호필요아동 발생 요인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아동보호시설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외 아동보호시설의 아동 및 운영 현황, 정책 방향 및 지원 현황, 전달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뉴질랜드, 호주 및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방향 및 내용 관련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및 지지체의 담당 공무원과의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정책적 현안을 반영하여 정책제언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구분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1차	2. 15.	인애복지재단 대표이사 (사회복지 전공 교수)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검토
2차	3. 6.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 중앙입양원 과장(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단)	아동보호시설 범위 선정 및 전달체계 관련
3차	5.29.~31.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 사회복지관 관장 1인	아동양육시설 설문지 검토(서면 검토)
4차	6. 11.	서울시아동복지협회 관계자 2인	아동양육시설 설문지 검토 및 조사 협조 방안
5차	6. 13.	사회복지 전공 교수 2인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차	7. 11.	보건복지부 서기관 1인 보건복지부 주무관 1인 시도 담당 공무원	아동양육시설 현황 관련 논의 (아동배치 및 보육사 근무형태 등)
7차	11. 5.	사회복지 전공 교수 2인	연구 결과 및 정책 방향
8차	11. 21.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1인	정책 방안 검토

다.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담당 보육사 대상 설문조사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현황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에서 영유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 264명 정도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현황, 원가정 교류, 종사자 현황,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응답자 인적 사항을 조사하였다(표 I-3-2 참조). 설문조사 대상이 되는 아동 보육사는 영유아를 한명이라도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로 초등학교 이상 아동만을 담당하는 보육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방법은 서울시아동복지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해당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 담당 보육사가 있는 기관에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과 함께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설명문을 전달하여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추가적으로 경남지역 아동양육시설의 협조를 얻기 위해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협조 의사를 밝힌 기관에 대하여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사전문업체에서 구축한 URL 링크 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해당 기관 소속의 영유아 담당 아동보육사에게 발송하며, 해당 보육사는 개별적으로 받은 링크를 통해 설문 조사 사이트로 이동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모바일에서도 온라인 설문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URL 링크를 구축하였다.

웹 조사 사이트에서 본 설문을 시작하기 전 화면에 연구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설명하고, 웹상에서 동의를 하고 설문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후속 설문 진행이 불가능하도록 로직을 설정하여, 결과의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참여자가 조사 완료자로 잘못 집계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런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는 받지 않고자 하였다. 개별 참여자가 설문 응답을 완료하면 서버에 응답 정보가 자동 전송 및 저장되며, 이후 데이터로 전환되었다.

〈표 I-3-2〉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보육사 대상 설문내용

구분	설문내용
시설 현황	- 시설명, 주소, 전체 보호 아동 수, 영유아 수, 종사자 수, 아동담당 보육사 수, 시설 총 규모
영유아 양육 현황	- 보육사가 돌보고 있는 아동 수, 연령별 돌봄 아동 수, 아동의 이전 보호 유형 경험, 아동 발달에 대한 의견, 아동의 정규학교 이외 학원 교육 현황
원가정 교류 현황	- 원가정 교류 여부, 교류 대상, 교류 빈도 및 방법, 보육사와 아동 부모와의 연락 상황
종사자 현황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교대근무 형태, 업무량, 급여 만족도, 이직 경험, 종사자 교육 경험 및 빈도, 유관기관 담당자의 관계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 아동양육시설 정책에 관한 만족도, 개선사항, 국가지원 필요 부문
응답자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자격증

라. 집단 면접 및 심층 면담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종사자 및 기관장을 포함하여 총 41명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표 I-3-3 참조).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및 양육시설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업무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서 면담 대상자를 구하고자 하며,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중앙가정위탁센터를 통하여 지자체 가정위탁센터와 연계하여 위탁모를 소개받으려 하였다. 협력 기관에 공문과 설명 자료를 전달하여 조사와 관련한 사항 일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표 I-3-3〉 심층면담 참여자 수

구분		샘플수	
위탁가정 종사자	가정위탁센터 종사자	4명	총 11명
	위탁가정	7명	
양육시설 종사자	시설장	5명	총 12명
	아동보육사	7명	
공동생활가정 및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총 8명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총 5명	
합계		총 36명	

대상별 1:1 혹은 집단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진행을 통해 돌봄 현황 및 지원 등에 대한 종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아동보육 담당자 대상 심층면담 내용은 보육 담당자 인적사항, 기관현황, 영유아 양육 현황 및 애로 사항, 시설 운영 시 어려움 및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심층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 〈표 I-3-4〉, 〈표 I-3-5〉, 〈표 I-3-6〉과 같다.

〈표 I-3-4〉 위탁가정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대상	면접 내용	하위 내용
	담당자 인적 사항	경력, 전공, 자격증
가정위탁 센터	기관 현황	가정위탁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 위탁가정 현황, 위탁가정 선정 및 배치, 위탁가정 교류 및 관리, 위탁기관으로 아동이 오게 된 주요 배경 및 경로
	위탁가정 애로 사항	영유아 양육에서의 애로점, 위탁센터로 아동이 다시 돌아오는 사례 대처 방안
	시설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시설운영비 내용 및 만족도,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 정책 관련 의견
	위탁가정 특성	위탁아동과의 관계, 위탁아동을 돌본 시기 및 기간, 위탁아동을 맡게 된 배경
위탁가정 위탁모	영유아 양육현황 및 애로 사항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발달 상황, 원가정 교류 여부 및 정도, 양육에서의 애로 사항 및 요구
	위탁가정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가정위탁센터와의 교류 여부 및 빈도, 위탁가정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표 I-3-5〉 아동양육시설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대상	면접 내용	하위 내용
아동양육시설 기관장	인적사항	경력, 전공, 자격증
	기관 특성	보호아동 수, 영유아 수, 현 기관으로 오게 된 배경 및 경로, 보육사 수 및 교대 근무 유형
	시설 운영 어려움 및 개선 요구	시설 운영비 내용 및 만족도, 법·제도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보육 담당자 인적사항	경력, 전공, 자격증
	기관 특성	보호아동 수, 영유아 수, 현 기관으로 오게 된 배경 및 경로, 보육사 수 및 교대 근무 유형
	영유아 양육 특성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발달 상황, 원가정 교류 여부 및 정도, 양육에서의 애로 사항 및 요구
	시설 운영 특성	시설운영비 내용 및 만족도,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 정책 관련 의견

〈표 I-3-6〉 공동생활가정 및 일시보호시설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면접 내용	하위 내용
보육 담당자 인적사항	경력, 전공, 자격증
기관 특성	보호아동 수, 영유아 수, 현 기관으로 오게 된 배경 및 경로, 보육사 수 및 교대 근무 유형
영유아 양육 특성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발달 상황, 원가정 교류 여부 및 정도, 양육에서의 애로 사항 및 요구
시설 운영 특성	시설운영비 내용 및 만족도,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 정책 관련 의견

질적 조사(심층 면담)에서는 귀납적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면담 내용을 녹취록을 작성하고, 녹음과 녹취록을 반복하여 듣고 읽는 과정을 통해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후, 녹취록을 바탕으로 시설 유형별로 귀납적 범주화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에서 추상적인 수준으로(배운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 2016) 보호가 필요한 아동양육현황 및 종사자 현황 등을 개념화하였다. 이후, 시설 유형별 차이점과 유사점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 유아대상 애착표상(MSSB) 검사 실시

MSSB(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를 실시하여 유아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여부,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는지 여부, 어떤 수행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친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주제로 말하는지 여부, 양육자에 대한 표상이 어떠한지 여부, 검사자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유아 내적 실행 모델에 관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를 각각 6명, 3명, 6명으로 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이었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협조를 받아서 해당 기관이나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를 선정하여 MSSB를 실시하였다.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영유아가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기간도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MSSB 검사에서는 제외되었다.

〈표 1-3-7〉 애착표상(MSSB) 검사 참여 유아 수

구분	대상 유아 수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6명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3명
위탁가정의 유아	6명
합계	총 15명

MSSB 검사 실시 절차는 시 지침에 따라 유아와 놀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 완성과제(1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유아의 내적 실행 모델을 측정하였다. 검사 시간은 유아 당 대략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공감/온화(Empathy/Warmth), 불안(Performance Anxiety), 회피/위축(Avoidant/Withdrawal),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Dysregulated Aggression), 정서적 통합(Emotional Integration) 범주로 구성되며, MSSB 그룹으로부터 코딩 훈련을 받은 연구자가 코딩 범주에 따라 점수화 하였다.

바. 아동보호시설 방문

수도권, 경상권 권역 등에서 4~6개 정도의 아동보호시설 유형별(아동일시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로 시설 방문을 통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 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시설장, 종사자 등과의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보호시설 운영, 지역사회 연계 현황, 전달체계, 아동 양육 실태 및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4. 연구의 범위

가. 아동보호시설 정의 및 범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을 포함하여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법적 범위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 대신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을 보호필요아동이 원가정 복귀전이나 자립이전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나 사람으로 지칭하고자 하였다. 보호필요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필요아동은 일차적으로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후에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며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8a: 30). 이러한 일차적인 단계가 충족되지 않을 시, 2단계로 보호필요아동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일시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내어져서 일시보호조치를 받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8a: 30). 긴급복지 지원이나 단기조치를 취했음에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회복되기 어려워 아동이 가정 외 보호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의 보호조치 가능성을 고려한다(보건복지

부, 2018a: 30).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조치 시 1순위 위탁가정, 2순위 공동생활가정, 3순위 아동양육시설을 권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호대상 영유아의 보호시설에서의 양육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 아동보호시설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아동보호시설의 범주를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는 자문회의 내용, 선행연구 등과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체계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대인양육의 유형으로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입양 및 입양 전 위탁가정을 들고 있지만(우석진 외, 2015), 입양은 보호시설 전달체제와 다소 상이한 전달체제로 진행되고 있음과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의 2차년도 연구에서 입양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된 바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최장 6개월만 가능하다는 점과 영유아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마찬가지로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도 영유아가 보호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조치된 아동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다음으로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순으로 아동이 분포되어 있다.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위탁과 위탁 가정, 전문가정 위탁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사례의 위탁가정에 관한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위탁가정이 입양 전 위탁가정과의 차이점 등도 검토해봄으로써 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 연령별로 아동보호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다소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시설로 지정한 각 아동보호시설이 아동의 발달특성에 적합한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표 I-4-1〉 본 연구의 아동보호시설 범주

종류	본 연구에서의 아동보호시설 포함 여부
아동양육시설	O
아동일시보호시설	O
아동보호치료시설	X
공동생활가정	O
자립지원시설	X
위탁가정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일반가정 위탁 -전문가정 위탁	O
입양	X

II

연구의 배경

- 01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 02 아동보호시설 지원 현황
- 03 해외 사례

II. 연구의 배경

1.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가. 보호대상 아동 정의 및 현황

1) 보호대상 아동의 정의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2018a: 4)는 보호대상 아동을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하고 있다.

2) 보호대상 아동 발생원인 및 보호조치 현황

다음 <표 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아동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필요아동 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를 제외하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은 2003년도에 10,222명이었으나, 2013년 6,020명, 2018년 3,918명으로 나타났다.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학대와 미혼출산 및 혼외자 각각 43.7%, 43.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학대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출산 및 혼외자가 15.9%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발생원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혼출산 및 혼외자, 부모 이혼 등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대와 유기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II-1-1).

〈표 II-1-1〉 보호필요아동 발생 수 및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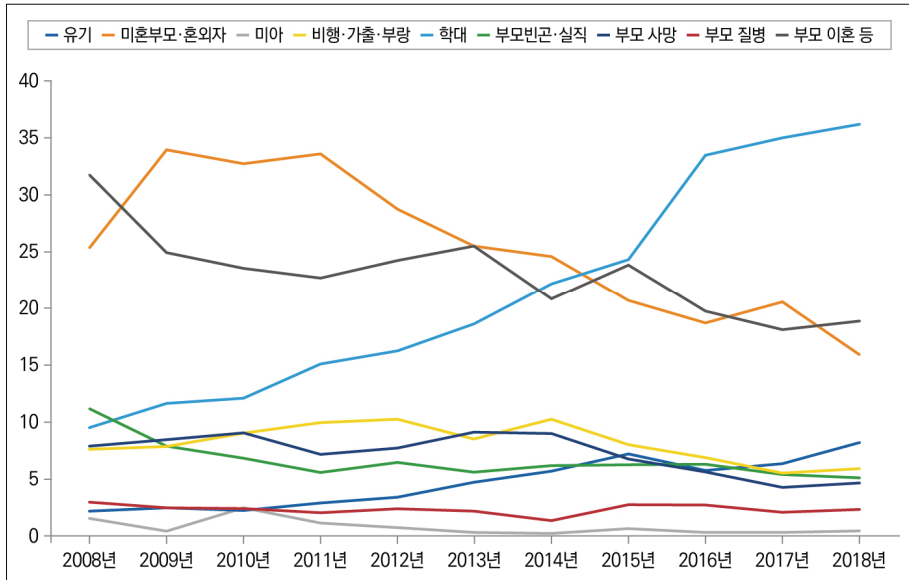
단위: 명(%)

년도	총 발생 아동 수	보호 조치 아동	유기	미혼부 모·혼외 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등
2018년	4,538	3,918 (100.0)	320 (8.2)	623 (15.9)	18 (0.5)	231 (5.9)	1,415 (36.1)	198 (5.1)	284 (7.2)	92 (2.3)	737 (18.8)
2017년	4,850	4,125 (100.0)	261 (6.3)	847 (20.5)	12 (0.3)	227 (5.5)	1,442 (35.0)	223 (5.4)	279 (6.8)	87 (2.1)	747 (18.1)
2016년	5,221	4,583 (100.0)	264 (5.8)	855 (18.7)	11 (0.2)	314 (6.9)	1,532 (33.4)	290 (6.3)	286 (6.2)	126 (2.7)	905 (19.7)
2015년	4,975	4,503 (100.0)	321 (7.1)	930 (20.7)	26 (0.6)	360 (8.0)	1,094 (24.3)	279 (6.2)	301 (6.7)	122 (2.7)	1,070 (23.8)
2014년	6,014	4,994 (100.0)	282 (5.6)	1,226 (24.5)	13 (0.3)	508 (10.2)	1,105 (22.1)	308 (6.2)	450 (9.0)	65 (1.3)	1,037 (20.8)
2013년	6,834	6,020 (100.0)	285 (4.7)	1,534 (25.5)	21 (0.3)	512 (8.5)	1,117 (18.6)	338 (5.6)	545 (9.1)	133 (2.2)	1,535 (25.5)
2012년	8,003	6,926 (100.0)	235 (3.4)	1,989 (28.7)	50 (0.7)	708 (10.2)	1,122 (16.2)	448 (6.5)	533 (7.7)	166 (2.4)	1,675 (24.2)
2011년	8,436	7,483 (100.0)	218 (2.9)	2,515 (33.6)	81 (1.1)	741 (9.9)	1,125 (15.0)	418 (5.6)	536 (7.2)	154 (2.1)	1,695 (22.7)
2010년	9,960	8,590 (100.0)	191 (2.2)	2,804 (32.6)	210 (2.4)	772 (9.0)	1,037 (12.1)	586 (6.8)	772 (9.0)	203 (2.4)	2,015 (23.5)
2009년	10,500	9,028 (100.0)	222 (2.5)	3,070 (34.0)	35 (0.4)	707 (7.8)	1,051 (11.6)	710 (7.9)	763 (8.5)	230 (2.5)	2,240 (24.8)
2008년	11,672	9,284 (100.0)	202 (2.2)	2,349 (25.3)	151 (1.6)	706 (7.6)	891 (9.6)	1,036 (11.2)	732 (7.9)	274 (3.0)	2,943 (31.7)
2007년	11,394	8,861 (100.0)	305 (3.4)	2,417 (27.3)	37 (0.4)	748 (8.4)	5,354 (60.4)	-	-	-	-
2006년	16,008	9,034 (100.0)	230 (2.5)	3,022 (33.5)	55 (0.6)	802 (8.9)	4,925 (54.5)	-	-	-	-
2005년	18,468	9,420 (100.0)	429 (4.6)	2,638 (28.0)	63 (0.7)	1,413 (15.0)	4,877 (51.8)	-	-	-	-
2004년	20,357	9,393 (100.0)	481 (5.1)	4,004 (42.6)	62 (0.7)	581 (6.2)	4,265 (45.4)	-	-	-	-
2003년	21,882	10,222 (100.0)	628 (6.1)	4,457 (43.6)	79 (0.8)	595 (5.8)	4,463 (43.7)	-	-	-	-

주: 보호조치아동은 총 보호필요아동 수에서 귀가 및 연고자 인도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8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2019.6.20. 인출)

[그림 II-1-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원인



자료: 보건복지부(2018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2019.6.20. 인출)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2018년도 기준 양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일시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2 참조).

연도별로 조치 현황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양육시설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위탁가정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경우 대부분이 조부모 및 친인척 위탁이며 일반 가정위탁은 전체 가정위탁의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I-1-3). 그 외 조치현황으로는 2007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도입 이래 감소하였다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양은 2007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 후 증가한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II-1-2).

〈표 II-1-2〉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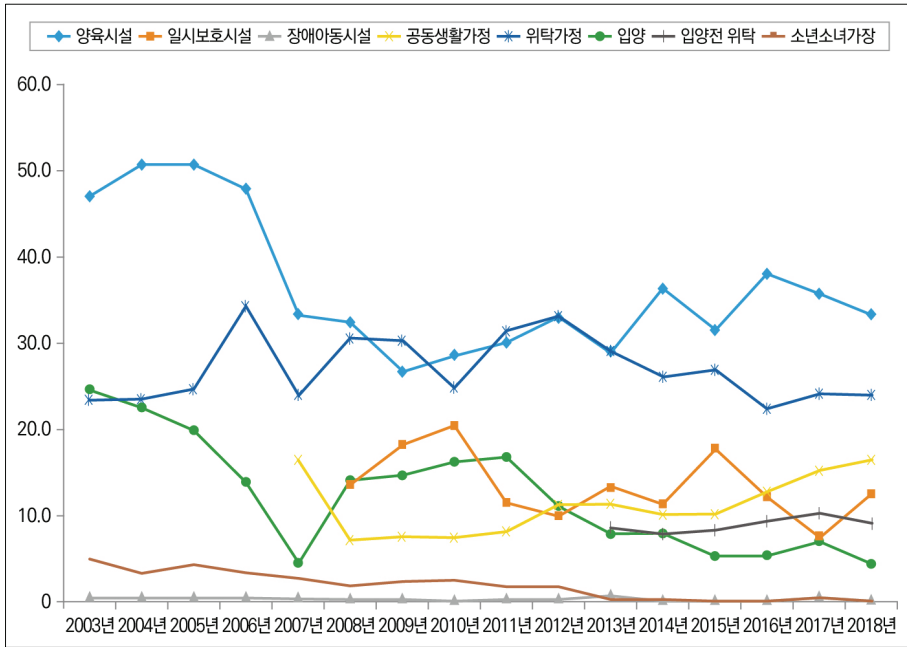
단위: 명(%)

년도	조치 아동	양육 시설	일시보호 시설	장애아동 시설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	입양	입양전 위탁	소년소녀 가정
2018년	3,918 (100.0)	1,300 (33.2)	494 (12.6)	7 (0.2)	648 (16.5)	937 (23.9)	174 (4.4)	357 (9.1)	1 (0.0)
2017년	4,125 (100.0)	1,467 (35.6)	310 (7.5)	19 (0.5)	625 (15.2)	994 (24.1)	285 (6.9)	423 (10.3)	2 (0.0)
2016년	4,583 (100.0)	1,736 (37.9)	548 (12.0)	11 (0.2)	592 (12.9)	1,022 (22.3)	243 (5.3)	425 (9.3)	6 (0.1)
2015년	4,503 (100.0)	1,412 (31.4)	799 (17.7)	13 (0.3)	458 (10.2)	1,206 (26.8)	239 (5.3)	376 (8.3)	0 (0.0)
2014년	4,994 (100.0)	1,818 (36.4)	566 (11.3)	10 (0.2)	506 (10.1)	1,300 (26.0)	393 (7.9)	388 (7.8)	13 (0.3)
2013년	6,020 (100.0)	1,731 (28.8)	801 (13.3)	39 (0.6)	686 (11.4)	1,749 (29.1)	478 (7.9)	516 (8.6)	20 (0.3)
2012년	6,926 (100.0)	2,272 (32.8)	676 (9.8)	25 (0.4)	775 (11.2)	2,289 (33.0)	772 (11.1)	-	117 (1.7)
2011년	7,483 (100.0)	2,246 (30.0)	862 (11.5)	32 (0.4)	612 (8.2)	2,350 (31.4)	1,253 (16.7)	-	128 (1.7)
2010년	8,590 (100.0)	2,445 (28.5)	1,751 (20.4)	23 (0.3)	623 (7.3)	2,124 (24.7)	1,393 (16.2)	-	231 (2.7)
2009년	9,028 (100.0)	2,406 (26.7)	1,640 (18.2)	35 (0.4)	686 (7.6)	2,734 (30.3)	1,314 (14.6)	-	213 (2.4)
2008년	9,284 (100.0)	2,997 (32.3)	1,261 (13.6)	39 (0.4)	667 (7.2)	2,838 (30.6)	1,304 (14.0)	-	178 (1.9)
2007년	8,861 (100.0)	3,206 (33.2)	-	39 (0.2)	17 (16.5)	3,378 (23.9)	1,991 (4.4)	-	247 (2.8)
2006년	9,034 (100.0)	4,313 (47.7)	-	53 (0.6)	-	3,101 (34.3)	1,259 (13.9)	-	308 (3.4)
2005년	9,420 (100.0)	4,770 (50.6)	-	48 (0.5)	-	2,322 (24.6)	1,873 (19.9)	-	407 (4.3)
2004년	9,393 (100.0)	4,744 (50.5)	-	38 (0.4)	-	2,212 (23.5)	2,100 (22.4)	-	299 (3.2)
2003년	10,222 (100.0)	4,782 (46.8)	-	42 (0.4)	-	2,392 (23.4)	2,506 (24.5)	-	500 (4.9)

주: 보호조치아동은 총 보호필요아동 수에서 귀가 및 연고자 인도를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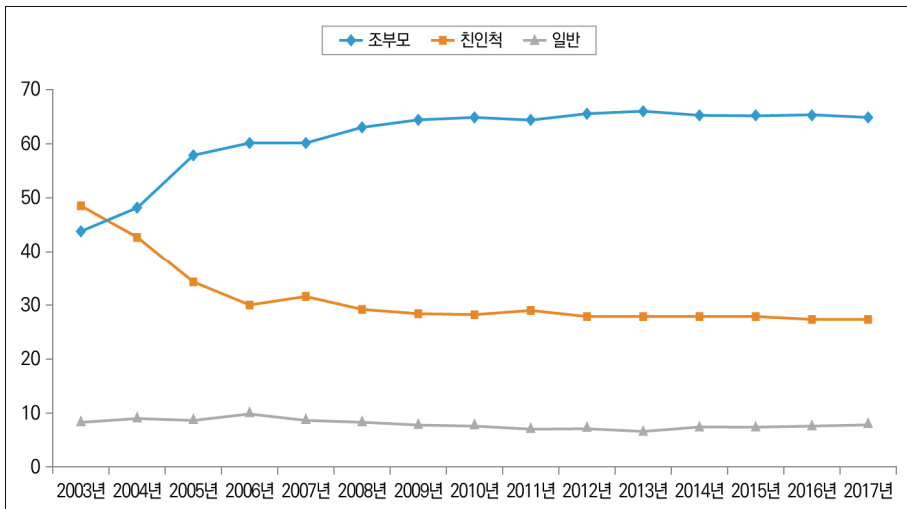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8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12 (2019.6.20. 인출)

[그림 II-1-2]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조치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18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2019.6.20. 인출)

[그림 II-1-3] 연도별 위탁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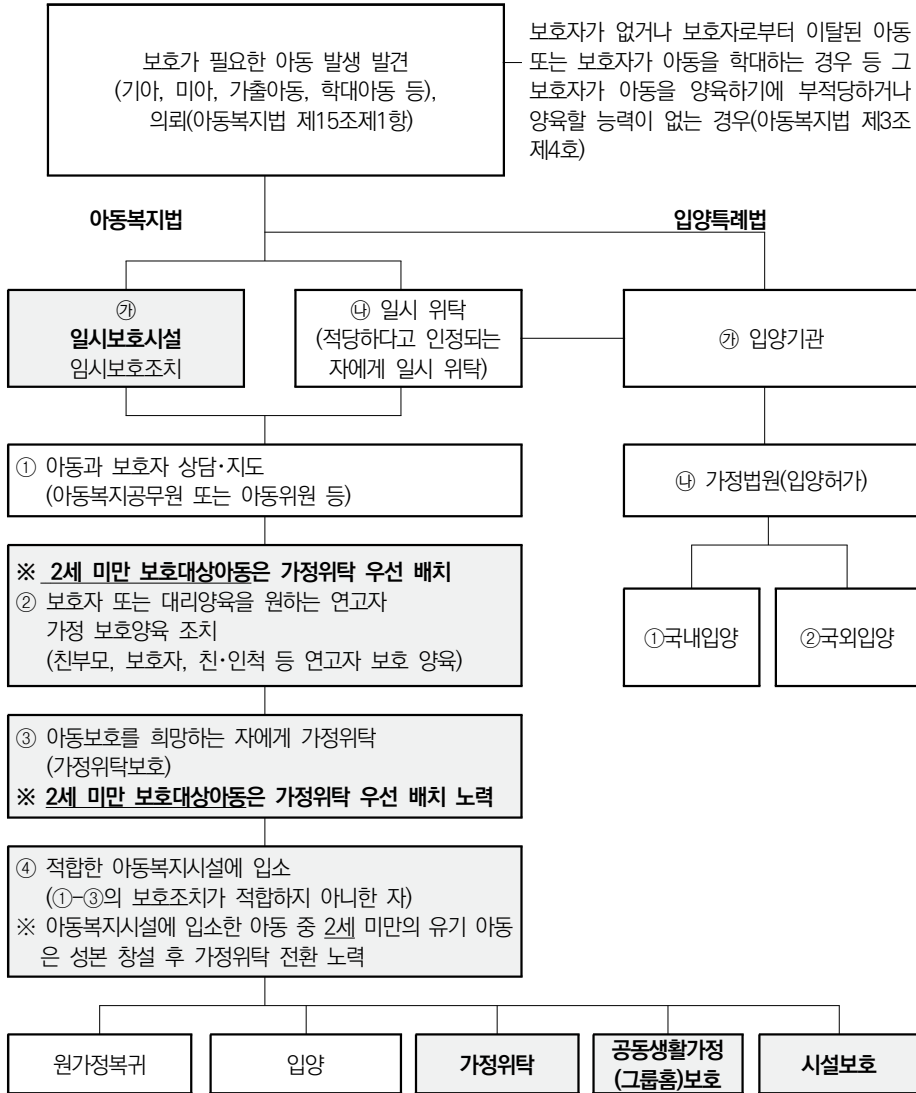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나.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의 방법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2018a: 14)는 아동보호 조치를 할 때는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를 불가피하게 실시해야할 경우에는 국내입양 → 위탁가정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의 순으로 가족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2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2세 미만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성분 창설 후 위탁가정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a: 14, 보건복지부, 2018b: 4). 이에 따른 보호아동 발생 시의 흐름도는 [그림 II-1-3]과 같다.

[그림 II-1-4] 보호아동 발생 시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2018b).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12.

1)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

동법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보호필요아동 발생 시 “아동과 보호자
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행하고,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
에서 보호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고자가정 대

리양육이란 친부모,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위탁가정을 말하며, 아동의 보호자 및 연고자가 보호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른 보호조치 방법보다 우선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b: 4). 이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등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하고, 필요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지원해야한다(보건복지부, 2018a: 10).

2) 위탁가정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위탁가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동법 제3조),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8b: 47). 특히 보건복지부(2018b)는 2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보호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위탁가정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b: 4). 위탁가정의 종류는 <표 II-1-3>과 같다.

<표 II-1-3> 위탁가정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종류	내용	비고
대리양육 위탁가정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위탁가정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위탁 가정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2세 이하 아동 혹은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 별도예산 편성하여 운영 가능
일시위탁가정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	

자료: 보건복지부(2018b).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50, 60.

3) 아동복지시설 입소

동법 제15조제1항제4항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5조제4항에서는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2018b: 4)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2세 미만의 유기 아동은 성본의 창설 후 위탁가정 보호로 전환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보호조치, 특히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입소는 최소한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동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표 II-1-4>과 같다.

<표 II-1-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종류	내용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우선 보호조치

자료: 보건복지부(2018a). 2018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1.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중 영유아가 거주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이 중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아동보호시설을 소규모 가정형태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형태로 전환하고자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로 신설되었으며, 아동 5~7인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8b: 112).

4)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동법 제15조제1항제5호는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5) 입양

동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하도록 한다.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의뢰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조치로(보건복지부, 2018a: 11), 보호자가 입양을 원하는 경우에도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원가정 보호, 대안 양육 제도 등을 설명하여 보호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 2018a: 11).

2. 아동보호시설 지원 현황

가. 아동보호시설의 연혁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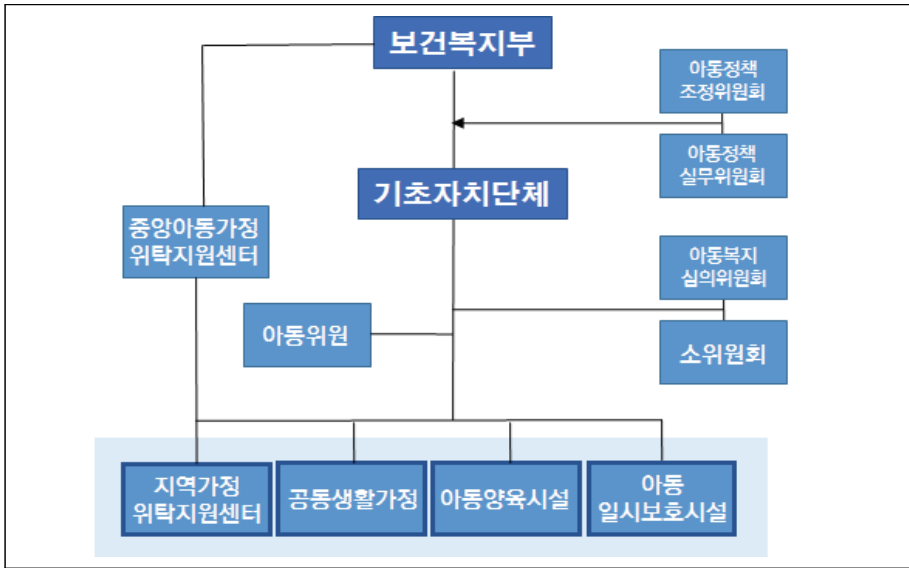
아동보호시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과 빈곤 상황 속에서 빈민 아동을 위한 의식주 해결, 전쟁피해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점점 증가하던 시설은 고아들의 성장과 가족계획 등으로 보호필요아동의 감소에 따라 감소하였다(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2003; 보건복지가족부, 2009: 3, 재인용). 이후 관계법이 정비되면서 아동 특성에 따른 시설 분류,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제도 규정 등을 통해 아동보호시설은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1980년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등 11개로 분류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3). 1990년 시설입소아동이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정부는 해체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시설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4). 또한,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각 시군구의 공립아동상담소 13개소가 3개소로 감

소하면서,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전문성이 약화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4). 이후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의 법적 권리가 확대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고, 대규모 집단을 수용 가능한 시설 위주의 보호로부터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로의 전환이 강조되면서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새로운 보호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이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신설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4, 보건복지부, 2019b: 113). 이처럼 과거 아동보호시설의 역할은 고아들을 집단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보호필요아동의 대부분이 고아가 아닌 학대나 빈곤, 가정 해체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 및 보호를 넘어 보다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동의 문제를 치료하고 건강한 발달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장인협·오정수, 2000; 보건복지가족부, 2009: 4, 재인용).

나. 아동보호시설 전달체계

우리나라 아동보호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되며,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민간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김형태·노혜련·김진석·이수천·조소연·이유진, 2017: 20). 공공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서 아동복지시설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중앙정부는 전체 아동복지 예산 배정과 지도 감독을 수행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각 시설에 운영비 지원 및 감독을 실시한다(김형태 외, 2017: 20). 민간전달체계는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은 민간에서 설립 및 운영하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형태이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된다(김형태 외, 2017: 21-22).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되며, 중앙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 위탁으로 운영된다(김형태 외, 2017: 22).

[그림 II-2-1] 아동보호시설 전달체계



자료: 김형태·노혜련·김진석·이수천·조소연·이유진(2017).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기독대학교, p. 23.

다. 시설 및 지원 기준

1)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양육시설

가) 시설기준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양육시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50m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거실공간은 아동 1명당 6.6㎡ 이상이며,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하며, 심리검사 및 치료실 10.5㎡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9b). 또한 종사자 포함 급식인원 50인 이상 시설은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b).

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5]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시설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지도사 또는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구분하여 각 종사자별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영유아와 관련이 있는 시설

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지도사,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표 II-2-1>과 같다.

<표 II-2-1>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직종별	자격기준
아동복지 시설의 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 상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일시보호시설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배치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1]에 따라 법정기준 종사자를 배치하되, 개정된 근로기준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교대 인원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151-153). 종사자 배치기준은 <표 II-2-2>과 같다.

<표 II-2-2> 일시보호시설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4])

종사자	30명 이상	30명 미만 10명 이상	10명 미만
시설장	1명	1명	1명
사무국장	1명	-	-
의사(또는 촉탁의사)	1명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	-
사무원	1명	1명	-
영양사	1명	-	-
보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까지: 아동 2명 1명 •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생활복지사	1명(30명 초과 시 1명 추가)	-	-
상담지도원	필요인원	-	-
임상심리 상담원	1명	-	-
조리원	1명(3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
위생원	1명	-	-

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양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보장시설로 일시보호시설 및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시설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은 <표 II-2-3>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외국국적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의 생계비는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157).

〈표 II-2-3〉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현원)	월평균 급여액	(참조) 1식 단가
전체평균	241,697	2,425
30인 미만 시설	252,812	2,571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229,504	2,248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20,652	2,212
300인 이상 시설	220,635	2,206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x x iv.

또한 보건복지부(2019b)는 관리운영비에 대한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운영비는 개소 당 월 60만원으로 필요 시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정액 지원하도록 하나, 실 비용을 고려하여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157). 또한 아동 개인별 지원액은 양육시설은 1인당 월 127,790원, 일시보호시설은 202,140원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은 1년 중 가장 많은 아동을 보호하는 월의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9b: 157).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 운영 및 시설 기준

공동생활가정은 남녀분리형과 남녀혼합형이 있으나, 신규신고시설은 미취학 아동까지만 혼합이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상은 분리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9b: 114).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설치 장소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82.5㎡ 이상의 주택형 숙소로 50m 주위에 청소년 우해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b: 116-117). 복도 및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 면적은 아동 1인당 6.6㎡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여야 하며,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이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b: 116). 또한, 임차료 및 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영비가

지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료 총당계획 등을 고려하며, 부채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종사자

공동생활가정에는 시설장 1인과 보육사는 보육사 배치 기준에 따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표 II-2-4). 종사자는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보호하며, 아동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 양육하고, 시설 내 성범죄 및 학대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b: 121).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마다 신입 종사자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종사자는 아동 성폭력 예방, 안전, 학대 예방, 권리교육 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b: 121).

〈표 II-2-4〉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종사자	배치 기준
시설장	1명
보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까지: 아동 2명 1명 •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다) 운영비 및 인건비 기준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생계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통해 지원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9a)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부양능력 있는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보건복지부, 2019b: 126). 이 경우 공동생활가정은 일반 수급자로 지정되며, 수급비는 시설의 회계에 산입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9b: 126)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공동생활가정은 5~7인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입소 아동이 감소하거나 신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표 II-2-5〉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114)

〈표 II-2-5〉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인건비, 운영비)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0인
전액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미지원 (지원시설중 아동퇴소등으로 입소아동 0명 발생시설은 이후 1개월까지만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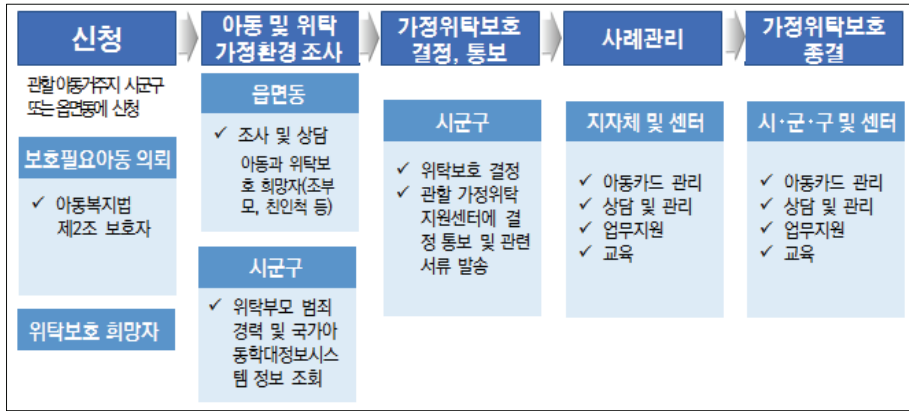
이에 대한 인건비로는 1년에 1인당 인건비 26,189천원이 지원되고, 운영비로는 개소 당 월 323천원이 지원되며,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b: 125). 각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이나 외부후원금을 통해 인건비 추가 지급이나, 추가 인력 고용이 가능하지만,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해당 직위, 해당호봉의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9b: 125).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이 가능하며,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을 따른다(보건복지부, 2019b: 125).

3) 위탁가정

가) 선정 기준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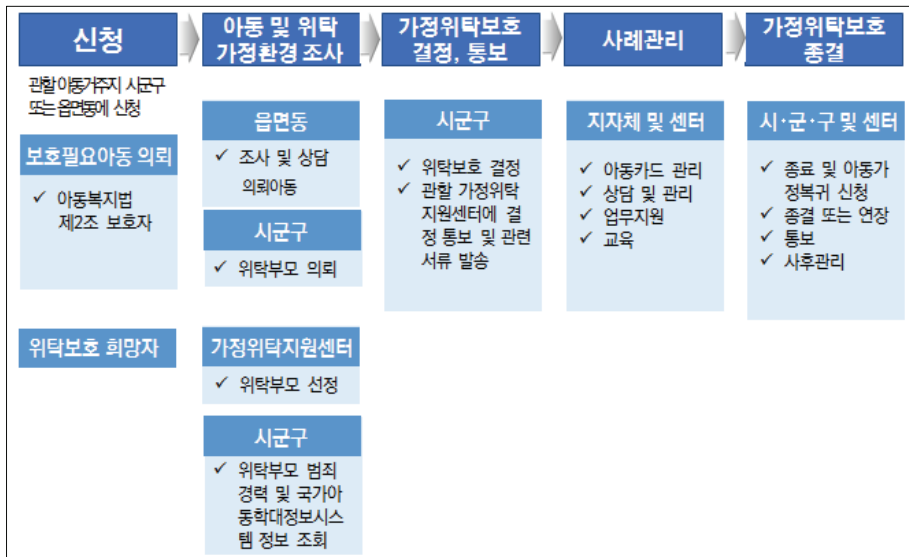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UN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2013년 추가지정을 금지하고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발굴하여 가정에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99-100). 위탁가정은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위탁가정, 조부모 제외한 친·인척 위탁가정, 위탁 가정이 있으며, 위탁가정 선정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적합한 수준의 소득, 25세 이상(부부 모두), 아동과의 60세 미만의 나이 차, 자녀 수가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탁가정 희망 시 기본 4시간의 위탁부모양성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도 받아야한다.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 절차 및 위탁 가정 절차는 각각 [그림 II-2-2], [그림 II-2-3]와 같다.

[그림 II-2-2]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52. 그림 재구성.

[그림 II-2-3] 일반 위탁가정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53. 그림 재구성.

나) 지원 내용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200천원 이상의 양육보조금 지원을 권고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68).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에 의해서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며, 해당급여를 별도가구로 보장하여 아동 개인단위로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19b: 68-69). 또한, 위탁가정보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동시에 책정하도록 하며, 양육보조금은 위탁가정보호 결정이 된 날부터 지급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9b: 69). 그 외에도 1인당 연 65천원 이내의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전세자금 등을 지원한다(표 II-2-6 참조).

〈표 II-2-6〉 위탁가정 지원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200천원 이상 권고
상해보험료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애,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연 65천원 이내/1인
심리치료비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필요 시 12개월에 한해 연장 가능)
전세자금 지원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의 무주택인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추천 - (일반주택)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외: 6,000만원 - (공공임대)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1), p. 70.

3. 해외 사례

본 절에서는 가정위탁 비율이 높고 양육시설보호 비율이 낮은 OECD 국가 중 뉴질랜드, 호주, 미국(OECD, 2019)⁵⁾을 중심으로 국외 아동보호시설 관련 가정 외 보호⁶⁾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적, 전달체계와 현황⁷⁾을 분석하겠다.

5) 나라별 가정위탁 비율은 다음과 같음: 호주 94%, 아일랜드 92%, 뉴질랜드 82%, 미국 77%, 네덜란드 57.7%, 독일 44%, 프랑스 53%, 영국 73%, 스페인 60%, 일본 12% (Del Valle, 2015; Harder et al., 2013; Nakatomi, Ichikawa, Wakabayashi, & Takemura, 2018; OECD, 2019;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 2018.3.31.) (인출일: 2019.11.25.)

6) Out-of-home care: 국외에서 응급일시보호,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양육시설 등을 포함 한 원가정 외 양육 및 보호를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

7) 각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함.

가. 뉴질랜드⁸⁾

1) 정책 기본 방향 및 목적

먼저, 뉴질랜드의 국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의 토착민인 마오리는 식민지화 이전부터 가족과 부족을 중심으로 아동을 양육하였다. 1840년대 와이타기 조약⁹⁾이 체결된 이후에도 양육 방식의 전통적인 관행은 계속되었지만, 이는 법적인 맥락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1867년 지방 정부에 의해 뉴질랜드 최초의 복지법이 도입되었고, 이후 1925년에 첫 아동복지법이 도입되었다. 뉴질랜드는 복지법이 최초로 도입될 때부터 위탁보호에 대한 선호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갔다. 1980년대, 마오리 아동 양육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1988년에 마오리 자문 위원회가 설립되어 마오리 관점이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Fernandez & Atwool, 2013). 이후, 1989년 아동·청소년 복지법이 도입되었다.

아동·청소년 복지법에 따른 뉴질랜드 아동 정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가능한 한 아동에 대한 모든 결정에 아동의 가족 또는 후견인, 친족 및 문화적·사회적 이해집단이 참여해야 하며, 최대한 결정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가족, 친족 및 문화적·사회적 이해집단의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강화한다. 셋째,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그 결정이 아동과 아동의 가족 또는 후견인, 친족 및 문화적·사회적 이해집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아동의 나이, 성숙도, 문화 등을 고려한 아동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의 부모, 보호자 및 양육자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가능한 한 아동의 시간적 감각을 고려해 적절한 시간 틀 안에서 결정·시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아동에 대한 모든 결정은 아동의 나이, 정체성, 문화적 배경, 교육 및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한 전체론적

8) 이하 내용은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홈페이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https://www.msd.govt.nz/about-msd-and-our-work/publications-resources/statistics/cyf/kids-in-care.html>)에서 2019.11.25. 인출; 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 1989; 뉴질랜드 아동 복지부 홈페이지(Oranga Tamariki Ministry of Children. <https://www.orangatamariki.govt.nz/caring-for-someone/types-of-caregiving/>)에서 2019.11.25. 인출; 뉴질랜드 법무부 홈페이지(Ministry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t.nz/>)에서 2019.11.25. 인출)에 근거함.

9) 아동을 포함, 마오리족의 Taonga(보물)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마오리족과 영국 국왕이 체결한 조약.

10) 이하 내용은 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1989)에 근거함.

인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법의 따른 모든 집행 및 적용은 아동의 복지와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 1989).

아동은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족에게서 분리 조치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가족 또는 후견인, 친족 및 문화적·사회적 이해집단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 1989). 아동이 가정, 후견인, 친족 또는 문화적·사회적 이해집단으로 즉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이 가족, 후견인, 친족 및 문화적·사회적 이해집단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아동에 대한 양육 우선순위는 문화적·사회적 이해집단 구성원, 같은 부족, 민족이거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또는 아동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 1989).

2) 전달 체계¹¹⁾

아동 복지부 또는 경찰이 판단하기에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보호조치 신청서와 공판 날짜가 전달된다. 가정법원이 아동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이에 대한 정보 또한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고지된다. 사회복지사나 경찰의 판단 하에 아동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정법원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조치(Interim Custody Order)를 내릴 수 있다¹²⁾.

이후, 아동·청소년 복지법에 따라 가정법원은 아동과 관련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 패밀리 그룹 컨퍼런스(Family Group Conference, FGC)를 통해 작성된 아동에 대한 향후 계획을 검토한다. FGC는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사회복지사

11) 이하 내용은 뉴질랜드 법무부 홈페이지(Ministry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t.nz/> 2019.11.25. 인출), 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1989)에 근거함.

12) 뉴질랜드 법무부 홈페이지(Ministry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t.nz/>에서 2019.11.25. 인출)

가 보호 요청을 신청하기 전에 열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공판 전에 진행된다. 이는 아동, 가족, 보호자, 유관 기관과 아이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회의이며,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FGC에서 논의된 모든 결정, 권고 및 계획은 모두 기록되며, 계획서의 형태로 가정법원 판사에게 전달된다¹³⁾. 계획서의 내용은 다음을 명시한다:¹⁴⁾

- 아동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간
- 아동,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
-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 보호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달성해야 하는 행동 변화
- 원가정 복귀를 위한 평가 시기
- 기타 교육, 복지 등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계획

이러한 과정과 계획을 토대로 가정법원은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결정한다. 결정에 따라 아동은 원가정에 머물거나, 후견인, 친족, 문화적·사회적 이해집단, 또는 아동 복지부 승인을 받은 양육자에게 위탁된다. 혹은 양육 시설의 보호 아래 배치될 수 있다(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 1989). 아동에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관련된 서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가정법원과 아동의 상황을 검토한다¹⁵⁾.

위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¹⁶⁾.

- 응급 일시 보호: 아동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할 경우 제공되는 일시적인 보호
- 연계형 보호(Transitional Care):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배치 관련 결정이 날 때까지 길게는 6개월 동안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형태

13) 뉴질랜드 아동 복지부 홈페이지(Oranga Tamariki Ministry of Children. <https://www.orangatamariki.govt.nz>에서 2019.11.25. 인출)

14) 이하 내용은 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1989)에 근거함.

15) 뉴질랜드 아동 복지부 홈페이지(Oranga Tamariki Ministry of Children. <https://www.orangatamariki.govt.nz/caring-for-someone/types-of-caregiving/>에서 2019.11.25. 인출)

16) 이하 내용은 뉴질랜드 아동 복지부 홈페이지(Oranga Tamariki Ministry of Children. <https://www.orangatamariki.govt.nz>에서 2019.11.25. 인출)에 근거함

- 패밀리 홈 케어(Family Home Care) 위탁: 2명의 양육자가 아동복지과에서 제공·관리하는 주거지에서 수당을 받으며, 최대 6명의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의 보호를 제공하는 형태
- 영구적 양육: 가정법원의 판단 아래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불가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아동의 영구적인 양육자가 지정되는 경우
- 입양

뉴질랜드는 가정외 보호를 제공하는 양육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의 사회복지사, 양육자의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 상담 치료사 등 전문가, 아동의 가족과 양육자의 가족이 한 팀을 이루며, 아동과 아동의 가족, 양육자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제공된다¹⁷⁾.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위탁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통해 양육에 필요한 일상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격주로 지급되며, 의식주 및 개인용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용돈을 포함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2019년 기준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 <표 II-3-1>와 같다.

<표 II-3-1> 2019년 지원금

단위: NZD

연령	주간 수당	주간 용돈	생일 및 크리스마스	의류 구매 지원 (4주)
0~4세	\$172.84	\$2.10	\$86.42	\$81.92
5~9세	\$197.27	\$6.70	\$98.64	\$92.88
10~13세	\$215.53	\$10.10	\$107.77	\$114.68
14세 이상	\$233.71	\$15.60	\$116.86	\$137.64
Family Home Caregivers	\$219.31		\$109.66	

자료: Ministry for Children(2019). <https://www.orangatamariki.govt.nz/caring-for-someone/financial-help/> (2019.5.9. 인출)

필요에 따라 지원금 외에 추가 재정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첫 교복 구매, 학교 캠프, 학용품 구매, 유치원 보육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추가 재정 지원에 포함되어 있다.

17) 뉴질랜드 아동 복지부 홈페이지(Oranga Tamariki Ministry of Children. <https://www.orangatamariki.govt.nz/caring-for-someone/financial-help/>에서 2019.11.25. 인출)

3) 보호 아동 및 시설 유형별 현황

2017년 뉴질랜드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전년 대비 7% 상승했으며, 가정 외 보호 아동 또한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716명의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마오리 아동 비율이 61%로 가장 높았다. 또 가정 외 보호 아동 중 약 31%(1,442명)가 4세 이하의 영유아로 조사되었다(표 II-3-2 참조).

〈표 II-3-2〉 연령별 가정 외 보호 아동 현황

단위: 명

연령	2013	2014	2015	2016	2017
0-1세	421	486	464	486	572
2-4세	625	735	769	811	870
5-9세	1,041	1,099	1,158	1,306	1,414
10-13세	964	985	971	1,002	1,078
14세 이상	793	824	801	789	782
전체	3,844	4,129	4,163	4,394	4,716

자료: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7). *Kids in Care June 2017*.

보호 시설 유형별 배치 현황의 경우,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53.0%)이 친인척 위탁 가정에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 위탁가정이 29.0%로 그 뒤를 따랐다. 양육 시설 보호를 받는 아동은 29명(0.7%)에 그쳤으며, 이는 2013년부터 5년간 꾸준히 1% 안팎의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표 II-3-3〉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 위탁	1,298	1,269	1,182	1,281	1,368
친인척 위탁	1,698	1,999	2,193	2,303	2,515
Child and Family Support Services	521	536	502	507	541
CYF Family Home Placement	103	114	133	154	116
시설	47	34	29	35	29
기타	177	177	124	114	147
전체	3,844	4,129	4,163	4,394	4,716

주: 친인척 위탁은 조부모 위탁 포함

자료: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7). *Kids in Care June 2017*.

2017년 뉴질랜드 사회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양육 실태조사 결과, 가정 외 보호를 제공하는 양육자는 총 3,672명이었으며, 그중 친인척 양육자가 약 61%로 일반 양육자에 비해 그 수가 많았다. 이러한 비율은 2013년부터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으며, 일반가정 양육자와의 비율 격차는 해마다 증가했다. 또한 친인척을 제외한 일반 양육자의 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반면, 친인척 양육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II-3-4 참조).

〈표 II-3-4〉 양육자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	1,633	1,581	1,465	1,408	1,450
친인척	1,801	1,933	2,011	2,073	2,222
전체	3,434	3,514	3,476	3,481	3,672

주: 친인척 위탁은 조부모 위탁 포함
 자료: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7). *Kids in Care June 2017*.

나. 호주¹⁸⁾

1) 정책 기본 방향 및 목적

호주의 아동보호 기본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기본 토대이다. 이에 따라 호주의 국가적 아동보호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모든 아동은 학대와 방임이 없는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모든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과 그 가족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셋째,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는 것은 국가적 우선순위이다. 넷째, 아동의 안전 및 웰빙의 기본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그들은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호주 사회는 아동의 부모, 가족

18) 이하 내용은 Protecting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s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7-18(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호주 사회복지서비스부 홈페이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에서 2019.11.25. 인출)에 근거 함

19) 이하 내용은 Protecting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s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에 근거 함.

및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의 권리는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책과 집행은 증거 기반이어야 한다. 나아가, 호주의 국가적 아동보호 틀은 호주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웰빙을 촉진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인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호주의 원주민들은 뉴질랜드 마오리족과 달리 명시적인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백인의 정착 시기에 호주의 원주민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백인 가정 또는 시설에서 양육되었으며, 호주가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아동에게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 또한 뉴질랜드보다 훨씬 최근이다(Fernandez & Atwool, 2013). 1800년대 호주 주정부의 핵심적 특징은 시설돌봄에 의존하는 것이었으며, 1860년대 무렵부터 시설보호를 대안할 가정 외 보호 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탈시설화에 대한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위탁가정이 가정 외 보호의 주요 유형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Fernandez & Atwool, 2013).

2) 전달 체계

호주는 연방정부가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보호 책임 역할을 하고, 주정부와 자치령이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개별 주정부, 자치령과 지방정부들은 아동보호 체계와 법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고 18세 이하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한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먼저, 호주 연방정부는 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을 위한 보편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소득 및 연금, 가족 수당, 육아 수당, 세금 환급 등의 지원금 제공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동시에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호주 정부의 기반이다. 또한 의료, 고용, 육아, 및 가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학교, 주택 및 장애 서비스와 같은 지역 내 주요 서비스 지원 또한 제공한다. 주 및 자치령의 정부들은 아동 학대와 방임을 방지하기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와 조기 개입을 지원하며, 비정부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조정한다. 원가정 밖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을 포함, 아동보호 관련 법적 시스템 또한 주 및 자치령의 정부 책임 아래 있다. 이외에 학대 또는 방임 위험에 처한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치료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아동 보호 관련 연구, 모성 및 아동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청소년, 가족 센터 운영 및 지역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연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아동 보호 시스템의 전반적인 과정은 호주 전역에 걸쳐 유사하다. 학대, 방임 경제 또는 문화적 고립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아동은 지역사회 구성원, 경찰, 교사, 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아동 자신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 추가 조치 여부를 조사 및 결정한다.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과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기관의 판단 아래 가족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등 가정 안에서의 양육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보호조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호주는 아동이 가족 내에서 보살핌 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원가정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호주의 가정 외 보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 가정 위탁: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제3자(부모가 지정하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아동에 대한 책임 및 법적 권리를 위임하는 형태) 위탁 및 기타 가정 기반 위탁
- 공동생활가정: 관할구청 소유의 지역사회 기반의 24시간 양육 형태
- 양육 시설
- 자립생활: 기숙사 또는 자취 형태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형태
- 기타: 기타 분류되지 않은 유형 또는 알려지지 않은 배치(예: 기숙사, 병원 등)

20) 이하 내용은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7-18(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에 근거 함.

가정 외 보호 배치 시, 친인척 위탁 또는 지역사회 내 배치가 선호되며, 이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아동 배치에 있어 특히 더 강조된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아동 배치 원칙에 따르면, 해당 아동 배치 시 가족, 공동체, 문화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하며 선호 순위는 ① 아동의 확대가족 및 친족, ②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 ③ 다른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이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호주 내 모든 주와 지역에 걸쳐,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정책의 우선순위이다. 하지만 이는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영구성이 확보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따라서 호주는 정책으로 영구계획(Permanency Planning)을 수립하고, 2년 이상 가정 외 보호를 받은 아동에 대한 영구적인 양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 양육 영구계획은 주 및 지방의 아동보호 관련 부서가 아동의 안정적인 장기 양육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영구 양육 계획은 크게 원가정 복귀, 제3자 부모 책임 명령(third-party parental responsibility order), 장기 후견인 및 양육권 위임, 입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호주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Carer Payment)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아동의 연령과 니즈에 따라 각 주에서 상이하게 지급된다. 예컨대, 아동의 니즈에 따라 퀸즈랜드의 경우 0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686.84를 격주로 제공²¹⁾하는 반면, 빅토리아의 경우 0에서 7세를 대상으로 최대 \$1,639.14까지 격주로 제공²²⁾한다.

3) 보호 아동 및 시설 유형별 현황

호주의 아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2017-18년 0에서 17세 아동의 약 159,000명이 아동 보호 서비스(조사, 관리 및 보호 명령 또는 가정 외 보호)를 받

21) 퀸즈랜드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qld.gov.au/community/caring-child/foster-kinship-care/information-for-carers/money-matters/carer-allowances>에서 2019.12.14. 인출

22) 빅토리아 주 사회서비스부 홈페이지 <https://services.dhhs.vic.gov.au/support-home-based-carers-victoria>에서 2019.12.14. 인출

있으며, 이는 아동 1,000명당 28.7명의 비율과 같다. 2013-14년과 2017-18년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아동 보호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비율은 1,000명당 7.2명에서 8.5명으로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보호 명령이 내려진 아동은 8.7명에서 10.1명으로 증가했고,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또한 8.1명에서 8.2명으로 증가하였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아동 보호 및 가정 외 보호에 대한 국가적 반복 지출은 2017-18년에 48억 달러로 2016-17년에 비해 4억 6300만 달러(11%)가 증가했다. 이는 2012-13년과 2017-18년 사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 동안 연평균 2억 6800만 달러씩 증가했다(Steering Committee for the Review of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2019).

〈표 II-3-5〉 연령별 가정 외 보호 아동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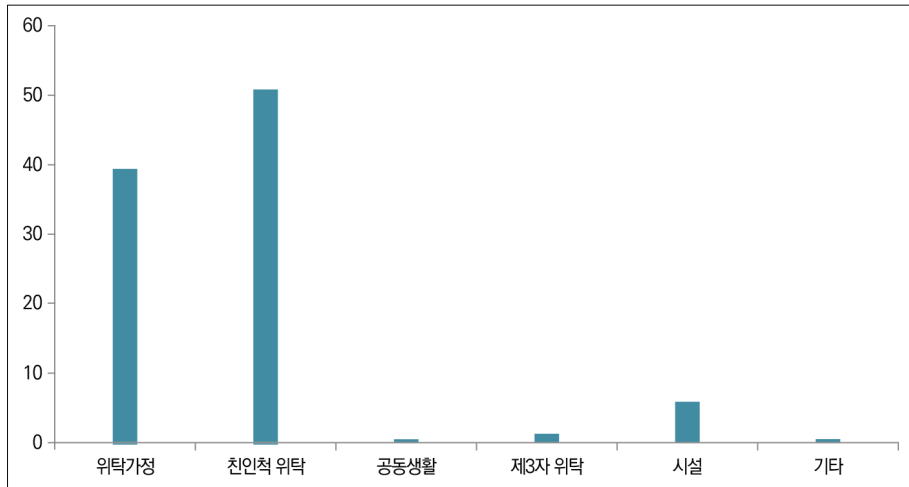
연령	<1	1-4세	5-9세	10-14세	15-17세	미상	계
	2,183	2,819	2,503	2452	1220	1	11,178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Data tables: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7-18. 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보호 시설 유형별 배치 현황의 경우,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93%)이 위탁 가정에 배치되어 있다. 그중 51%가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위탁 가정이다. 39%가 위탁가정, 제 3자 위탁과 기타 유형의 가정 기반 위탁이 각각 1%를 차지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호주 전역에 걸쳐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약 6% 정도이다(그림 II-3-1 참조). 호주의 시설은 주로 복합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형제자매를 한 양육시설에 배치·보호하는 것은 우선권이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그림 II-3-1] 2018년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단위: %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2019)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친인척 위탁의 절반(50%)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고, 23%는 이모나 삼촌, 16%는 혈육 관계가 아닌 양육자(배치 전에 친분이 있던 이웃, 가족 친구 등)가 보호하고 있다.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원주민 아동의 대부분(65%)이 친인척, 원주민 보육사 또는 원주민 주거 시설에서 보호한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7-18년, 호주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의 아동 보호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1,000명당 163.8명으로,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이 아닌 아동 비율(1,000명당 19.7명)의 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외 보호를 받는 비율 또한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이 1,000명당 12.8명으로 다른 아동들의 비율(1,000명당 1.4명)의 9배에 달한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약 45,800명의 가정 외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대부분(82%)은 1년 이상 지속적인 가정 외 보호를 받았다. 약 31,800명의 아동이 2년 이상 시설의 보호 아래 있으며, 이 중 40%는 원주민 아동이다. 2년에서 5년간 지속적인 가정 외 보호를 받은 아동은 30%, 5년 이상은 40%에 달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다. 미국²³⁾

1) 정책 기본 방향 및 목적

미국의 연방정부는 1980년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가정 외 보호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州)정부에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원가정이나 친인척 위탁 보호보다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의 보호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을 마련하려 아동이 원가정 외의 보호 아래 배치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1997년에는 입양 및 가족안전법을 제정하여, 아동의 가정 외 보호기간을 단축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보호는 아동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심리치료나 약물중독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위탁가정으로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대안으로 고려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의 아동 복지의 목표는 아동의 가족이 가정 내에서 아동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의 웰빙, 영속성 및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아동이 친인척이나 양부모 아래서 영속성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미국 아동보호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정 유지이다.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사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초기에 일시적인 가정 외보호가 제공된다. 사정 결과 원가정 복귀가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노충래 외, 2015: 91). 이와 같은 일시적인 가정 외 보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임시적인 분리를 통해 부모의 생활환경· 아동의 행동· 품행·건강에 대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원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에 있다(노충래 외, 2015: 91). 둘째, 가정 외 보호시설에 배치된 이후에는 배치 안정성(placement stability)을 중요한 원칙으로 둔다.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원가정 복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 외 보호시설(일반위탁(Family Based Care), 친족위탁(Relative foster Care), 그룹 케어

23) 이하 내용은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3, 2016, 2017, 2018), 국가인권위원회(2010)에 근거 함.

(Group Care)에 배치된다. 이 중에서도 친족위탁은 미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위탁 보호 유형이다(Petersen, Joseph, & Feit, 2014).

2) 전달체계

미국의 아동복지 제도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체계이다. 아동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주 정부에 있는 반면, 연방정부는 프로그램 및 입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주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아동 및 가족 법률 시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와 아동국(Children's Bureau)에 있다. 아동국은 주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학대 및 방임 방지를 위한 가정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 외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을 원가정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족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미국 아동복지의 구체적인 절차는 주마다 상이하지만, 국가적인 틀에서 볼 때 아동복지 제도는 크게 ① 학대 및 방임 신고 접수 및 조사, ② 아동 양육 및 보호에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 ③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친인척 또는 일반 위탁 연계 및 지원, ④ 위탁이 종결되는 아동을 위한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의 영구적 보호 조치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지역 아동복지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가정의 대부분은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의심되어 아동보호 서비스에 신고 접수가 된다. 이는 해당 서비스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 근거와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담당자는 학대유형, 상황의 심각성 및 주법에 따라 특정 시간 안에 대응해야 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가정 외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를 통해 담당자는 각 가정에 장점과 니즈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와의 연계를 시작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조사의 결과는 근거 유무에 따라 학대 및 방임이 입증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로 나뉜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기관은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가정 외 보호 배치, 서비스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의 일시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이의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여부는 공판에서 결정되며, 사례의 심각성에 따라 가정 외 보호 조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상황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나 양육시설에 배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친인척이나 일반위탁 가정에 함께 배치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8). 아이가 가정에서 분리된 이후, 사례 계획 및 초기 배치 과정에 생물학적 부모와 가족의 참여는 우선시되고 있다. 아동복지기관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이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와 아동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해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정해진 계획에 따라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간의 만남이 장려 및 지원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8). 나아가, 가능한 한 부모가 아동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정 외 보호는 부모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한 한 친인척과 배치하는 것이 아동과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보호의 연속성을 위해 우선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례 담당자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친인척을 찾아 배치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6). 친인척 위탁 보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는 ① 비공식 친인척 관리(아동복지기관이나 법원의 개입 없이 친인척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지는 형태), ② 자발적 친인척 관리(아동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보호를 제공하지만, 추가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 ③ 공식 친인척 관리(복지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아동의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친인척이 아동의 신체적인 양육권을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④ 임시 후견인, 네 가지로 나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6).

친인척 위탁이 어려운 아동은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8). 전문위탁가정 또한 제공되는데, 이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일반 위탁 부모가 정서적, 행동적 또는 사회적 문제나 의료적 지원 등에 의해 일반적인 양육보다 더욱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위탁 외에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 또한 미국의 가정 외 보호 시설 유형에 포함된다. 두 유형 모두 위탁가정보다 체계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일시적이며 높은 수준의 감독과 지속적인 종합평가를 제공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또한, 정서적, 행동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은 집중치료양육시설(Intensive/Qualified Residential Treatment)에 배치되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집중치료양육시설은 24시간 관리 감독과 다양한 상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고려되는 보호 유형이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미국의 아동국은 사회복지법 Title IV-E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의 위탁가정 및 양육 시설에 재원을 지원한다²⁴⁾. Title IV-E 프로그램은 아동이 영구적인 배치가 될 때까지 양육비, 프로그램 관리비, 직원 및 위탁 센터장 교육, 위탁 가정 발굴,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가정 외 보호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15).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영구계획(Permanency Plan)을 세워야 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계획에는 아동의 영구적인 보호 및 양육을 목표로 한 원가정 복귀, 법정 후견인, 입양 등이 포함된다. 연방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아이가 양부모에 보호 아래 배치된 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12개월마다 영구 계획 심의를 열게 되어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24) 미국 아동국 홈페이지(Children's Bureau. <https://www.acf.hhs.gov/cb>에서 2019.11.25 인출)

미국의 위탁가정 대상 지원금은 각 주정부에서 제공된다. 지원금은 아동의 니즈를 반영한 각 지방정부의 결산 금액을 위탁가정에 매달 상환하는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액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는 월 최대 \$1,058까지 지급되는 반면, 미주리주의 월 최대 환급금은 \$400대에 불과하다(Peeble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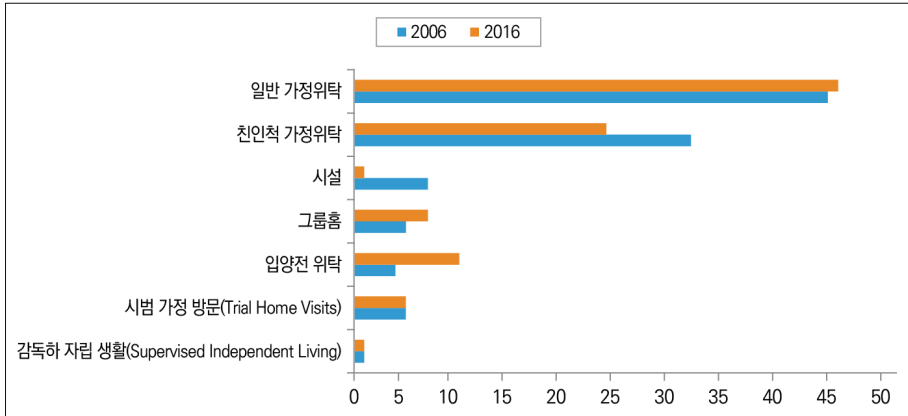
3) 시설 유형별 현황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가정 외 보호 아동은 총 43만 7465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4분의 1 이상(32%)이 친인척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45%는 일반 위탁가정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양육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7%와 5%, 시범 가정 방문(원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국가의 감독 아래 아동이 지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원가정에 방문하는 것)이 5%, 입양 전 위탁이 4%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시설 이용 현황의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2006년 통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친인척 위탁가정 비율의 증가 및 그룹홈 비율의 감소가 두드러진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그림 II-3-2 참조).

2016년에는 총 250,248명의 아동의 위탁이 종결되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51%)이 원가정 또는 주양육자에게 복귀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미국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의 평균 가정 외 보호 기간은 13.9개월이었다. 약 45%의 아동이 1년 미만의 시설 보호 아래 있었으며, 그 중 10%가 한 달 미만, 35%가 1~11개월을 가정 외 보호 아래 있었다. 1년 이상 가정 외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12~23개월이 28%, 24~35개월이 15%, 3~4년이 9%, 5년 이상이 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06년과 2016년 사이 아동이 가정 외 보호 시설에 머무는 평균 기간은 12.2개월에서 13.9개월로 증가했으며, 가장 큰 증가율은 12개월에서 23개월 사이로 나타났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그림 II-3-3 참조).

[그림 II-3-2]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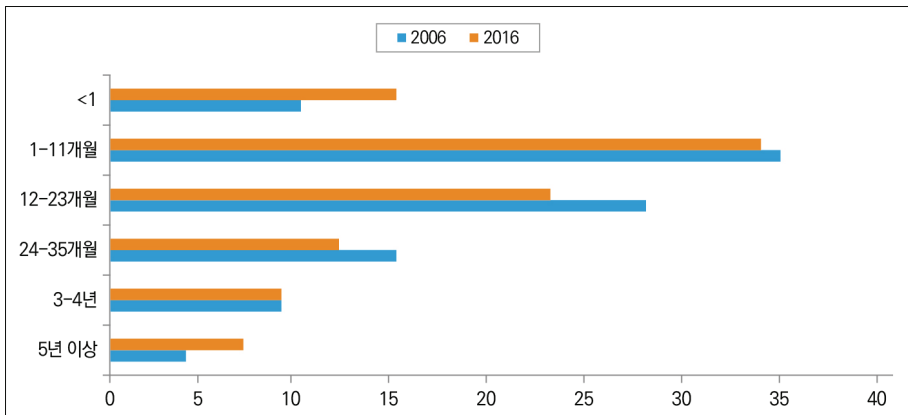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그림 II-3-3] 가정 외 보호 기간 현황

단위: %



자료: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2016년 수집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인종을 살펴보면, 43만 7465명의 아동의 44%가 백인, 23%가 흑인, 21%가 히스패닉, 10%가 기타 다른 인종 및 혼혈, 2%가 미상으로 나타났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6년과 비교해서 흑인 아동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백인, 히스패닉과 기타 다른 인종 및 혼혈 아동의 비율은 증가하였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라.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본 국외 보호필요아동 관련 정책 방향 및 목적, 전달 체계, 현황을 정리해보면, 첫째, 뉴질랜드, 호주, 미국은 모두 공통적으로 원가정 안에서의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안전 및 웰빙의 기본적 책임이 가족에게 있으며, 부모와 아동 간의 유대감이 유지되는 것을 건강한 아동 발달 및 양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가정 내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친인척 위탁 또는 일반 위탁가정 등을 통해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은 세 나라의 보호 시설 유형별 현황을 통해 드러난다. 각 나라별 친인척 위탁과 일반위탁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82%, 호주 93%, 미국 77%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아동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원가정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세 나라 모두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어 있는 동안, 부모에게 생활환경·행동·품행·건강에 대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뉴질랜드, 호주, 미국 모두 보호필요아동의 장기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 아동의 가족 및 양육자 지원에 대한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보 및 보호하기 위함이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역시 친인척 위탁 및 일반 위탁가정을 통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보호를 우선시한다. 또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까지 시설보호가 상대적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과 현 시점에서의 탈시설화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호필요아동 관련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가정 복귀를 위해 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원가정과 지속적인 교류를 권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동이 안전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치료, 교육 등의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

던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보호필요아동 및 원가정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안전성,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III

아동양육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 01 조사 참여자 특성
- 02 양육시설 거주 아동 특성
- 03 원가정 교류
- 04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 05 종사자 현황
- 06 소결

Ⅲ. 아동양육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및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서울, 경기, 충남, 마산 지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만0세부터 만6세까지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육사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설계 및 오류 수정 과정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약 4주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요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조사 참여자 특성

가. 조사 참여자 특성

본 설문 응답자 263명 중, 아동이 50인 미만인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는 33.8%, 50인 이상 시설에서 종사하는 경우는 66.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36.9%, 30대 31.2%, 40~50대 31.9%로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의 경우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였다. 한편, 응답자의 최종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하 53.2%, 대졸 이상 46.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영아만 돌보는 경우가 34.2%, 유아만 돌보는 경우 38.4%, 영유아 모두 돌보는 경우가 27.4%로 나타났다.

〈표 Ⅲ-1-1〉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응답자		계(수)
전체		100.0(263)
시설규모	50인 미만	33.8(89)
	50인 이상	66.2(174)

응답자		계(수)
연령	20대	36.9(97)
	30대	31.2(82)
	40~50대	31.9(84)
경력	5년 미만	49.8(131)
	5~10년 미만	29.3(77)
	10년 이상	20.9(55)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53.2(140)
	대졸 이상	46.8(123)
돌봄 유형	영아만	34.2(90)
	유아만	38.4(101)
	영유아 모두	27.4(72)

2. 양육시설 거주 아동 특성

가. 보육사 대 영유아 비율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돌보고 있는 영아 및 유아의 연령과 수에 대한 질문에서는, 영아만 양육하는 경우와 유아만 양육하는 경우 영유아 모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영아만 양육하는 경우와 유아만 양육하는 경우, 영유아 모두를 양육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보육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영아만 돌보는 경우

영아만 돌보고 있는 보육사 1인은 평균 4.2명의 영아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0~2세 보육사 배치기준인 아동 2명당 1명을 현저히 초과하는 숫자이다. 또한, 1~2명을 돌보고 있는 경우는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5명이 44.4%로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을 돌보고 있는 경우도 26.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 보육사들의 1인당 돌보는 영아의 수는 시설

규모나 보육사의 연령, 경력 및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보육사의 특성이나 기관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영아 보육사가 돌보는 영아의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아시기에 보육사의 부족으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황에 관하여서는 사회적·국가적 관심과 환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III-2-1〉 1인당 돌봄 영아 수; 영아만 돌보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단위: %(경), 점

구분	1~2명	3~5명	6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8.9	44.4	26.7	100.0 (90)	4.2
시설규모					
50인 미만	28.6	45.7	25.7	100.0 (35)	4.1
50인 이상	29.1	43.6	27.3	100.0 (55)	4.3
$X^2(df)/t$		0.042(2)			-0.2
연령					
20대	29.2	37.5	33.3	100.0 (24)	4.7
30대	25.9	40.7	33.3	100.0 (27)	4.5
40~50대	30.8	51.3	17.9	100.0 (39)	3.7
$X^2(df)/F$		2.846(4)			1.1(a)
경력					
5년 미만	28.9	42.2	28.9	100.0 (45)	4.5
5~10년 미만	19.2	53.8	26.9	100.0 (26)	4.0
10년 이상	42.1	36.8	21.1	100.0 (19)	3.7
$X^2(df)/F$		3.111(4)			0.8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26.4	43.4	30.2	100.0 (53)	4.5
대졸 이상	32.4	45.9	21.6	100.0 (37)	3.8
$X^2(df)/t$		0.905(2)			1.1

* $p < .05$, ** $p < .01$, *** $p < .001$

2) 유아만 돌보는 경우

유아만 돌보고 있는 보육사 1인은 평균 4.8명의 유아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3세~6세 보육사 배치기준인 아동 5명당 1명 보다 낮은 수치이다. 71.3%의 보육사가 5명 이하의 유아를 돌보고 있었으나, 28.7%의 보육사는 6명 이상의 유아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규모나 보육사의 연령, 경력, 및 학력과 같은 보육사의 특성에 따른 돌봄 유아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경우에는 영아와 비교해 볼 때, 법정 인력배치 기준이 대체로 준수되고 있으나 6명 이상인 경우도 29% 정도로 나타나서 아직도 법정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는 시설의 규모나 보육사의 특성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2-2〉 1인당 돌봄 유아 수; 유아만 돌보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단위: %(명), 점

구분	1~5명	6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71.3	28.7	100.0 (101)	4.8
시설규모				
50인 미만	77.4	22.6	100.0 (31)	4.6
50인 이상	68.6	31.4	100.0 (70)	4.9
$X^2(df)/t$	0.822(1)			-0.6
연령				
20대	71.1	28.9	100.0 (38)	5.1
30대	71.4	28.6	100.0 (35)	4.7
40~50대	71.4	28.6	100.0 (28)	4.5
$X^2(df)/F$	0.002(2)			0.7
경력				
5년 미만	66.0	34.0	100.0 (47)	5.2
5~10년 미만	80.6	19.4	100.0 (31)	4.4
10년 이상	69.6	30.4	100.0 (23)	4.6
$X^2(df)/F$	2.012(2)			1.6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71.7	28.3	100.0 (46)	5.2
대졸 이상	70.9	29.1	100.0 (55)	4.5
$X^2(df)/t$	0.008(1)			1.4

* $p < .05$, ** $p < .01$, *** $p < .001$

3)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영유아를 함께 돌보고 있는 보육사는 평균 8.0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영유아뿐 아니라 7세 이상 아동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한 법정 배치 기준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유아에 대한 배치기준인 보육사 1인에 5명 이하를 초과하고 있으며, 7세 이상 아동의 배치기준은 아동 7명당 보육사 1명의 기준보다도 많은 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3.9%의 보육사가 6명 이상의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5명 이하가 36.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시설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50인 이상 시설에서는 평균 8.6명인 반면 50인 미만 시설에서는 6.8명으로 규모가 큰 시설에서 보육사 1인당 돌보는 아동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3〉 1인당 돌봄 영유아 수;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구분	5명 이하	6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6.1	63.9	100.0 (72)	8.0
시설규모				
50인 미만	56.5	43.5	100.0 (23)	6.8
50인 이상	26.5	73.5	100.0 (49)	8.6
$X^2(df)/t$	6.103(1)*			-3.0**
연령				
20대	28.6	71.4	100.0 (35)	7.9
30대	45.0	55.0	100.0 (20)	7.7
40~50대	41.2	58.8	100.0 (17)	8.9
$X^2(df)/F$	1.736(2)			0.9
경력				
5년 미만	41.0	59.0	100.0 (39)	7.7
5~10년 미만	25.0	75.0	100.0 (20)	8.1
10년 이상	38.5	61.5	100.0 (13)	9.0
$X^2(df)/F$	1.510(2)			0.9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34.1	65.9	100.0 (41)	8.0
대졸 이상	38.7	61.3	100.0 (31)	8.0
$X^2(df)/t$	0.159(1)			-0.1

* $p < .05$, ** $p < .01$, *** $p < .001$.



나.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원인

현 시설에 온 이유를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영아와 유아 모두 베이비박스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아는 베이비박스가 1순위인 경우가 82.1%, 유아는 72.3%였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도 각각 87.0%,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1순위 이유를 살펴보면 베이비박스 다음으로 미혼출산과 학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5.6%로 낮은 비율이었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는 베이비박스 외 유기가 16.0%, 학대 및 경제적 어려움이 15.4%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현 시설에 온 주된 이유는 베이비박스 다음으로 학대가 9.2%, 빈곤이 6.9%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는 학대가 30.6%로 베이비박스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베이비박스 외 유기, 빈곤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 모두 베이비박스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베이비박스를 제외한 경우에는 영아와 유아 간 차이가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에는 현 시설에 오게 된 주된 이유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이 없었고 부모 수감의 경우도 낮았던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 가출, 수감인 경우가 있었으며, 학대의 비율이 영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영아의 경우에는 베이비박스 외 유기를 포함한 유기가 87%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4〉 현 시설에 온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이혼	-	0.6	1.7	5.2
가출	-	-	0.6	0.6
수감	0.6	0.6	0.6	2.3
학대	5.6	15.4	9.2	30.6
경제적 어려움	1.2	15.4	6.9	16.2
미혼출산	5.6	12.3	2.9	11.6
베이비박스	82.1	87.0	72.3	78.0
베이비박스 외 유기	4.9	16.0	5.8	20.2
계(수)	100.0(162)	147.3(162)	100.0(173)	164.7(173)

주: 본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2순위가 없는 경우 1순위 응답만 수집하였음.

다. 이전 보호 유형

현 시설에 오기 전의 보호 유형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영아 유아 모두 이전 보호 시설이 없는 경우가 48.1, 49.1% 순으로 나타나 반 수 정도는 현재 기관이 처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아의 35.8%, 유아의 34.1%의 경우가 이전 보호 유형이 일시보호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일시보호시설로 먼저 배치된 후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필요아동을 각 시설로 배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양 등으로 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가 현 시설에 온 경우도 1순위에 대해서만 살펴볼 때도, 영아 유아 각각 약 16% 정도로 이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경우 보다 각별한 사회적·국가적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이들 영유아의 경우, 현 시설에 오기 전의 다른 보호시설 유형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였거나, 불가피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성장해야 할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 III-2-5〉 이전 보호 유형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가정위탁	4.9	9.9	4.0	9.8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0.6	2.5	1.2	4.6
태양육시설	7.4	10.5	7.5	12.1
일시보호시설	35.8	44.4	34.1	42.2
입양	2.5	3.1	4.0	4.6
이전보호시설없음	48.1	56.2	49.1	57.8
기타	0.6	0.6	-	0.6
계(수)	100.0(162)	127.2(162)	100.0(173)	131.7(173)

주: 본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2순위가 없는 경우 1순위 응답만 수집하였음.

라. 시설거주 영유아의 사교육

1) 학원 이용 영유아 유무 및 수

보육사에게 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유무와 학원 이용 시 이용 아동 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9.5%로 나타났고, 있는 경우 보육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중 평균 3.6명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학원 이용 영유아 유무 및 영유아 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3명 미만	3~4명	5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9.5	60.5	100.0 (263)	41.3	28.8	29.8	100.0 (104)	3.6
시설규모								
50인 미만	38.2	61.8	100.0 (89)	41.2	29.4	29.4	100.0 (34)	3.4
50인 이상	40.2	59.8	100.0 (174)	41.4	28.6	30.0	100.0 (70)	3.7
$\chi^2(df)$	0.101(1)			0.009(2)				-0.4
연령								
20대	42.3	57.7	100.0 (97)	31.7	31.7	36.6	100.0 (41)	4.0
30대	41.5	58.5	100.0 (82)	50.0	29.4	20.6	100.0 (34)	3.0
40~50대	34.5	65.5	100.0 (84)	44.8	24.1	31.0	100.0 (29)	3.6
$\chi^2(df)$	1.313(2)			3.581(4)				1.7
경력								
5년 미만	39.7	60.3	100.0 (131)	30.8	30.8	38.5	100.0 (52)	4.0
5~10년 미만	35.1	64.9	100.0 (77)	44.4	29.6	25.9	100.0 (27)	3.4
10년 이상	45.5	54.5	100.0 (55)	60.0	24.0	16.0	100.0 (25)	2.8
$\chi^2(df)$	1.451(2)			6.892(4)				2.4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38.6	61.4	100.0 (140)	38.9	27.8	33.3	100.0 (54)	3.6
대졸 이상	40.7	59.3	100.0 (123)	44.0	30.0	26.0	100.0 (50)	3.5
$\chi^2(df)$	0.118(1)			0.677(2)				0.3
돌봄 유형								
영아만	3.3	96.7	100.0 (90)	66.7	33.3	0.0	100.0 (3)	1.7
유아만	61.4	38.6	100.0 (101)	38.7	21.0	40.3	100.0 (62)	4.0
영유아 모두	54.2	45.8	100.0 (72)	43.6	41.0	15.4	100.0 (39)	3.1
$\chi^2(df)$	75.958(2)***			9.893(4)*				2.6(a)

* $p < .05$, ** $p < .01$, *** $p < .001$

2) 사교육비의 출처

학원 이용 영유아가 있는 경우 사교육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순위, 1+2순위 모두 후원금이 가장 많았고, 각각 59.6%와 76.9%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기관 운영금(보조금) 52.9%, 학원비 면제 14.4%, 기타 11.5%, 학원비 감면 4.8% 순서로 나타났다.

〈표 Ⅲ-2-7〉 사교육 비용 주된 출처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후원금	59.6	76.9
기관운영비	23.1	52.9
학원비 감면	2.9	4.8
학원비 면제	6.7	14.4
기타	7.7	11.5
계(수)	100.0(104)	160.5(104)

3) 사교육비의 부담정도

사교육비의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다소 및 매우)는 응답이 47.1%, 적당하다 32.7%,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2%로 나타났다.

〈표 Ⅲ-2-8〉 사교육 비용 부담 수준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 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 되지 않는다	적당 하다	다소 부담 된다	매우 부담 된다	계(수)
전체	9.6	10.6	32.7	35.6	11.5	100.0 (104)
시설규모						
50인 미만	11.8	2.9	44.1	32.4	8.8	100.0 (34)
50인 이상	8.6	14.3	27.1	37.1	12.9	100.0 (70)
$\chi^2(df)$			5.515(4)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적당하다	다소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계(수)
연령						
20대	14.6	9.8	51.2	19.5	4.9	100.0 (41)
30대	8.8	11.8	26.5	41.2	11.8	100.0 (34)
40~50대	3.4	10.3	13.8	51.7	20.7	100.0 (29)
$\chi^2 (df)$			19.274(8)*			
경력						
5년 미만	11.5	7.7	38.5	30.8	11.5	100.0 (52)
5~10년 미만	11.1	22.2	33.3	29.6	3.7	100.0 (27)
10년 이상	4.0	4.0	20.0	52.0	20.0	100.0 (25)
$\chi^2 (df)$			13.230(8)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9.3	11.1	33.3	35.2	11.1	100.0 (54)
대졸 이상	10.0	10.0	32.0	36.0	12.0	100.0 (50)
$\chi^2 (df)$			0.082(4)			
돌봄 유형						
영아만	0.0	0.0	0.0	100.0	0.0	100.0 (3)
유아만	9.7	11.3	37.1	25.8	16.1	100.0 (62)
영유아 모두	10.3	10.3	28.2	46.2	5.1	100.0 (39)
$\chi^2 (df)$			11.502(8)			

* $p < .05$, ** $p < .01$, *** $p < .001$

3. 원가정 교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보육사에게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 각각에 대해서 원가정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 교류하고 있는 경우 주로 교류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자주 교류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하는지, 필요한 경우 부모와 연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서 다음에 제시하였다

가. 원가정과의 교류 여부

보육사가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원가정 교류 여부에 관하여 물었을 때, 교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영아 89.5%, 유아 87.3%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 거주 영유아들이 원가정과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필요아동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표 Ⅲ-2-4>에서 살펴본 것 같이 베이비박스 유기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3-1> 원가정과의 교류 여부

단위: %(명)

구분	교류하고 있다.	교류하지 않는다.	계(수)
영아	10.5	89.5	100.0 (590)
유아	12.7	87.3	100.0 (794)

나. 주 교류 대상

교류하고 있는 경우 영아의 56.5%, 유아의 68.3%가 어머니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아버지가 각각 29.0%, 20.8%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아의 85.5%, 유아의 89.1%가 부모와 교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3-2> 주로 교류하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친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	계(수)
영아	56.5	29.0	9.7	4.8	-	100.0 (62)
유아	68.3	20.8	1.0	5.9	4.0	100.0 (101)

다. 교류 빈도

교류 빈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영아의 경우 한 달에 1번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년에 1번 정도(22.6%), 6개월에 1번 정도(21.0%)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3개월에 1번 정도가 29.7%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에 한번 정도가 27.7%, 1달에 1번 이상이 26.7%, 1년에 1번 정도가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원가정과의 교류 빈도

단위: %(명)

구분	1년에 1번 정도	6개월에 1번 정도	3개월에 1번 정도	1달에 1번 이상	계(수)
영아	22.6	21.0	17.7	38.7	100.0 (62)
유아	15.8	27.7	29.7	26.7	100.0 (101)

라. 교류 방식

교류방식으로는 원가정이 아동을 방문하는 경우가 영아 88.7%, 유아 72.3%로 가장 높았다. 영아는 이메일, 전화, SNS가 9.7%, 아동이 방문하는 경우가 1.6% 순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경우 21.8%가 아동이 방문하는 경우였고, 이메일, 전화, SNS가 4.0%, 기타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정과 아동이 직접 만나는 경우는 영아가 90.3%, 유아가 94.1%로 나타나 직접대면 방식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원가정이 영유아를 만나기 위해서 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원가정과의 교류 방식

단위: %(명)

구분	원가정이 방문	아동이 방문	이메일/전화/SNS	기타	계(수)
영아	88.7	1.6	9.7	-	100.0 (62)
유아	72.3	21.8	4.0	2.0	100.0 (101)

마. 부모와의 연락 여부

보육사에게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부모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필요 시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영아가 37.1%, 유아가 33.7%로 나타났다. 연락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영아는 54.8%, 유아는 59.4%였으며,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도 영유아 각각 8.1%, 6.9%였다.

앞서 〈표 III-3-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가정과 교류하고 있는 영아 10.5%,

유아 12.7%로 나타난 바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연락이 되는 경우의 비율인 영아 37.1%와 유아 33.1%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각 3.8%, 4.2%로 대략 4.0% 정도의 영유아만 필요 시 부모와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부모와의 연락 가능성

단위: %(명)

구분	필요 시 바로	때에 따라 상이	연락 안됨	계(수)
영아	37.1	54.8	8.1	100.0 (62)
유아	33.7	59.4	6.9	100.0 (101)

4.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아동을 양육하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현재 정부의 양육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이 필요한 정책, 국가지원 금액의 충분성에 관한 의견 및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이에 관한 응답 결과를 다음에서 제시하였다.

가. 정책 만족도

정책만족도에 대해서 13개의 정책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이에 대한 평균값을 〈표 Ⅲ-4-1〉에 제시하였다. 〈표 Ⅲ-4-1〉에 따르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2.3점으로 나타난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법정인력배치에 대한 사안이었으며, 다음 순으로는 양육시설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대체인력과 관련된 정책이 2.4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사의 보호자로서의 법적 권한이 2.8점, 아동양육시설 생활공간 기준이 2.9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정책은 아동권리보장 3.4점, 아동입소경로체계 3.2점, 시설 평가 기준 3.1점이었으나 이 역시 3점 초반대 점수로 높은 점수라고 보기 어려워 보육사들은 전반적으로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연령 및 경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낮거나 경력이 적은 교사가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1〉 정책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아동 양육 비용 지원	유치 원, 어린 이집 추가 부담 금	아동 입소 경로 체계	양육 시설 종사 자 처우 개선	아동 치료 프 로 그램 바우 처 이용	보육 사의 보호 자로 서의 법적 권한	아동 복지 법상 법정 인력 배치 기준	아동 양육 시설 생활 공간 기준	아동 권리 보장	양육 시설 종사 자 권리 보장	원가 정지 원체 계	대체 인력	시설 평가 기준	(수)
전체	3.0	2.9	3.2	2.3	3.0	2.8	2.3	2.9	3.4	2.4	3.0	2.4	3.1	(263)
시설규모														
50인 미만	2.9	2.9	3.0	2.2	3.0	2.7	2.2	2.8	3.4	2.3	3.0	2.4	3.1	(89)
50인 이상	3.0	2.9	3.3	2.3	3.0	2.8	2.3	2.9	3.4	2.5	3.0	2.5	3.1	(174)
t	-1.1	-0.3	-2.3	-1.5	0.2	-0.3	-0.3	-0.9	0.3	-2.0	0.4	-0.5	0.7	
연령														
20대	3.0	3.0	3.2	2.4	3.1	2.9	2.3	2.9	3.5	2.6	3.2	2.5	3.1	(97)
30대	2.8	2.6	3.1	2.1	2.9	2.6	2.2	2.7	3.2	2.3	2.9	2.3	3.0	(82)
40~50대	3.1	2.9	3.3	2.4	3.0	2.8	2.3	3.1	3.5	2.4	2.9	2.5	3.1	(84)
F	2.9	4.8**	1.3	2.2	1.1	4.4	0.4	3.2*	2.4	1.4	5.1**	0.5	0.3	
경력														
5년 미만	3.0	3.1	3.3	2.4	3.1	2.8	2.3	2.8	3.4	2.6	3.1	2.5	3.1	(131)
5~10년 미만	3.1	2.9	3.2	2.1	3.0	2.8	2.3	2.9	3.5	2.3	3.0	2.3	3.1	(77)
10년 이상	2.7	2.5	3.0	2.1	2.7	2.6	2.2	2.8	3.3	2.3	2.8	2.4	3.0	(55)
t/F	4.0	8.1***	3.1	4.3	4.9	1.3	0.5	0.3	1.1	3.4	2.4	0.8	0.6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2.9	2.8	3.2	2.3	3.0	2.8	2.3	2.9	3.4	2.5	3.1	2.5	3.1	(140)
대졸 이상	3.0	2.9	3.2	2.2	3.0	2.7	2.2	2.8	3.4	2.3	2.9	2.4	3.0	(123)
t/F	-1.1	-0.9	0.9	1.3	0.5	1.6	1.0	1.1	0.8	1.6	1.8	1.1	1.1	
돌봄 유형														
영아만	3.1	2.9	3.2	2.3	3.1	2.9	2.6	2.9	3.4	2.5	3.0	2.6	3.1	(90)
유아만	3.0	2.8	3.2	2.3	2.9	2.6	2.2	2.8	2.4	2.4	2.9	2.4	3.0	(101)
영유아 모두	2.8	3.0	3.2	2.2	3.0	2.8	2.0	2.9	3.4	2.4	3.0	2.3	3.1	(72)
t/F	1.8	0.7	0.2	0.9	0.9	2.3	6.8	0.2	0.1	0.7	0.6	1.8	0.3	

* $p < .05$, ** $p < .01$, *** $p < .001$

나. 개선이 시급한 정책

개선이 시급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로 응답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육사들은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36.9%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아동복지법 상 법정인력 배치기준, 즉 보육사 대 아동비율이 16.7%, 아동양육비원지원이 14.1%, 양육시설종사자 권리보장이 7.6% 순으로 나타났다.

1+2+3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보면,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7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복지법상 법정인력 배치기준이 45.2%로 높았다. 이어서 양육시설 종사자 권리보장 39.9%, 아동양육비용 지원 35.0%, 대체인력 30.4%, 아동양육시설 생활공간 기준 20.2%, 유치원, 어린이집 추가 부담금 16.3%, 아동 치료프로그램 바우처 이용 14.8%, 보육사의 보호자로서의 법적 권한 8.0%, 아동 권리보장 5.7%, 원가정 지원체계 4.6%, 시설 평가 기준 및 아동 입소 경로 체계 각각 3.4%로 나타났다.

〈표 III-4-2〉 개선 시급 정책 - 1순위

단위: %(명)

구분	아동 양육 비용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추가 부담금	아동 입소 경로 체계	양육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 치료 프로그램 바우처 이용	보육사의 보호자로서의 법적 권한	아동 복지법상 법정 인력 배치 기준	아동 양육 시설 생활 공간 기준	아동 권리 보장	양육 시설 종사자 권리 보장	원가정 지원 체계	대체 인력	시설 평가 기준	계(수)
전체	14.1	5.7	1.1	36.9	3.4	1.9	16.7	4.2	3.0	7.6	1.1	3.4	0.8	100.0 (263)
시설규모														
50인 미만	18.0	3.4	1.1	43.8	3.4	1.1	7.9	4.5	1.1	6.7	1.1	6.7	1.1	100.0 (89)
50인 이상	12.1	6.9	1.1	33.3	3.4	2.3	21.3	4.0	4.0	8.0	1.1	1.7	0.6	100.0 (174)
$\chi^2(df)$							17.604(12)							
연령														
20대	12.4	5.2	2.1	34.0	3.1	0.0	18.6	3.1	4.1	10.3	0.0	6.2	1.0	100.0 (97)
30대	15.9	1.2	0.0	43.9	6.1	3.7	15.9	1.2	1.2	7.3	2.4	1.2	0.0	100.0 (82)
40~50대	14.3	10.7	1.2	33.3	1.2	2.4	15.5	8.3	3.6	4.8	1.2	2.4	1.2	100.0 (84)
$\chi^2(df)$							32.312(24)							
경력														
5년 미만	14.5	5.3	0.8	44.3	2.3	1.5	13.7	2.3	3.8	6.9	0.8	3.1	0.8	100.0 (131)
5~10년 미만	14.3	6.5	1.3	29.9	1.3	2.6	15.6	6.5	3.9	11.7	1.3	5.2	0.0	100.0 (77)
10년 이상	12.7	5.5	1.8	29.1	9.1	1.8	25.5	5.5	0.0	3.6	1.8	1.8	1.8	100.0 (55)
$\chi^2(df)$							25.036(24)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15.0	6.4	0.7	35.0	5.0	2.1	17.1	2.9	2.9	6.4	1.4	4.3	0.7	100.0 (140)
대졸 이상	13.0	4.9	1.6	39.0	1.6	1.6	16.3	5.7	3.3	8.9	0.8	2.4	0.8	100.0 (123)
$\chi^2(df)$							6.239(12)							

구분	아동 양육 비용 지원	유치 원, 어린이집 추가 부담 금	아동 입소 경로 체계	양육 시설 종사 자 처우 개선	아동 치료 프로그램 바우 처 이용	보육 사의 보호 자로 서의 법적 권한	아동 복지 법상 법정 인력 배치 기준	아동 양육 시설 생활 공간 기준	아동 권리 보장	양육 시설 종사 자 권리 보장	원가 정지 원체 계	대체 인력	시설 평가 기준	계(수)
돌봄 유형														
영아만	15.6	2.2	2.2	32.2	4.4	2.2	14.4	7.8	4.4	7.8	3.3	3.3	0.0	100.0 (90)
유아만	15.8	9.9	0.0	36.6	2.0	2.0	18.8	3.0	1.0	8.9	0.0	1.0	1.0	100.0 (101)
영유아 모두	9.7	4.2	1.4	43.1	4.2	1.4	16.7	1.4	4.2	5.6	0.0	6.9	1.4	100.0 (72)
$\chi^2(df)$	30.394(24)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4-3〉 개선 시급 정책 - 1+2+3순위

단위: %(명)

구분	아동 양육 비용 지원	유치 원, 어린이집 추가 부담 금	아동 입소 경로 체계	양육 시설 종사 자 처우 개선	아동 치료 프로그램 바우 처 이용	보육 사의 보호 자로 서의 법적 권한	아동 복지 법상 법정 인력 배치 기준	아동 양육 시설 생활 공간 기준	아동 권리 보장	양육 시설 종사 자 권리 보장	원가 정지 원체 계	대체 인력	시설 평가 기준	(수)
전체	35.0	16.3	3.4	73.0	14.8	8.0	45.2	20.2	5.7	39.9	4.6	30.4	3.4	(263)
시설규모														
50인 미만	30.3	12.4	4.5	78.7	11.2	5.6	49.4	22.5	5.6	42.7	5.6	28.1	3.4	(89)
50인 이상	37.4	18.4	2.9	70.1	16.7	9.2	43.1	19.0	5.7	38.5	4.0	31.6	3.4	(174)
연령														
20대	38.1	12.4	3.1	67.0	21.6	4.1	43.3	16.5	9.3	44.3	5.2	33.0	2.1	(97)
30대	37.8	15.9	6.1	79.3	17.1	11.0	40.2	20.7	3.7	36.6	3.7	28.0	0.0	(82)
40~50대	28.6	21.4	1.2	73.8	4.8	9.5	52.4	23.8	3.6	38.1	4.8	29.8	8.3	(84)
경력														
5년 미만	37.4	15.3	3.8	73.3	16.8	6.9	42.7	19.8	6.1	35.1	4.6	35.9	2.3	(131)
5~10년 미만	32.5	15.6	3.9	76.6	9.1	9.1	41.6	19.5	9.1	53.2	3.9	24.7	1.3	(77)
10년 이상	32.7	20.0	1.8	67.3	18.2	9.1	56.4	21.8	0.0	32.7	5.5	25.5	9.1	(55)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34.3	17.9	1.4	71.4	15.7	7.1	46.4	17.1	5.7	42.9	5.0	32.1	2.9	(140)
대졸 이상	35.8	14.6	5.7	74.8	13.8	8.9	43.9	23.6	5.7	36.6	4.1	28.5	4.1	(123)
돌봄 유형														
영아만	37.8	13.3	6.7	70.0	11.1	3.3	41.1	25.6	5.6	43.3	7.8	33.3	1.1	(90)
유아만	34.7	20.8	1.0	74.3	15.8	9.9	44.6	20.8	4.0	37.6	4.0	25.7	6.9	(101)
영유아 모두	31.9	13.9	2.8	75.0	18.1	11.1	51.4	12.5	8.3	38.9	1.4	33.3	1.4	(72)

다. 국가 지원 금액의 충분성

아동양육시설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부족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를 합하면 60.5%, 충분하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시설규모나, 보육사의 특성, 돌보고 있는 아동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4〉 아동양육시설 국가 지원 금액 충분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계(수)
전체	18.3	42.2	35.4	4.2	100.0 (263)
시설규모					
50인 미만	21.3	39.3	34.8	4.5	100.0 (89)
50인 이상	16.7	43.7	35.6	4.0	100.0 (174)
$\chi^2(df)$	1.013(3)				
연령					
20대	15.5	46.4	35.1	3.1	100.0 (97)
30대	23.2	45.1	29.3	2.4	100.0 (82)
40~50대	16.7	34.5	41.7	7.1	100.0 (84)
$\chi^2(df)$	7.798(6)				
경력					
5년 미만	19.1	39.7	36.6	4.6	100.0 (131)
5~10년 미만	16.9	50.6	29.9	2.6	100.0 (77)
10년 이상	18.2	36.4	40.0	5.5	100.0 (55)
$\chi^2(df)$	3.847(6)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18.6	40.0	35.7	5.7	100.0 (140)
대졸 이상	17.9	44.7	35.0	2.4	100.0 (123)
$\chi^2(df)$	2.052(3)				
돌봄 유형					
영아만	16.7	41.1	35.6	6.7	100.0 (90)
유아만	20.8	44.6	31.7	3.0	100.0 (101)
영유아 모두	16.7	40.3	40.3	2.8	100.0 (72)
$\chi^2(df)$	3.703(6)				

* $p < .05$, ** $p < .01$, *** $p < .001$

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

보육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8.8%의 보육사가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지원 및 연계를 위해서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유연성 있게 근무시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2%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조사 시점에서 보육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근거로 한 하루 3교대 근무방식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유연성 있는 제도 운영을 좀 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은 보육사 대상 면담에서도 언급되었다.

〈표 III-4-5〉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의무적 시행 필요	유연성 있는 근무시간을 운영 필요	계(수)
전체	31.2	68.8	100.0 (263)
시설규모			
50인 미만	9.9	24.0	33.8 (89)
50인 이상	21.3	44.9	66.2 (174)
$\chi^2(df)$	0.242(1)		
연령			
20대	10.3	26.6	36.9 (97)
30대	9.9	21.3	31.2 (82)
40~50대	11.0	20.9	31.9 (84)
$\chi^2(df)$	0.954(2)		
경력			
5년 미만	15.2	34.6	49.8 (131)
5~10년 미만	9.5	19.8	29.3 (77)
10년 이상	6.5	14.4	20.9 (55)
$\chi^2(df)$	0.087(2)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19.4	33.8	53.2 (140)
대졸 이상	11.8	35.0	46.8 (123)
$\chi^2(df)$	3.845(1)*		
돌봄 유형			
영아만	12.5	21.7	34.2 (90)
유아만	12.2	26.2	38.4 (101)

구분	의무적 시행 필요	유연성 있는 근무시간을 운영 필요	계(수)
영유아 모두 $\chi^2(df)$	6.5 3.197(2)	20.9	27.4 (72)

* $p < .05$, ** $p < .01$, *** $p < .001$

5. 종사자 현황

종사자 현황에서는 보육사의 주된 근로형태, 업무량, 급여수준, 이직 경험과 필수교육 이외의 교육 경험 등에 관한 보육사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주된 근로형태

보육사의 주된 근로형태를 확인한 결과, 2조 격일이 5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조 2교대가 30.4%, 그 외 근무시간은 3.0% 이하의 비율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가 2조 격일, 2조 2교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이 50인 미만인 시설에서는 2조 격일이, 50인 이상인 시설에서는 2조 2교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50인 미만 시설에서는 50인 이상 시설에 비해서 2조 격일이나 2조 2교대 이외의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육사가 돌보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든 경우 2조 격일, 2조2교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영아의 경우 2조 격일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하루에 두 번 양육자가 바뀌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한 양육자가 해당 영아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1〉 주된 근로형태

구분	8시간 (주간 근로)	단위: %(명)						기타	계(수)
		2조 격일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그 외 교대			
전체	2.7	57.0	30.4	1.5	2.7	3.0	2.7	100.0 (263)	
시설규모 50인 미만	4.5	66.3	14.6	3.4	7.9	1.1	2.2	100.0 (89)	

구분	8시간 (주간 근로)	2조 격일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그 외 교대	기타	계(수)
50인 이상 $\chi^2(df)$	1.7	52.3	38.5	0.6	0.0	4.0	2.9	100.0 (174)
33.202(6)***								
연령								
20대	2.1	54.6	35.1	3.1	3.1	2.1	0.0	100.0 (97)
30대	3.7	58.5	31.7	0.0	1.2	2.4	2.4	100.0 (82)
40~50대 $\chi^2(df)$	2.4	58.3	23.8	1.2	3.6	4.8	6.0	100.0 (84)
13.641(12)								
경력								
5년 미만	1.5	57.3	30.5	2.3	3.8	3.1	1.5	100.0 (131)
5~10년 미만	2.6	61.0	29.9	0.0	1.3	2.6	2.6	100.0 (77)
10년 이상 $\chi^2(df)$	5.5	50.9	30.9	1.8	1.8	3.6	5.5	100.0 (55)
8.254(12)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3.6	58.6	28.6	1.4	3.6	2.1	2.1	100.0 (140)
대졸 이상 $\chi^2(df)$	1.6	55.3	32.5	1.6	1.6	4.1	3.3	100.0 (123)
3.436(6)								
돌봄 유형								
영아만	2.2	71.1	22.2	0.0	0.0	4.4	0.0	100.0 (90)
유아만	2.0	54.5	32.7	3.0	0.0	3.0	5.0	100.0 (101)
영유아 모두 $\chi^2(df)$	4.2	43.1	37.5	1.4	9.7	1.4	2.8	100.0 (72)
36.868(12)***								

* $p < .05$, ** $p < .01$, *** $p < .001$

나. 업무량

본인의 업무량의 정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3.7%,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34.2%, 매우 과중하다는 응답이 14.4%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보육사는 본인의 업무를 보통 이상으로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는 시설규모나 보육사의 연령, 경력, 학력 및 돌보는 아동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2〉 본인 업무량에 대한 의견

구분	매우 과중	과중	보통	적정	매우 적정	계(수)
전체	14.4	43.7	34.2	6.8	0.8	100.0 (263)
시설규모						
50인 미만	13.5	39.3	40.4	6.7	0.0	100.0 (89)
50인 이상 $\chi^2(df)$	14.9	46.0	31.0	6.9	1.1	100.0 (174)
3.233(4)						

단위: %(명)

구분	매우 과중	과중	보통	적정	매우 적정	계(수)
연령						
20대	7.2	48.5	34.0	9.3	1.0	100.0 (97)
30대	20.7	40.2	35.4	2.4	1.2	100.0 (82)
40~50대	16.7	41.7	33.3	8.3	0.0	100.0 (84)
$\chi^2(df)$						11.291(8)
경력						
5년 미만	12.2	39.7	39.7	7.6	0.8	100.0 (131)
5~10년 미만	14.3	55.8	22.1	7.8	0.0	100.0 (77)
10년 이상	20.0	36.4	38.2	3.6	1.8	100.0 (55)
$\chi^2(df)$						12.541(8)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13.6	40.7	35.7	9.3	0.7	100.0 (140)
대졸 이상	15.4	47.2	32.5	4.1	0.8	100.0 (123)
$\chi^2(df)$						3.592(4)
돌봄 유형						
영아만	14.4	36.7	38.9	8.9	1.1	100.0 (90)
유아만	12.9	46.5	33.7	5.9	1.0	100.0 (101)
영유아 모두	16.7	48.6	29.2	5.6	0.0	100.0 (72)
$\chi^2(df)$						4.748(8)

* $p < .05$, ** $p < .01$, *** $p < .001$

다. 급여 수준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 34.2%, 매우 불만족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9.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0.4%로 매우 낮게 나타나 대부분의 보육사들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보통 이상의 불만족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시설규모, 보육사의 특성, 돌보는 아동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3〉 본인 급여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13.7	34.2	42.2	9.5	0.4	100.0 (263)
시설규모						
50인 미만	15.7	33.7	47.2	3.4	0.0	100.0 (89)
50인 이상	12.6	34.5	39.7	12.6	0.6	100.0 (174)
$\chi^2(df)$						7.050(4)
연령						
20대	10.3	28.9	48.5	12.4	0.0	100.0 (97)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30대	19.5	32.9	41.5	4.9	1.2	100.0 (82)
40~50대	11.9	41.7	35.7	10.7	0.0	100.0 (84)
$\chi^2 (df)$						12.018(8)
경력						
5년 미만	13.0	31.3	45.0	10.7	0.0	100.0 (131)
5~10년 미만	15.6	36.4	40.3	7.8	0.0	100.0 (77)
10년 이상	12.7	38.2	38.2	9.1	1.8	100.0 (55)
$\chi^2 (df)$						5.721(8)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11.4	32.9	41.4	13.6	0.7	100.0 (140)
대졸 이상	16.3	35.8	43.1	4.9	0.0	100.0 (123)
$\chi^2 (df)$						7.406(4)
돌봄 유형						
영아만	12.2	35.6	43.3	7.8	1.1	100.0 (90)
유아만	16.8	29.7	44.6	8.9	0.0	100.0 (101)
영유아 모두	11.1	38.9	37.5	12.5	0.0	100.0 (72)
$\chi^2 (df)$						5.786(8)

* $p < .05$, ** $p < .01$, *** $p < .001$

라. 이직 경험

보육사에게 이직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이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2.0%로 나타나 많은 보육사들이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집 대상의 절반 정도가 5년 미만의 경력자들이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직 경험의 유무는 경력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경력이 높을수록 이직 경험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1.9회의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이직자가 50.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시설규모나 연령, 경력, 학력 및 돌보는 영유아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4〉 이직 경험 유무 및 횟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8.0	62.0	100.0 (263)	50.0	26.0	24.0	100.0 (100)	1.9
시설규모								
50인 미만	42.7	57.3	100.0 (89)	52.6	26.3	21.1	100.0 (38)	1.8
50인 이상	35.6	64.4	100.0 (174)	48.4	25.8	25.8	100.0 (62)	2.0
$\chi^2 (df)$	1.247(1)			0.309(2)				-0.5
연령								
20대	27.8	72.2	100.0 (97)	59.3	29.6	11.1	100.0 (27)	1.6
30대	47.6	52.4	100.0 (82)	46.2	20.5	33.3	100.0 (39)	2.1
40~50대	40.5	59.5	100.0 (84)	47.1	29.4	23.5	100.0 (34)	2.0
$\chi^2 (df)$	7.652(2)*			4.665(4)				1.8
경력								
5년 미만	20.6	79.4	100.0 (131)	59.3	25.9	14.8	100.0 (27)	1.7
5~10년 미만	48.1	51.9	100.0 (77)	48.6	27.0	24.3	100.0 (37)	1.8
10년 이상	65.5	34.5	100.0 (55)	44.4	25.0	30.6	100.0 (36)	2.1
$\chi^2 (df)$	37.703(2)***			2.323(4)				0.9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40.0	60.0	100.0 (140)	46.4	25.0	28.6	100.0 (56)	2.1
대졸 이상	35.8	64.2	100.0 (123)	54.5	27.3	18.2	100.0 (44)	1.7
$\chi^2 (df)$	0.497(1)			1.482(2)				1.4
돌봄 유형								
영아만	46.7	53.3	100.0 (90)	40.5	28.6	31.0	100.0 (42)	2.1
유아만	33.7	66.3	100.0 (101)	50.0	29.4	20.6	100.0 (34)	1.9
영유아 모두	33.3	66.7	100.0 (72)	66.7	16.7	16.7	100.0 (24)	1.7
$\chi^2 (df)$	4.340(2)			4.707(4)				0.8

* $p < .05$, ** $p < .01$, *** $p < .001$

마. 필수교육 이외의 교육

보육사를 대상으로 한 필수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의 기회 및 수강 경험 및 횟수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6.3%로 나타났으며, 기회가 있는 경우의 77.1%가 수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수강 횟수에 대해서는 평균 2.7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필수교육 이외 교육

단위: %(명)

구분	기회			수강			수강 횟수				평균
	있다	없다	계(수)	있다	없다	계(수)	1회	2~3회	4회 이상	계(수)	
전체	86.3	13.7	100.0(263)	77.1	22.9	100.0(227)	32.0	42.9	25.1	100.0(175)	2.7
시설규모											
50인 미만	87.6	12.4	100.0(89)	73.1	26.9	100.0(78)	36.8	43.9	19.3	100.0(57)	2.5
50인 이상	85.6	14.4	100.0(174)	79.2	20.8	100.0(149)	29.7	42.4	28.0	100.0(118)	2.9
$\chi^2(df)$	0.201(1)			1.085(1)			1.788(2)				-1.3
연령											
20대	88.7	11.3	100.0(97)	68.6	31.4	100.0(86)	30.5	49.2	20.3	100.0(59)	2.5
30대	90.2	9.8	100.0(82)	86.5	13.5	100.0(74)	40.6	39.1	20.3	100.0(64)	2.5
40~50대	79.8	20.2	100.0(84)	77.6	22.4	100.0(67)	23.1	40.4	36.5	100.0(52)	3.3
$\chi^2(df)$	4.576(2)			7.216(2)*			7.479(4)				3.5*
경력											
5년 미만	84.0	16.0	100.0(131)	75.5	24.5	100.0(110)	33.7	48.2	18.1	100.0(83)	2.6
5~10년 미만	85.7	14.3	100.0(77)	74.2	25.8	100.0(66)	34.7	36.7	28.6	100.0(49)	2.8
10년 이상	92.7	7.3	100.0(55)	84.3	15.7	100.0(51)	25.6	39.5	34.9	100.0(43)	3.0
$\chi^2(df)$	2.548(2)			1.977(2)			5.336(4)				0.9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87.1	12.9	100.0(140)	73.0	27.0	100.0(122)	34.8	42.7	22.5	100.0(89)	2.5
대졸 이상	85.4	14.6	100.0(123)	81.9	18.1	100.0(105)	29.1	43.0	27.9	100.0(86)	3.0
$\chi^2(df)$	0.175(1)			2.562(1)			0.969(2)				-1.6
돌봄 유형											
영아만	82.2	17.8	100.0(90)	73.0	27.0	100.0(74)	29.6	44.4	25.9	100.0(54)	2.7
유아만	90.1	9.9	100.0(101)	84.6	15.4	100.0(91)	33.8	39.0	27.3	100.0(77)	2.7
영유아 모두	86.1	13.9	100.0(72)	71.0	29.0	100.0(62)	31.8	47.7	20.5	100.0(44)	2.8
$\chi^2(df)$	2.503(2)			4.944(2)			1.255(4)				0.0

* $p < .05$, ** $p < .01$, *** $p < .001$.

보육사로서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아동 발달, 인격 형성, 양육 방법 및 기술, 훈육방법,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등 아동을 이해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청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사의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보육사들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 및 문제행동에 관한 이해를 원하고 있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 및 소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소결

본 절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중 보육사 배치기준인 0~2세 아동 2명당 보육사 1명, 3세~6세 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 7명당 보육사 1명의 기준에 있다. 그러나 0~2세는 평균 4.2명, 유아는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에 들어오는 영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많아 영아 대 보육사 비율이 법정 비율에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영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대해서 사회적·국가적 관심과 환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정 인력배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평균 8.0명의 현황은 7세 이상 아동의 배치기준인 7:1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아의 경우에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29%의 경우 여전히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를 막론하고 법정배치기준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

영유아가 가정 혹은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원가정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원인은 영유아 모두 대부분이 베이비박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에 들어온 영유아의 경우 원가정과 교류 및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른 시간에 주양육자와 분리되어 애착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베이비박스 영유아의 안정적인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원가정과 교류 하는 영아가 10.5%, 유아가 12.7%로 나타났고,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이비박스 영유아가 많기 때문이며, 교류를 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연락이 바로 가능한 경우는 영유아 각각 3.8% 4.2%로 나타나 매우 적지만, 가능한 경우 지속적인 원가정과 교류와 향후 복귀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바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의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시설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양육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의 권리 보장, 대체인력, 보육사의 보호자로서의 법적 권한 순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사들이 인식하는 종사자 처우 수준과 권리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사자 현황에 비추어보면 종사자들은 업무량이 과중하고, 38%의 보육사가 이직을 경험하였으며, 급여 수준에 크게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육사 대 아동의 비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보육사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유추할 있다. 이는 보육사의 처우 뿐 아니라 아동의 양육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법정 배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육사의 업무를 줄이고, 처우 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낮춰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I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 01 면담 참여자 특성
- 02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에 관한 면담 분석
- 03 소결

I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본 연구에서는 양육시설 종사자(시설장 및 아동보육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가정위탁센터, 위탁가정),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및 관련 단체 종사자 총 41명을 모집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대상별 1:1 혹은 집단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진행을 통해 돌봄 현황 및 지원 등에 대한 종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보육 담당자 인적사항, 기관현황, 영유아 양육 현황 및 애로 사항, 시설 운영 시 어려움 및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서울, 경기, 충남, 마산 지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수집된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및 관련 단체 종사자 대상 심층면담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1. 면담 참여자 특성

면담 참여자 특성을 살펴보면, 본 면담 참여자 36명 중, 양육시설 종사자가 총 12명,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8명, 일시보호시설 종사자가 5명, 위탁지원센터 종사자가 4명, 위탁모가 7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남성 참여자는 3명에 그쳤다. 참여자 대부분의 학력은 대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복지를 전공한 참여자들이 가장 많았다. 위탁모를 제외한 그룹의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 종사자의 경력은 길게는 36년에서 짧게는 5년 반, 공동생활가정은 최대 25년에서 최소 14년으로 조사되었다. 일시보호의 경우 가장 오래된 면담 참여자의 경력이 18년, 가장 짧은 참여자의 경력이 6년으로, 위탁모는 각각 7년과 6개월로 나타났다(표 IV-1-1, 표 IV-1-2, 표 IV-1-3, 표 IV-1-4, 표 IV-1-5 참조).

〈표 IV-1-1〉 양육시설 종사자 면담

구분	일시	성별	직급	경력	학력	전공	자격증
양육시설A	5. 7.	남성	시설장	총 45년	대학원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양육시설B	5. 7.	여성	보육사	16년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2급
양육시설C	5. 7.	여성	보육사	9년	대졸	기타 전공	사회복지사1급
양육시설D	4. 26.	여성	시설장	총 36년	대졸	-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양육시설E	4. 26.	여성	보육사	총 21년	대졸	-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
양육시설F	8. 8.	여성	시설장	총 6년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양육시설G	8. 8.	여성	국장	총 20년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양육시설H	8. 8.	여성	보육사	총 2년	대졸	기타 전공	사회복지사
양육시설I	8. 8.	여성	보육사	-	대졸	기타 전공	사회복지사
양육시설J	8. 8.	여성	시설장	총 22년	대학원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양육시설K	8. 8.	여성	보육사	총 17년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양육시설L	8. 8.	여성	보육사	총 5년 6개월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표 IV-1-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구분	일시	성별	직급	경력	학력	전공	자격증
그룹홈A	6. 19	여성	시설장	총 25년 현 기관 10년	2~3년제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그룹홈B	6. 19	여성	시설장	총 19년 현 기관 14년	2~3년제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1급 심리치료사1급
그룹홈C	6. 19	여성	시설장	총 20년 현 기관 5년	대학원 이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보육교사1급
그룹홈D	6. 19	여성	시설장	총 15년 현 기관 11년	2~3년제 대졸	사회복지 유아교육	사회복지사2급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그룹홈E	6. 12	여성	시설장	총 17년	대학원 이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교원자격증
그룹홈F	6. 12	여성	시설장	총 14년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상담심리치료사
그룹홈G	4. 25	여성	시설장	총 20년	대졸	-	사회복지사2급
그룹홈H	4. 25	여성	보육사	-	대학원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표 IV-1-3〉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구분	일시	성별	직급	경력	학력	전공	자격증
일시보호A	4. 26	여성	시설장	총 17년 현 기관 3년	대졸	교육학과	어린이집원장 자격증
일시보호B	4. 26	여성	보육사	총 6년 현 기관 1년	대졸	아동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1급
일시보호C	8. 19	남성	팀장	총 11년 현 기관 1년	대졸	사회복지	공무원
일시보호D	8. 19	여성	팀장	총 18년 현 기관 1년	대졸	사회복지	공무원
일시보호E	8. 19	여성	보육사	총 15년 현 기관 4년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표 IV-1-4〉 가정위탁 종사자

구분	일시	성별	직급	경력	학력	전공	자격증
센터A	4. 26	여	대리	7년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센터B	4. 26	남	팀장	5년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센터C	9. 19	여	팀장	-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센터D	9. 19	여	팀장	-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표 IV-1-5〉 가정위탁 위탁모

구분	일시	성별	직급	위탁 기간	관계	학력
가정A	7. 4	여	일반	-	일반위탁	대졸
가정B	7. 4	여	일반	-	일반위탁	대졸
가정C	7. 8	여	일반	4년	일반위탁	-
가정D	7. 1	여	일반	3년	일반위탁	중졸
친인척A	7. 16	여	친인척	7년	할머니	고졸
친인척B	7. 16	여	친인척	3년	할머니	중졸
친인척C	7. 16	여	친인척	6개월	고모	전문대졸

2.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에 관한 면담 분석

개별 혹은 집단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 수집된 양육 현황 및 지원 등에 대한 종사자들의 경험과 인식은 귀납적 범주화를 통해 분석되었다. 면담의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이후 녹취록으로 작성하였으며, 녹음과 녹취록을 반복하여 듣고 읽는 과정을 통해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후, 녹취록을

바탕으로 시설 유형별로 의미단위-개념-하위범주-상위범주로 이어지는 범주화 작업을 통해(배운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 2016) 보호가 필요한 아동양육현황 및 종사자 현황 등을 개념화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직화해서 제시하였다. 4가지 유형의 아동보호시설 별로 먼저, 시설현황 및 특성에 관한 분석 내용 서술하였고, 다음으로 양육 현황 및 특성, 마지막으로 어려움 및 개선 요구 순서로 서술하였다.

가. 시설 현황 및 특성

시설 현황 및 특성에서는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가정위탁의 시설 형태, 종사자 근무 유형, 운영비, 배치 체계 등에 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의 경우, 지자체 사업으로 보육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 소규모 시설의 시설장, 팀장, 보육사를 포함한 다양한 직급의 종사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설 및 양육 현황과 특성을 수집하였다.

가) 시설 형태

먼저, 면담에 포함된 재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일시보호시설의 주요 기능은 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임시적 보호 제공이다. 시설은 아동의 안정적인 거취가 결정되기까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치료 및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데는 그룹홈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아동이 2년이 있는 데도 있고 3년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정말 학대피아동쉼터에 맞게 임시보호쉼터입니다... 아동들이 양육 시설 가기 전에, 학대 받고 오는 아동들이, 신체 학대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한테 와서 조금은 안정이 되어서 갈 수 있다는... (일시보호 A)

반면,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가 아닌 30명 정원의 보호 시설로, 일시보호, 상담, 아동학대 예방 등 보다 종합적

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일단 우리는 종합아동, 종합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종합시설로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일시 보호기능이 있구요. 그리고 아동 내지는 가족 상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하는 기능이 있구요. (일시보호 C)

면담에 참여한 기관 모두 보호하는 아동의 연령과 수가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까지 6명 있다가 들쭉날쭉하게, 학대를 받아서 긴급하게 들어오는 아동들이 되다보니까 6명이 있을 때도 있고 한 명이 있을 때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이 없어요. 올 초 같은 경우엔 한 달 안 된 아기도 왔었습니다, 남자 아기.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성인되기 직전까지 아동이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초등학교 애들이 많구요, 어떤 해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많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연령대가 많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시보호 A)

아이 연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연령층이 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일시보호 D)

면담에 참여한 기관의 2018-2019년 기준 미취학 아동 배치 현황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2018-19년 월 평균 연령별 아동 수는, 0세에서 2세 아동이 12명, 3세에서 6세 아동이 4명으로, 월 평균 16명의 미취학 아동이 본 시설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월 평균 22명 중 73%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나아가, 재단에서 운영되는 시설의 시설장 또한 미취학 아동의 배치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취학 전 아동들도 저희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어린 아동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시보호 A)

배치 후 일시보호시설에서 머무는 기간의 경우, 재단 운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의 소규모 시설에 배치된 아동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규정상 90일이다. 그러나 이는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희가 90일입니다. 원래는 90일이고 이렇게 연장이 들어오면 연장신청이라던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아동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정해지지 않으면 연장신청해서 사가 이루어지면 더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보호 A)

반면,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머물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면담 참여자들에 따르면, 시설 운영 형태에 상관없이, 아동의 상황에 따라 시설 보호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배치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내질 때까지는 저희가 데리고 있는 편입니다... 원가정에서 학대로 받아서 온 아동인데, 다시 보낼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한 뭐가 없으면 정해질 때까지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일시보호 A)

저희 기관에는 평균 일주일 있다가 보내는 확률이 크다는 거지 어떤 친구들은 베이비박스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한달, 6개월 가는 친구도 있고, 최근에는 2년까지 간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 친구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런 상처받는 아이들은 감각 훈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나서서 시설을 가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최장 저희가 베이비박스지만 일년 까지 머무른 아이가 있고, 6개월 있고... (일시보호 D)

사례관리의 경우, 같은 일시보호 안에서도 시설의 운영 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식의 소규모 일시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에 현장 조사 팀과 사례관리 팀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아동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는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했을 때에만 진행되며, 다른 유형 가정 외 보호에 배치되었을 때에는 아동에 대한 관리가 종결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아동이 양육시설에 가면 종결이 되겠지만, 아니면 계속 사례관리를 합니다. 가서 뭐가 부족한 게 있는 지도 살펴봐야하고, 아동들이 어디 아픈 게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봐야하고... (일시보호 A)

반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되는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퇴소 시 아동에 대한 관리가 종결되며, 이후 사례관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근무 유형

면담에 포함된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의 소규모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육사들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아동의 수와 연령이 유동적임을 감안해, 근무표 작성 시 비상근무조를 구성하여 보육사가 항시 대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간 야간 근무표대로 움직입니다... 저희가 보면 하루 근무하고 이를 쉬다든지, 그렇게 움직여줍니다. (일시보호 A)

보육사들은 아동이 있을 경우 24시간 아동과 함께 숙식하며, 이에 따른 불편함으로 이직률이 높다고 지적되었다.

이직률은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같이 잠을 자다보니깐 선생님들이 불편하신 거예요. (일시보호 A)

반면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모든 종사자들이 공무원이며, 순환근무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덕분에 이직률이 낮고, 한 시설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아동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육사의 근무형태는 임기제와 시간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담에 참여한 시설은 총 8명의 보육사가 근무하고 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체제로 주야간 2인 교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동 대 보육사 비율을 맞추기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과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사 충원에 기여하고 있다.

다) 운영비

재단 운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 시설의 시설장에 따르면, 사업비는 연간 총 3천만원으로, 이는 아동의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 금액이다. 시설은 사업비 안에서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의식주까지 해결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시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경제적 보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시설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있었던 아동이 정확하게 37명입니다. 그러면 이 아동이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건강검진도 시켜야하고, 의료지원도 해야하고 피복지원도 다 해야하고 하는데...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이거 쓰고 조금씩 해서 이 아동한테 쓰고, 좀 부족하면 보호자분에게 얘기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일시보호 A)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일시보호시설의 상황도 비슷했다. 면담에 참여한 종사자에 따르면,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시설의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된다. 후원금 및 물품 등에 대한 지원 또한 법적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육수당 하고 다른 게 저희는 총괄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양육시설은 법적인 양육비 얼마 시설비 얼마 운영비 얼마 교육비 얼마 이렇게. 30명이니까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일시보호 D)

이러한 사업비 지급 방식은 한해 아동의 연령 및 그 수가 고정적이지 않은 일시보호시설에는 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참여자들은 강조했다. 운영비 편성에 따른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이후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유형의 일시보호시설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에서 그 차이를 보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모든 종사자들이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지자체의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의 경우,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각 시설에 대한 한해 인건비가 지정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마다 가이드라인대로 다들, 특히 양육시설은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호봉 같은 게 없습니다. 올해 ‘인건비입니다’ 하고 딱 정해지면 저희는 그 안에서만 하다보니까 사실 항상 부족한 건 있습니다. (일시보호 A)

라) 배치 체계

지자체 일시보호시설 종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을 거친다. 경찰, 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 배치되며, 배치 이전에 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별도의 장애인시설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과는 차이점이 있다. 재단의 경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례로 면담에 참여한 시설 중 한 곳은 당시 장애를 지닌 아동을 보호 중이었다.

지자체에서 일시보호시설에 배치되면, 시설의 상담팀과 생활지원팀이 매주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아동이 배치된 주된 이유, 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후 배치에 관해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시청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전달되며, 이후 아동에 대한 배치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아동복지법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보호 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에서 보호대상아동들이 발생하게 되면 각 자치구에서는... 구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기능으로, 그 자원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아동복지센터로 다 오는 거죠. 일단 다 여기로 와서 임시 보호하면서 아동상담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아동한테 최적의 방법이 뭐냐는 검토를, 직무 파트별로 모여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아동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그래서 처음에 검토 되는게 원 가정복귀, 그 다음에 입양 내지는 가정위탁, 그 다음에는 공동생활가정 또는 양육시설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내 회의나 이런 것들은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어떤 게 좋겠다고 해서 가족과에 승인요청을 하면 가족과에서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아동 배치하고 이런 것들... (일시보호 C)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가정 복귀 또는 가정 외 보호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2-3 개월 동안 기간에 있다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원 가정으로 가라 아니면 이 친구는 원 가정이 안 되니까 시설로 보내라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센터는 보호시설로 보내든, 귀가하든, 가정입양 하든,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일시보호 D)

종사자에 따르면, 베이비박스를 통해 일시보호시설로 배치된 경우, 시설에 오랜 기간 머물 수 없으므로, 배치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양육시설에 배치 의뢰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른 배치 시 우선순위는 원가정이 가장 먼저이고, 다음으로 가정위탁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정위탁으로의 배치는 대부분 지자체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배치가 되지 않은 아동만 일시보호시설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의 가정위탁 배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치구 단위에서 되는 거는 우리 센터에서 가정위탁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자치구 단위에서 되는 거는 거기서 다 하더라구요... 가정위탁을 하긴 하지만 자치구에서 일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위탁은 저희가 덜 의뢰되다 보니까. (일시보호 D)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양육시설로의 배치가 가장 많은 실정이며, 그 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원가정 순이라고 응답하였다.

사실 저희가 원 가정이 첫 번째고 가정위탁이두 번째지만, 사실 가정위탁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가정위탁으로 가는 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양육시설로, 그룹 홈으로 가는 확률이 크고, 원 가정으로 가는 확률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일시보호 D)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는 가정위탁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배치 체계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서 살펴볼도록 하겠다.

베이비박스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시설 배치는, 지자체에 있는 양육시설을 모두 고려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로 배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시설에 배치할 경우 고려하는 점들은 아동의 원가정 위치, 학교, 주거환경 등이 있다고 전했다.

근접성이 있는 학교, 집 이렇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가 우선순위고, 작은 아이들은 그런 거를 찾아봐가지고 보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설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게 되요. 그런데 정원과 현황이 있으니까. 정원이 다 차면 못 받으니까 다음에 다른 시설을 알아보게 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일시보호 D)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의 퇴소 이후 배치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 운영 시설 대비 수동적이며, 종사자의 의견 반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설에 T.O가 있는지, 그 자리에 선생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은 또 다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런 아동이 입소했습니다 하고 입소의뢰를 보내면 시에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나중에 ‘이 아동은 어디 양육소에 보내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퇴소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아동 데려다주고 이렇게. (일시보호 A)

2) 아동양육시설

가) 시설 형태

면담에 참여한 양육시설은 모두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용이한 환경에 위치해 있었으며, 몇몇 시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 다목적 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

보다시피 대로 가에 집이 있다 보니까 노출을 적게 하고 싶어서. 빌리지 빌라 이런 느낌을 두고 싶어서 12년부터 개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시설 F)

노인잔치 같은 거 해도, 여기 주민자치단체가 협조해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는 다 여기서 해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도 다 여기서 해요. 저희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편견이나,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아파트나 빌라가 많이 들어섰어요. (양육시설 J)

지역아동센터하라고 동네 애들. 노인하라고 그래서 재가 노인센터 저기. (양육시설 A)

또한 몇몇 시설은 아동양육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 외 보호를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한 양육시설은 시의 지원을 받아 원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나누었으며, 또 다른 시설은 아파트 형태로 된 자립홈을 운영하여 보육시설의 아동들이 퇴소 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이 원내 그룹홈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바깥에다 집을 하나 얻어서 아이들, 여자애들 몇 명 데리고 나가서 그 선생님이 워킹맘처럼, 그렇게 해서 퇴근하면 집에 가고, 집에 가면 그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바깥에서 자립 연습 시킨다고, 가재도구나 물품 사고. 아이들은 어쨌든 여기서 생계비는 그 아이들 몫이니까, 그거는 거기로 가면 선생님이 거기서 운영하고, 아이들하고 시장 가서 만들거리도 사고. 그냥 보통 가정 엄마들 시장 가서 장봐와서 사듯이,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개네는 딱 보면 온전한 가정에서 잘 자란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 우리 그 자립홈은 성공했어.' (양육시설 J)

자립원을 지었죠. 우리보육원 애들만 아니라 타 보육원 애들 30명이 4~5년 간 무료로 방을 제공하고... 소형 미니 아파트처럼 되어 있어요. (양육시설 A)

이러한 시설의 원장들은, 향후 시설이 지역사회 내 양육시설로서의 역할보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 조금 더, 이 건물 자체의 활용도도 높이고 나중에는 저희가 2층에 치료센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도 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노인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뭔가 하여튼, 예전 같은 보육원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거점기관이고 그런 아이들은 나가서 좀 더 편안하게 집에서 길러지는 것처럼 편안하게 있고.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향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양육시설 J)

먼 훗날 (본 양육시설은) 노인시설로 가야합니다. (양육시설 A)

나) 근무 유형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시설장들은 시설에 상주하지 않는다. 보육사의 근무 형태는 시설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주야 2교대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일부 시설의 경우, 48시간, 2교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보육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풀로 48시간 일하고 체인지... 직원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법대로 하겠다. 싫다는거 예요. 보육사 역할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틀하고 이틀쉬어요. (양육시설 A)

원래 하루하루 근무거나 2일2일 근무잖아요. 근데 이모들이 생활습관이 다르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2교대는 2교대예요. 15일 일하고 15일 근무하는 건 맞는데 자기 파트너랑 자유롭게 짜고 있어요. (양육시설 C)

다) 운영비

양육시설은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운영비, 인건비 아동의 생계비 등을 포함한다. 정부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에 상관없이 보조금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후원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은 100%. 민간이고, 100%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태고. 지금 보조금도 정말 극히 제한적이고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만 준다는 거죠. 생계에 필수적인 것만. (양육시설 D)

저희 인건비하고 아이들 생계비는 정부 보조금으로... 똑같죠. 그런데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으로 나오는 거는 아이들 심리치료비, 사교육비, 문화생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후원금으로 하고 있죠. (양육시설 F)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 시설 형태

시설 환경의 경우, 면담에 포함된 모든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지역사회 내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 위치해 있었으며, 시설장들은 이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근데 아파트는 사실 익명이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여기 20년 살았지만 저희 집이 이런 집인 거 한 세네 집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룹홈 G)

면담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들은 어떤 형태로든 운영 중인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은 시설장 개인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시설장들이 재산을 만들어야 해요. 이 집을 만들어서 아이들 받는 거예요. 사비죠.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룹홈 C)

사실은 집도 우리 돈이잖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사실 못하는 거지. (그룹홈 E)

시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으로, 종사자의 가족은 시설 내에 함께 거주할 수 없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시설장들 중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위해 자신의 원가정을 분리시키거나, 그러한 사례를 접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그룹홈은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가족을 하나를 더 받아들였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 종사자 가족은 거주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가족은 못 산다 그러니까 가족을 다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도 집은 안 주는 거죠. (그룹홈 C)

원칙적으로 7세 이상의 아동은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면담 참여 시설 중 한 곳만 미취학 남매를 보호하고 있었다. 한 시설장의 경우, 남매가 분리되어 보호받는 것이 안타까워, 한 건물에 두 개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여 분리 보호 원칙은 지키되, 남매가 한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지만 수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여행을 가거나,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밥을 먹는거나 이런 식으로... (그룹홈 C)

나) 근무 유형

각 시설의 종사자 수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시설장 한명과 보육사 2명이 근무하는 형태라고 응답했다. 면담에 참여한 시설장의 대부분은 시설에 상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사의 경우 주 5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근무 형태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있구요. 상주. (그룹홈 G)

영유아들은 거의 시설장인 제가 담당해요.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자는 것들 이런 거 다 봐줘야 되니까... (그룹홈 F)

근무 시간의 경우,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자정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현장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근무시간은 거의 주 52시간이에요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는거죠. 그런데 잠자는게 휴게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게, 아이들이...잠자면서도 몇 번씩 일어나야 되고 몇 번씩 일어나서 이불 차는 것들 덮어줘야 되고 거의 잠을 못자는 거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잠을 못자는 거예요. (그룹홈 F)

다) 운영비

현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복권기금 사업이며, 이에 따라 예산 심의는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각 시설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생계비 등은 아동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 지원받고 있다.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니고 로또기금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급여가 기재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요. (그룹홈 G)

종사자들 인건비의 경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는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면담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운영비 및 인건비는 지자체와 후원금 유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래는 각각 다른 지역의 운영비에 대한 응답이다.

아이들한테 직접적 경비는 다 쓰는 거고요 그걸로, 운영비는 올라간 게 30만 3천원. (그룹홈 C)

주거지원비를 뺀 나머지는 거의 한 48만원. (그룹홈 F)

지원금은 형제자매가 같은 시설에 함께 배치되는 경우, 각 아동 당 개인 몫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2인 가구 기준으로 차감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도 깎이고. 두 가구라는 거죠. 개개인으로 해서 생계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2인 가구다 해서. 1인이면 50만원, 50만원 이면 100만원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80만원, 80얼마 이렇게 깎여서 들어와요. 삼형제가 들어오면 더 깎여서 들어와요. (그룹홈 F)

4) 가정위탁

가정위탁의 면담 참여자들은 가정위탁센터 종사자, 일반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으로 구성되었다. 센터와 위탁가정의 역할 차이가 분명한 만큼, 분석 결과를 구분지어 제시하였다.

가) 가정위탁센터

(1) 가정위탁센터의 역할

가정위탁센터의 사업은 지자체에서 아동복지 기관에 수탁하여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게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센터 A)

가정위탁은 다 지자체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센터 B)

면담 참여자들의 응답을 보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목표는 원가정 복귀 및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저희는 목적이 원가정, 친가정 복귀고 거기는 입양이 목표가 되겠죠...저희의 궁극적 목표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목표는 아이들이 시설 내에서 사는 것보다 가정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전제가 되는 겁니다. (센터 B)

덧붙여, 가정위탁의 기본적인 개념은 위탁을 통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보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되어, 아동이 가정생활을 경험하고,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전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커 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봐요. 물론 적응을 못 할 수도 있고, 자기 친 아이들도 적응 못해서 이탈하고 난리치는 데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커야, 나중에 자기들이 가정을 일구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지향적인 뜻이 있거든요, 가정위탁이.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가정에서 지내보고. 그런데 애착관계가 시설처럼 저렇게 여러 명의 애착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전폭적인 신뢰, 이것들이 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센터 B)

센터의 역할은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주된 업무는 위탁가정 발굴 및 양성, 아동 배치, 사례관리,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센터에서 발굴하고, 한마디로 예비위탁부모 발굴과 양성을 가정위탁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보호아동 발생해서 지자체에서 넘어오면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의 예비위탁부모님 대기 된 가정들을 저희가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센터 A)

사례관리의 경우, 크게 통합사례와 기본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형에 따른 관리 체계가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통합사례의 경우, 월 1회 이상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며 연 4회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기본형의 경우 연 2회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있다고 전했다. 또한, 위탁가정이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침 상에 기본형 통합형 크게 두 개로 나뉘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조금 더 개입이 필요하고 면밀하게 봐야하는 건 통합형으로 너네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라, 나머지는 그냥 기본형으로 관리를 해라 라고 그거에 대한 케이스 기준은 나와있지는 않

아요.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학대 의심이나 아니면 조금 깊이 있게 봐야 하는 가정들은 통합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통합형 같은 경우는 월 1회 사례 개입을 하고 연 4회 사례회의를 하게 되어있고, 기본형은 연 2회 개입을 하고 최소 월 1회 사례회의를 하라고 되어있어요. (센터 A)

위탁가정 부모들은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동 폭력, 학대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위탁부모가 된 이후에도 연 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이 위탁가정의 양육자에게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엄청 되죠. 몰랐던 걸 알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거. 애들 고등학교까지 성인 때까지 직장 그 직장 얻을 때까지 뭐 하여튼 많이 도움 됩니다. (친인척 A)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의 물건을 부시는 것도 일종의 학대다. 이런걸 잊을만하면 시켜주니까. 감정대로 할 때가 있는데 그런걸 교육을 꾸준히 해줘서... (가정 A)

뿐만 아니라, 면담에 참여한 한 센터 종사자는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에도 정기적인 원가정 교류는 아동의 정서적인 부분 등에서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위탁센터의 또 다른 역할 중의 하나라고 응답하였다.

(2) 배치 체계

면담에 참여한 센터 종사자들의 말에 따라 일반가정위탁 배치 체계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준 위탁가정으로의 배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에서 센터로 연락이 온다고 설명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아동 및 대기 가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후, 아동 및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선정하여 지자체에 의뢰하고, 지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책정권한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통보를 받아서 하는데 일반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권한이나 역할이 많은 부분이 예비위탁부모 양성이나 교육 이런 심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매칭은 저희 회사가 봐달라, 지자체한테 이렇게 매칭할 건데 괜찮겠니 하고 모든 서류를 통해서 주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센터 A)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준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판단되는 경

우,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하는 사례가 적다고 지적했다.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마 장기아동이라고 생각하면 저희한테 잘 안 보내려고 해요. 원가정을 가려고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해요. 저번에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장기위탁 보호라고 생각하면 시설 쪽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가서 '아니다, 우리한테 먼저 보내달라'고 얘기는 해봤어요. (센터 B)

위탁가정 배치의 또 다른 경로는 친부모의 부탁이나 여러 사정으로 이미 아이를 맡아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 양육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바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적격여부 심의를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는, 앞서 일시보호시설 종사자들 사이에서 언급된 위탁 가정에 배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배차권한, 매칭에 따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배치 체계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은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정되어서 대기 중인 가정) 한 20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쉽지가 않아요. 가정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아이의 특성도 있고. (센터 B)

(3) 운영비

지자체 수탁 사업임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지원 및 기관 기금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비, 사무비(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시설비 등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용은, 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희는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비 쪽에서는 저희 예산이 많아요. 다는 아니고 일부는 사업비 중에도 (시도) 보조금이 있어요. (센터 B)

나) 위탁가정

(1) 지원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살펴보면, 양육 보조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가정위탁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원금의 총액이 70만원 정도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총 100만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는 지역도 있었다.

일반위탁부모는 매달 12만원 받는 게... 아동 1인 수급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평균 보니까 5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곳도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데. (총) 70만원 정도 돼요. (가정 A)

(기초수급) 그거 둘이 해서 80얼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반찬비라던가 아이들 간식비로 3만원하고 10만원 나오고요. 저한테도... 모르겠네. 확실히 모르겠는데 20만원 정도 나오는거 같아요... (아이 둘) 합해서, 하나에 40위 이래 되는 겁더라고. 그게 85인가 86만원. (친인척 B)

수급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출하는 것 역시, 권고사항임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아동의 후견인이 되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연 1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인척위탁의 경우, 친부모의 유족연금까지도 아동의 수입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의 생계급여가 차등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달부터도 조금 문제가 되게 유족연금이 있거든요. 동생이 죽으면서 유족연금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게 시스템으로 조회가 돼서 저희가 잘못된 건 아닌데 환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유족연금은 다시 다. 생계급여가 몇 달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환수조치하는거죠. 유족연금은 수입으로 들어간대요. 애들 수입으로. 생계급여에서 까고 다시 받았던 건 다 환수 조치하고... (친인척 C)

초기적창 지원금에 대한 질문에는 센터 종사자, 일반위탁가정, 친인척위탁의 참여자가 모두 상이하게 응답하였다. 이는 위탁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초기적창 지원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거는 간헐적으로 지원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저희 센터 내부적으로 법인 자체에서, 일반 위탁가정으로 책정되면 초기 정착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거는 그냥 지침이나 법이 아니라 저희 법인에서 후원금 지원받은 걸로 초기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지정된 아이들은 가구도 사야할 거고, 초기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심의해서 지원하는 게 대략 100만원 안쪽으로 해요. (센터 A)

위탁 시작 시에 초기 정착금이 30만원이 나와요. 요즘 올라서 100만원인데. (가정 B)

아니요, 없었어요. (친인척 C)

나. 양육 현황 및 특성

양육 현황 및 특성에서는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 영유아가 배치된 주된 이유, 양육환경, 보육·교육 현황, 원가정 교류 및 복귀와 관련된 내용 등에 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일시보호시설

가) 배치의 주된 이유

과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일시보호시설에 많이 배치됐던 반면, 현재는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부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까지, 배치의 주된 이유가 보다 다양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초창기 저희 센터에는 가정가계 문제가 우선이었는데, 요즘은 가정가계 문제는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고 학대, 기아, 유기, 이런 확률이, 이제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 맞춰 그런 게 늘어나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일시보육 D)

나) 양육 환경

지자체 운영 일시보호시설의 특성상,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되는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시설에서 보호되는 동안 양육자 변동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아동이 오래 머무를 경우에도, 공무원 임기제 보육사들이 길게는 7년까지 같은 시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아동을 지속적으로 보육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이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단 한 사람만 바뀌어도 정말 예민하고 그런데... 다른 데 보다는 덜 움직이는 감이 있어서 다른 곳 보다는 지속성이 조금 길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성이 있다 보니 장점도 있긴 해요. (일시보호 D)

반대로, 재단 운영 일시보호시설은 지자체 운영 시설보다 아동이 머무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아동이 담당 보육교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어쨌거나 선생님들이 이틀에 한 번씩은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 아동들이 하루나 이틀만 있다가 가는 아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짧으면 한 달 정도, 길면 5개월씩도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늘 보는 선생님들이라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담당이 있어서 불안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어하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별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보호 A)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어려움으로 지자체 운영 시설은 아동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을 지적하였다. 특히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이들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육사와 관리자 모두 공통적으로 토로하였다. 부모의 유전적 요소, 태아 시절의 환경, 출산과정,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신생아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버려진 상태에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충격을 받은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일시보육 E)

다) 보육·교육 현황

보육·교육 현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사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영유아의 생활습관 훈련과 관련된 분석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재단 운영 시설에 종사하는 참여자는 원가정의 부모가 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 해주지 않으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학습 수준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 운영 시설에 배치된 아동의 경우는,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가요. 못 가요. 주로 오래있는 애들은 법원에 절차에 따라서 대기기간이라 보시면 되요. (일시보육 D)

이에 따라, 외부 선생님을 통해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어, 수학, 영어를 비롯한 체육활동, 미술활동, 현장학습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업이 없는 주말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미술치료, 음악치료, 체육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저희는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미술활동, 월 현장학습 영화보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일시보호 E)

(2) 사교육 이용 현황

재단 운영 시설의 경우, 아동의 욕구를 반영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한해에 주어진 운영비를 고려해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아동의 욕구를 전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애들이 학원을 가고 싶거나 이러면 보내주는 합니다. 미술 학원이든 다 보내주는데, 한 달 동안 애가 미술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음 아동들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일시보호 A)

(3) 생활습관 훈련

면담에 참가한 모든 시설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 습관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설거지 정도는. 그리고 저희가 음식을 하면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는 시킵니다. 그리고 샤워하거나 이런 거도 혼자 할 수 있게 하고... (일시보호 A)

라) 원가정 복귀

앞서 배치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시보호시설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에 많이 오면 원가정이 첫 번째 목표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룹 홈이나 양육시설로 가는 확률이, 저희 센터에 있다가 가는 확률이 좀 크구요. (일시보호 D)

이는 지자체 운영 시설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원가정 복귀와 시설 배치 비율을 물었을 때, 재단 운영 시설장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양육시설 가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한 4 대 6 정도 되지 않을까... (일시보호 A)

원가정 복귀가 되는 사례도 있으나, 복귀 이후 다시 가정 외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대, 모의 지속적인 자해 시도로 일시보호시설에 배치된 아동이 3개월만에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이후 반복되는 모의 자해 시도로 다시 원가정에서 분리된 사례가 예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원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아동양육시설

가) 배치의 주된 이유 및 과정

학대로 인한 시설 배치 아동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먼저 배치되고, 이후 기관에서 시설로 의뢰가 온다고 전했다. 양육시설로의 주된 배치 이유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많은 듯했으나, 현재는 유기 및 학대로 인한 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 이혼 등으로 왔는데 그 이후 중간단계에 아동유기, 베이비박스로 유기아동이 많이 들어왔고 요즘은 학대 아동이 많이 들어와요. (양육시설 B)

베이비박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방임이나 학대. (양육시설 D)

나) 양육 환경

시설의 환경 특성에 대한 논의 내용으로, 가정의 환경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 여러 면담 참여자들 사이에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는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반 가정은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엄마아빠의 자연스러운 롤모델을 보면서 가족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신뢰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보니깐, 아이들이. (양육시설 F)

일반 집에서는 해봤자 세 명, 두 명이잖아요 그럼 해줄 수 있어요. 지지고 볶고 해도. 따른 일반 집에서 해주지 못해도 왜 해주지 못하는지 몸소 체험하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저

희 애들은 구조상 이게 안되는거 같아요... 저희는 가정에서 배우는거 하나하나 알려주고 알려줘야해요... (양육시설 B)

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사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아동의 정서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 10명도 맞추느라 힘든데 자기들도 저랑 저 파트너한테 맞추는거죠. 애들도 사랑 받고 싶거든요. 여기 살아야하고. 애들도 그렇게 보면 맞춰가는거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양육시설 B)

특히 영유아가 애착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주로 많이 보니까 어머니 아빠, 아니면 조부모께서 애착이 확실하게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갑자기 그만두면 부모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육시설 K)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일시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을 지적하였다. 대부분 부모의 유전적 요소, 태아 시절의 환경, 출산과정, 건강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3세들 막 이런 아이들도 저는 히스토리를 몰라서 병력이나 아니면 그전에 생활했던 패턴 같은 걸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케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중간 입소한 3살 이후의 아이들은 남아있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아이들하고 어울려 생활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양육시설 I)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을 보고 판단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유기된 아이들은 뿌리를 모르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거예요. 기질적으로. 저희도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하지 할 때가 있어요. (양육시설 B)

법적인 책임의 경우, 유기로 인해 배치된 아동의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시설에 있다. 면담에 참여한 종사자들 말에 의하면 법적인 책임에 관련한 문제는 유기아동보다, 부모가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아도 필요시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더 크다고 전했다.

다) 보육·교육 현황

보육·교육 현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사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영유아의 생활습관 훈련과 관련된 분석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면담에 참여한 시설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만 3세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시설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영유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답하였다.

3~4세부터는 무조건 어린이집 가고 있어요 (양육시설 J)

저희가 일일 1회해서 자체적으로 영유아 프로그램 같은 걸 유치원처럼 진행해주고... (양육 시설 K)

조사 결과, 면담에 참여한 시설의 아동 중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단 1명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후원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1명 있어요. 비용이 비싸서. 그 유치원은 원장님 후원으로 공짜로 다니거든요. (양육시설 C)

한 시설의 경우, 아동들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시설 내의 여러 아동이 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한 반면, 또 다른 시설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부모들의 항의로 인해 총 7개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아동들을 나누어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입소 순위와 시기에 대한 어려움 및 요구 사항은 이후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현황

면담에 참여한 시설은 대체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의 두뇌도 자극도 시키고... (양육시설 J)

오감 프로그램 진행해주는 강사님도 몇 분 계시구요... 학습교재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양육시설 H)

반면, 경제적인 이유로 사교육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시설도 있었으며, 시설의 단 1명의 아동만이 정서 치료를 목적으로 학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지금 이제, 사교육은 한 명 있지? 한 명 지금 있어요, 사교육.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도 지금
엄마 학대로 들어온 아이기 때문에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서... (양육시설 D)

영유아 대상 교육 및 사교육 이용 관련 경제적 어려움은 위의 시설 외에도 여러 참여 종사자들에게 들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3) 생활습관 훈련

면담에 참여한 양육시설 종사자들은 기본 생활 습관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례로, 기본 가사 활동에 대한 참여 요구가 가능한지 질문하자 한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가능하진 않죠. 왜냐면 이제 잡음이 나오죠.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친 않지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가정교육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걸 교육으로 받아들이는지는 개인 차이가 있죠. (양육시설 D)

또 다른 시설의 종사자도 생활 습관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아동 현장은 아동의 인권은 있고, 직원 인권은 없어. 정부가 아이가 더 건방지는거라니까... 어느 이모가 야단 치겠어요. 정말 잘 해주고 싶은데 인상쓰고 있잖아요. 깨우면 왜 깨우냐고 욕하고. 이모도 사람이예요. 현장은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양육시설 A)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더욱 단호하고 엄격하게 생활 습관 및 예절 교육을 이어나간다는 종사자도 있었다.

예의를 가르치고 싶었고 그때 학교가서 상담가서 들었던 얘기가 부모 없어서 저러지. 이렇게 젊은 데 엄마라고 키워봤자 부모라고 말을 듣나. 그때부터 악에 받쳐가지고 애들을 단호하게.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열 번해서 안되면 천번 가르쳐야죠... 저는 단호하고 엄한 편인데 다른 분들이 보실 때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흔들리지는 않아요. 혼란을 덜주기 위해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되지 않도록 받아들여주고 있고...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되는 건 아니고 틀 안에서 다르게... (양육시설 B)

라) 원가정 교류 및 복귀

유기아동 및 강제분리 아동의 경우 원가정 교류가 있을 수 없으며, 나머지 아동의 원가정 교류는 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전혀 교류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양육시설 D)

학대라든지 특수한 경우도 강제 분리가 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좀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저는 집으로 최대한 가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을 가는 날을 정해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양육시설 F)

양육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원가정 교류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정서적인 부분이 특히 강조되었다.

가는 아이들과 못 가는 아이들 자존감의 차이로는,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건 그래도 집에 갔다오면 훨씬 안정이 되요. 그래도 플러스죠. 설사 우리가 봐서 부모 같지 않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개네들은 엄마아빠 집에 갔다 왔다는... 갔다오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죠. (양육시설 F)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그냥 집에서 있다가, 또 엄마가 면회를 자주 오게 되거나 이러면 확실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뭔가 모르는 자신감. (양육시설 J)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드러났다. 원가정 교류 관련 단점은 장,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나뉘는데,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원가정 교류 후 시설로 복귀 했을 때 겪는 어려움이 있다.

제 내 뒤에 엄마가 있다 이거죠, 부모가. 그래서 이제 안 만나고 왔을 때는,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잊고 있으면서 선생님들과 잘 적응하고 있다가 갔다 오면 으쌰으쌰 되는 거죠. 갔다 오면 부모들이 바람직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가정방문을 시키고 돌아오면 말을 안 듣거든요. 남으라고 하면, '뭔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양육시설 D)

이에 따라, 한 시설장은 가정 외 보호 시설로 배정되는 예산이 원가정 지원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류가) 찾으면 뭐해. 원이 하숙집 같으면 안된다니까요. 주말에 집에 갔다 왔어. 그러면 싸운다니까요.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해요. 정부도 그 예산을 글로 주란말이에요. 정말 이런 시설은 아무도 없는 아이. 필요하면 케어를 해야합니다. 이걸 해야합니다. 안타까워요. 왜 이걸 못 할까. 할 수 있거든요. (양육시설 A)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으로는, 어느 순간 아동과 부모의 역할이 바뀌어, 퇴소 후에 아동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어 부모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픈 사실은 보호자하고 아이 처지가 아예 바뀌게 돼요. 우리 아이가 엄마아빠의 심적으로 보호자가 되고 엄마아빠가 우리 아이한테 징징거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네들이 자기가 보호자가 돼가지고 책임감을 같이 끌어안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실패하면 실제적으로 애네들이 보호자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양육시설 F)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 배치 주된 이유 및 과정

면담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이 보호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대부분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학대해서 오게 되는 건데... (그룹홈 C)

오게 된 배경도 애네들이 그냥 학대예요. 아니 한명은 학대고, 방임 거의. (그룹홈 F)

학대뿐만 아니라, 베이비박스 또한 미취학 아동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배치되는 주된 배경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예컨대, 한 지역의 종사자들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면담에 참여한 각 공동생활가정(그룹홈)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네 명인데 베이비가 3명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그룹홈 A)

아동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배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시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설명한 바와 비슷하다. 아동이 일시보호시설로 배치가 되면,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거취를 결정한다고 조사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은 일시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일부 아동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며, 입소 및 퇴소에 대한 권한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에게 없다고 전했다.

보호전문기관을 통하고, 그리고 일시보호소를 통하고, 그리고 사랑 또 연계가 되잖아요.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룹홈 E)

입소나 퇴소에 대한 권한이 저희에게 없어요... 센터에서 일괄 배치를 하는 거죠. 거기서 배치할 때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보육원에 다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저희한테 오고 있죠. (그룹홈 C)

어떤 아동들은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여러 양육 환경에 노출된 이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배치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친엄마와 할아버지가 양육이 어려워 종교 기관에 맡기고, 종교기관에서 일시보호시설로, 일시보호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생후 25일만에 배치가 된 아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왜냐하면 우리집에 오기까지 애가 4번을 거친 거예요. 25일 만에 왔는데요... 애기 낳아서 엄마가 할아버지랑 안 되니까 교회 갔대. 그래서 센터로 갔다가 저희 집으로 온 거잖아요. (그룹홈 B)

배치 기준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시설로 아동이 배치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먼저 기존에 있던 시설이 아이들이 좀 비면 그쪽으로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룹홈 E)

티오가 남아있으니까. 원래 있는 운영 규정 상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티오가 있는 데를 먼저 채우고, 신설된 곳에 아이를 배치하는. (그룹홈 F)

나) 양육 환경

면담에 참여한 종사자들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아이들에게 가정과 같은 양육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개방된 환경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생활을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소규모고, 여기는 말 그대로 가정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분위기가 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룹홈 G)

일단 한명 당 볼 수 있는 아이가 적고 소규모 같아서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 데리고 오기도 하거든요. 와서 함께 자기 가기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룹홈 C)

또한, 사회복지사가 아동을 양육하는 소규모 시설인 만큼,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시설은 작지만 저희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소규모이다보니 저희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아이한테, 저희가 자부심은 있죠. 큰 시설하고 저희를 비교하는 거는. 왜, 아이 한 명 한 명 저희가 그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룹홈 G)

면담 참여 종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의 특성상, 아동들이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혼합 연령의 경우, 나이가 더 많은 아동이 동생들을 챙기고, 어린 아이들은 큰 아이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 더욱 긍정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또 보면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싸우잖아요. 싸우기도 하는데 서로 서로 챙겨주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챙겨주고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도 있고...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거에선 자연스런 가정의 모습들을 이 아이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런 혼합 연령 같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고. (그룹홈 F)

다만, 형제가 같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형제가 같은 시설에 배치될 경우, 형제끼리의 다툼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형제가 있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애... 엄청 싸워요.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또 의기 투합이 되면 밑에 애들을 건드려 버려요. 다른 밑에 애들이 억압을 당해요. 사실은 형제가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기가 하지만, 밑에 애들이 위험해 조금.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붙어있어야 해. (그룹홈 E)

비슷한 맥락에서 동갑은 배치 받지 않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갑은 일부러 안 받아요. 동갑은 전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동갑이면 친구처럼 잘 지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전쟁이에요. (그룹홈 G)

다) 보육·교육 현황

보육·교육 현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사교육 이용 현황, 및 영유아의 생활습관 훈련과 관련된 분석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면담 참여 종사자들이 보호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2) 사교육 이용 현황

면담 참여자들은 미취학 아동 사교육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에,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도 태권도하고, 피아노하고. 일곱 살들이. (그룹홈 F)

우리 140만원 더 들어가요. 애기들이라도. 발레 20만원, 원내치료 하는 거 15만원,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거 15만원. 그 다음에 한자. 뭐 그렇게 하고 영어 뭐 어린이집. 10만원씩 특별활동비. (그룹홈 A)

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는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종사자는 요즘 아이들의 교우관계가 대체적으로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많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아동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 때 한번, IMF 터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사교육을 끊어봤었어요. 너무 힘들고 후원금이 없어서.... 저희가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보낸 이유가 친구가 없대. 요즘에는 학교 친구가 아니라 학원 친구예요.... 사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친구 때문에... (그룹홈 G)

(3) 생활습관 훈련

면담 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아주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바로 잡혀있지 않은 아동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인 가정생활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 기본적인 가정교육 있잖아요. 밥 상머리 예절이라던가... (그룹홈 G)

종사자들은 생활 안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생활습관 및 자립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게 쉽다 생활하고 조금 다르고 또 기관하고 다르고, 교육 프로그램을 딱 짜서 무슨 학원이나 학교처럼 딱 시행하고 끝나지만 여기는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한테는 이거 프로그램이야 하지는 않구요. 드러나지는, 아이는 모르죠. 이게 자립의 기술을 가르쳐주는지.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위험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해서. 혼자 애가 독립을 했을 때 생활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치는 게 자립이잖아요. 예를 들면 손빨래라도 설거지라도 밥을 하는 거라도, 기구 다루는 것을 이제 하죠. 하고, 이후에 페이퍼는 따로 하죠.(그룹홈 H)

면담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훈육과 아동인권 사이의 딜레마를 지적하였다.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및 자립훈련을 위해서 훈육이 꼭 필요하지만, 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분한 훈육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악용하는 아동들도 있어, 현실적인 훈육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이들 인권 다 따지고... 인권을 아이들한테 권리를 교육을 하면서 의무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니까... 충분한 훈육이 안 되잖아요. (그룹홈 G)

애들이 인권교육을 많이 받아서요. 자기들이 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니네 우리 때문에 월급 받잖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영악해졌다 그래야 되나?... 애네가 잘못을 했어도 야단을 못 쳐요. 예를 들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내라. 잠자야 되니까... 왜 우리한테 억압하냐, 이런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걸 못하니까 애들이 법을 이용 하는 거야. (그룹홈 E)

라) 원가정 교류 및 복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의 원가정 교류는 아동과 아동 부모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부모와 연락이 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여러 형태로 원가정과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희는 나라에서 원가정 그거 하나까 저희는 잘해요. 연결 다 해주고 사진 잘 보내주고, 데리고 가서 며칠밤 자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고. (그룹홈 G)

저희도 원 가족 하고 교류를 하게 만들어요. 교류가 돼야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피는 물보다 진한 사회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류를 시켜서 그냥 만나길 원하면 만나

고, 전화 통화는 자연스럽게 하고. 다 핸드폰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면 만나게 하고... (그룹홈 F)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원가정 복귀를 한 사례들도 있었으며, 이에 따른 아동과 원가정의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종사자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뒤 변화된 아동과 아버지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두 달 동안 모든 장치를 저희가 다 했어요. 그 쪽에 부산 쪽에 아버지하고 계속 모니터 해달라 부탁하고 부모 교육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다시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다시 밝아지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바랑 함께 있고, 아바가 애 때문에 술 좀 덜 먹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난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애가 아바 곁을 떠날 수 있는데 안 떠나고 '아바 술 그만 드세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그룹홈 F)

반면, 베이비박스를 통해 배치된 아동의 경우 원가정 교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베이비박스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룹홈 D)

베이비박스는 없죠. (그룹홈 A)

또한, 베이비박스를 통해 배치된 아동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의 부재로 원가정 교류가 어려운 아동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연락이 없어요. (그룹홈 B)

애는 엄마 만나길 원하는데... 지금 6살, 24개월 때 온 그 친구만 엄마랑 연락이 안돼요. 그 엄마는 처음부터 이 아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전화도 안하고 지금까지 아이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개만 연락이 안 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연락이 돼요. (그룹홈 F)

면담에 참여한 종사자들 사이에서 아동의 원가정 교류에 대한 의견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일부 종사자는 원가정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가정이 변화할 의지만 있다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양육환경이라고 전했다.

다. 또한,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보호받으며 원가정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감정을 회복할 시간과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친 가족 하고 복귀를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 가족들이 해결이 되어야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보내버리면 이 아이는 또 다른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율 하면서 상담 하면서 하려고 교류를 시키는 거죠... 아이들 내가 직접 데리고 키우지 않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아물어지게 되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되어 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던 말이에요. 가끔씩 만남으로 인해서 엄마와 자녀간의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시간을 통하면서 서로 서로 간에 어떤 관계 형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인거죠... 건전한 사회인이 되려면 원 가족의 상처들이 회복이 돼야지. (그룹홈 F)

다만, 위 종사자는 원가정 교류에 있어 아동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도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고,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고, 어쩌다 명절 때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고 자기 욕구가 다 있어요. 자기 의사에 따라서. 부모들이 만나게 하고 싶다 해서 다 만나게 해주면, 이 아이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룹홈 F)

반대로, 원가정 교류는 이상 속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종사자도 있었다. 이 종사자는, 원가정 교류는 아동의 입장에서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며, 원가정이 교류를 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나아가, 오랫동안 교류가 없다가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나타나서 아동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원가정에서 도망나온 애들도 있어요. 케어도 안되고 떼어놔야하는데 자꾸 나라에서는 원가정 복귀를 시키래. 그런 경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키울 수 있으면 왜 사회복지시설에 보냈을 것이며,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맞고 학대를 당해서 왔는데 왜 다시 가고 싶겠어요... 오히려 클 때는 1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다가 대학 보내놓고 직장생활 보내놓으면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상 속에 있는 이론에 불과해요. (그룹홈 G)

실례로, 아동이 원가정 교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가정 복귀 및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근데 너무 애들이 우리는 싫어해. 가는 거를 싫어해. 명절 때도 아주 죽지 못해 가는 거야. 근데 엄마가 밤늦게 까지 전화가 와 새벽에도 오고...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는 가고 싶은데 집에서 살고 싶진 않은 거야.(그룹홈 E)

원가정 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의사를 밝혀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상 아동을 친권자에게 복귀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엄마가 약을 쓰고... 보자기 갖고 그냥 싸가지고 가는 식으로. 부모들이 원하면 우리는 줘야 되고... 그랬는데도 애가 안 간다 그래서, 다크써클 내려올 정도로 약을 울고 했는데도 엄마가 안하무인 막 소리 지르고 경찰한테도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도 친권이라. 학대기관에서 팀장이 왔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학대로 인한 것이 개입이 되는데 아니면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룹홈 A)

저희가 안 보낼 수가 없어. 저희는 친권이 먼저거든요, 부모가 원하면. (그룹홈 G)

나아가, 원가정으로 복귀가 된 이후에도, 원가정에 변화나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말 우리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는 원가정 복귀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열아홉에 낳은 아이가 서른 됐다고 부유하지는 않잖아요... 담임이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작년에 했어요... 애가 학교에서 다 뒤지고 도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너무 후회를 하는 거야...그래서 그게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좋은 것만은 아닌... (그룹홈 A)

아빠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쪽에 자원이 없는 거예요 애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그룹홈 B)

이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원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려움 및 개선요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위탁가정

가) 배치의 주된 이유 및 과정

센터 종사자들이 느끼는 가정 위탁 동기는 종교적 신념 등을 포함한 선의의 목적이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탁가정의 유지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또 다른 종사자는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어떤 봉사활동보다 위대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다양한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친가정에 아이가 혼자라서 같이 친구도 하면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밖의 선의의 목적들...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걸 봤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유는 다양해요. 큰 보상을 받는 건 아니라서... (센터 A)

그렇지 않으면 위탁가정 유지가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24시간. 일반 위탁가정하고 계시고 그거를 유지하고 계시고 생활하고 계시는 분은 라고 생각해요. 일반 위탁가정의 송고한, 한국에서 어떤 봉사활동보다 이 일반 위탁가정들은 제가 봤을 때도 송고합니다... 자기 애를 키워보라고 해요. 애 사고치죠, 다치죠, 누구 때리죠, 그럼 가서 육 먹어야하고,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해주지 못해요. (센터 B)

위탁가정 배치의 주된 이유 및 과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면담에 참여한 일반위탁 가정 네 가구 중 세 가구가 자원봉사를 계기로 위탁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세 가정 모두 본인 또는 다른 가구 구성원의 양육시설 봉사를 시작으로, 시설 종사자의 권유로 매 주말 아동을 본인의 가정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어느 순간부터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어 시설로 돌아가는 것을 어려워했고, 아이가 평범한 가정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위탁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세 가정의 공통적인 설명이었다.

딸이 봉사갔다가 알게 된 아이예요. 16개월 때 위탁아이를 부모와 처음 만났고. 그 동안은 딸이 가서 주말마다 가서 봉사해주고. 가정체험이라고 해서 이 아이의 후원자를 한거죠. 주말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랑도 정도 들고 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돕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일단은 가족들이 원하고 아이도 5살되는 해부터 떨어지는걸 싫어하더라고요. (가정 D)

거기도 좋은 시설이지만 우리집에서 사는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집에서 지내자. (가정 B)

일반위탁가정의 아동들은 모두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정 외 보호 배치가 되었으며, 대부분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 아이가 베이비박스 통해서 미혼모.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다예요. 베이비박스에서 영아원으로 갔고... (가정 D)

친부모 찾을 생각 말고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라고 써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B)

일반위탁가정이 입양이 아닌 가정위탁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입양보다는 부담이 덜한 위탁을 해보자해서... 부담이 적어서도 그렇지 만 좀 더 쉽고 빨리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가정 B)

입양은 최소 1년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는 지원이 꽤 되는데 입양은 성 남시도 첫 500만원인가 그거 빼고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인거고. 저는 위에 아이 들도 있으니까 입양에 대해서도 좀 망설이고... 지금 애가 받는 혜택이 너무 커서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데 애가 나중에 원하면 해주자. (가정 A)

입양은 저희가 경제적인게 힘들어서 힘들 것 같고.. (가정 D)

친인척 위탁의 배치 이유는 보다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교도소 수감, 정신질환, 자살 등의 이유가 면담을 통해 드러났으며, 과정 또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친인척 A의 아동은 부모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됨에 따라 친할머니인 친인척 A가 자연스럽게 아동의 양육을 맡게 되었다. 반면, 친인척 B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약 2개월 간 생활한 후 어머니의 정신질환의 이유로 할머니에게 맡겨졌으며, 이후 첫 돌이 지난해에 일 반 가정으로 약 1년간 위탁되었다가, 다시 할머니의 보호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친인척 C의 경우도 아버지의 자살 이후, 형제 중 동생은 바로 친인척에 보호 아래 생활 할 수 있었으나, 형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친인척 위탁 아동들은 다양한 배치 이유와 과정을 거쳤으나, 공통적으로 지자체 측의 연락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그 쪽에서 위탁으로 하라고 해서. 어떻게 알고 다 오더라고 연락이. 시에서 알고 알아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알아서 다 뜨는갑데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 위탁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친인척 A)

와서 저쪽 동사무소쪽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사망신고 이렇게 해서 상담하러 갔는데 위탁가정이런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쪽 동에서 알아가지고. (친인척 C)

나) 법적 지위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이미 법정 후견인이거나,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같은 경우는 후견인을 신청해서 후견인이 되었거든요. (가정 B)

네, 하긴 하고 (있어요). (가정 D)

친인척 위탁의 법적인 상태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없는 친인척 C의 경우, 양육에 필요한 법적인 보호, 책임 및 권한을 위해 후견인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제가 후견인이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니까요. 애들한테요. 휴대폰 하나 하는 것도 다 맡기더라고요. 안되니까 할 수 없죠. 그니까 이제 마무리는 다 됐는데 친권도 또 우리가 다 가져오고 다 이제 끝났죠. (친인척 C)

친인척 C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 후견인이 아닐 경우, 양육에 따른 일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후견인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위탁가정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부모가 살아있고 양육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상황 상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는, 법적인 권한은 부모에게 있고, 조부모는 동거인으로만 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정대리인은 저 아빠가 되어있는걸로 알고있고, 내가 위탁. 등본상으로 우리 밑으로 들어와있는 거고 (친인척 A)

(법적으로는) 전부 다요... 법적으로는 동거인은 나한테 되어있죠... (나는) 위탁모고 법적으로는 (애들) 엄마지. (친인척 B)

다) 양육 환경

먼저 일반위탁가정의 양육환경을 살펴보면, 친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동이 가족 구성원들과 잘 어울리며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일반위탁가정의 영유아들은 아직까지 위탁모를 친엄마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들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위탁 사실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으나, 이를 숨기지 않고 양육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얘기해주거든요... 두리뭉술하게만 알고 있고. 알려주면서 키울거예요. 숨기면서 키우지는 않아요. (가정 B)

지금은 그래요. 아이도 엄마라고 믿고 있으니까... 호적을 뗐다면 알게되겠죠. 저희는 비교적 오픈적으로... (가정 D)

면담에 참여한 일반위탁부모들은 위탁 후 아이를 통해 가정이 더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했다고 전했다.

세 식구만 있을 때는 각자 일에 바빴는데 아이가 오면서 4명이 5명이 저희 딸 남친까지 네 다섯. 딸 친구까지 꺼서 다섯여섯. 집안에서 많이 아이 나름대로 후원해주는 분들도 있고 아이 책임지고 머리 만져주시는 분도 있고 우리 딸 남친 부모님들은 과일이던지 그런 것들 공급해주고 아이 용돈도 가끔 주고. (가정 D)

친인척위탁의 가정환경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친인척 A의 아동은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와 함께, 친인척 B는 할머니와 삼촌, 친인척 C는 고모네 가정에서 형제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면담에 참여한 친인척 양육자들은 가정환경 관련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할아버지 많이 도와줍니다. 손주라 하면 끔찍하고. 사랑으로 크고있어요. 제가 애 셋을 키워 봤지만 마지막 내 희망입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친인척 A)

점마(삼촌)가 최선을 다하죠. 남부럽지 않게 키울려하죠. 최선을 다해가지고. 작은 삼촌이 직장이 좋아서, 아무튼 애한테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친인척 B)

저는 딸아이 한 명이에요. 저희집은 정상적인 그냥 일반 가정이에요. (친인척 C)

친인척 C의 자녀는 위탁아동과 비슷한 또래의 아동으로, 아동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갈등 속에서 친인척 C의 친자녀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고, 딸이 매일 울었어요. 딸이 화나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는데요, 거의 막 발톱이 없었어요. 막 물어뜯어 가지고... 애들이 막 짓궂어요. (친인척 C)

이에 따라 친인척 C는 본인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이게 폭발하는게 좀 많이 생겨서 최근에. 소리를 안질렀었는데 요즘 많이 지르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만 건들어도 막 터지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제가 요즘 애들 때문에 묻혀서 얘기를 못 들어줄 때 있잖아요. 그런게 좀 쌓이는 거 같고. 걱정이 되죠....아이들이 조금 일반적인 가정에서 컸으면 좋은 영향을 주고 그랬을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배울게 없는거예요. 오히려. 항상 동생 놀리고 나쁜말 부정적인 말쓰고 그러거든요. 그런게 좀 안타깝고... (친인척 C)

라) 보육·교육 현황

보육·교육 현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사교육 이용 현황, 및 영유아의 생활습관 훈련과 관련된 분석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면담에 참여한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은 모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닌다고 응답했다. 대부분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면담 참여자 중 단 한명만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은 양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입소 순위 점수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른 논의는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교육 이용 현황

면담에 참여한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은 유아체육, 태권도, 학습지 등 다양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체육. 힘빨려고 (가정 B)

애들 학습지도 시키고 (친인척 A)

(3) 생활습관 훈련

일부 면담 참여자의 응답에 따르면, 위탁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위탁 아동의 생활습관 훈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느끼기에 센터에서 받는 교육이 효과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애들이 떼를 부리고 소리치려면 교육을 받은걸 기억하고...교육을 꾸준히 해주니까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그런걸 주로 교육해줘요. 애들의 물건을 부시는 것도 일종의 학대다. 이런걸 잊을만하면 시켜주니까. 감정대로 할 때가 있는데 그런걸 교육을 꾸준히 해줘서. (가정 B)

한 일반위탁가정의 모는 친자녀를 양육할 때보다 다소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전했다.

아이가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누워서 밥 말아먹고. 딸 때는 지금 안 먹으면 다 치워버렸거든요. 애는 그게 안되는거예요. 일단 누워서라도 먹게해줘야... 좀 더 강하게 못하는거. 체벌이라던지. 물론 딸도 때리지는 못했지만. 강하게 억압적으로 하는건 될 수 있는 한 참죠. 요즘 드러나는게 내 맘이야. (가정 D)

한 친인척위탁의 경우, 위탁 아동의 기본 생활습관이 바로 잡혀있지 않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일일이 교육해야 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무슨 늑대소년 같은. 이게 둘이 있었던 시간이 기니까 바닥에 있는 것도 주워서 먹어요. 길바닥에. 그리고 생활습관이 전혀 안돼있고요. (기초생활습관) 전혀... 그냥 기본적인 것도 사람사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안돼있어서 정말로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 “떨어진거 먹지마” 이거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친인척 C)

마) 원가정 교류

면담에 참여한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은 모두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정 외 보호를 받게 된 경우인 만큼, 원가정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면담에 참여한 위탁부모들로부터 단기위탁 아동의 원가정 교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전해들을 수 있었다.

(단기위탁의 경우) 원가정 부모를 한달에 한번은 만난대요. 그럼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럼 여기서 적응 못하고 자꾸 집에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더 힘들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 A)

친인척의 경우, 원가정 교류의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에게 따르면, 상황에 따라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 한쪽만 연락을 하고 있는 경우, 아동과 부모 사이에 교류는 있지만 양육자와의 교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 수단 또한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경우, 전화 통화만 가능한 경우 등 부모의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가 혼자 고민을 막 하는데 (엄마는) 일체 전화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이래 그래도 매일 다닐 때 할머니라고 좋아하지만 간혹 가다가 엄마라는 단어를 내게 써요. 엄마 보고싶어 이러면 아니 할머니가 엄마잖아. 이라고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아픡니다...(아빠는) 거기는 좀 통화가 되네요... 중국 돈 벌러 간 걸로 알고 있어... 아빠는 역수로 좋아해. (친인척 A)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좀 안 보면 10일..? 아니지 저 엄마 보고싶다고 하는데 보여줘야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봤어. 내가 좀 많이 데려다줬어요.... (엄마가 아이를) 보고싶다고 했어서... (아빠는) 한 번 찾아왔었어요. 지 아빠가 중학교 되면 아빠한테 온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연락 안하거든. 중학교나 조금. 자기도 생각이 있는 모양이든데. 연락이 오면 모르는데 지금은 연락 안해요. (친인척 B)

OO이랑도 통화를 해요. 영상통화를... 그냥 굳이 숨기진 않고요. 들어가서 편하게 하라고 해요.... 영상통화하니까 들어가서 통화를 하죠. 막내랑은 영상통화를 하고... 제가 심리상담사분이랑 자주 연락하면 애들이 점점 적응해가니까 조금 뜸하게 부탁을 해보시는게 어떠냐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거예요. 무슨 천륜을 끊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끝냈거든요. (저랑은) 연락 이제 안해요. 아예 끊었어요.(친인척 C)

다. 어려움 및 개선 요구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서는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별로 구분하여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 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4가지 유형별로 기관 특성, 종사자 복지 및 근무 환경, 양육특성과 관련된 어려움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1) 일시보호시설

가) 기관 특성

(1) 배치 체계에 따른 어려움

배치 체계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는 위탁가정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적되

었다. 일시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은 반면, 위탁가정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 위탁가정에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오래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가정위탁을 컨택 하는 데는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고 거기에서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시설로 그룹 홈이라든지 양육실로 가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일시보호 C)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 또한 배치 체계의 어려움 중 하나로 지적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는 아동의 권리, 배치 결정이 아동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취지는 높게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대, 심의위원회위원장이 자치단체장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심의위원회위원장이 자치단체장으로 되어있어요. 기초자치단체면 구청장이나 시군구청이나 광역시장, 도지사. 그런데 보호아동은 상시, 수시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입소, 퇴소 이런 것들을 아동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자주 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변호사분이나 세무사, 이 아동 쪽에 다년간 종사한 교육청 관계 근무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개최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자주 빈번하기에 개최하기에는 곤란할 것이다... (일시보호 C)

이에 따라, 한 지자체의 경우, 현실성을 고려해 조례제정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선 조취 사후 보고라는 개념을 추가하였으나, 이 또한 아직까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면담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일시보호시설에서 위탁가정으로 배치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위탁은 지원 부분이 너무 짜요... 가정위탁 지원금이 너무 약해요 국민의식과도 관계가 있지만은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지원을 좀 더 해야 한다. (일시보호 C)

참여자도 또한, 입양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시설을 거점으로

두고 양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활성화하는 것도, 아동이 보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영주용 그룹홈 이걸 시설 중심으로 해서 그룹 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전체 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에서 하고 양육은 개별 홈에서 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향도 괜찮겠다 하는 검토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런 형식으로 시설을 전환하되 입양, 가정위탁 활성화 시키는 지원금을 높여주고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이걸 이렇게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보호 C)

또 다른 면담 참여자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원가정 대상 교육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부모님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이든 아빠들이든, 여기 오는 아동들을 제가 보니까 애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잘해주고 이런 거는 물론 맞지만, 훈육도 제대로 하셔야하는데 훈육도 계속 하면 이게 잔소리가 되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내 아이인데 내가 때리는데 왜' 이렇게 나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일시보호 A)

배치 이후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외 보호 아동 대상 사례관리는 아동의 배치 상황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아동에 대한 생애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적인 문제점은 여기 있다가 시설로 간 뒤에 여기서 어느 시설로 갔든지 그 뒤로도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모니터링이 좀 됐으면 좋겠고 현재는 안 되고 있고. 아동이 처음에서 부터 성인으로 성장해서까지 이 과정들이 다 사후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일시보호 C)

(2) 경제적 어려움

앞서 '시설 현황 및 특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시보호시설의 운영비는 한해에 지정된 금액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아동의 연령 및 그 수가 고정적이지 않은 일시보호시설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면담 참여자들은 지적했다.

아동 수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주는 사업비다 보니까 저희는 부족한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한 9명을 데리고 1년을 생활하는 시설도 3천만원, 저희 같은 시설도 3천만원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후원 조정

도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후원금에서도 같이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일시보호 A)

저희 센터가 아이 연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연령층이 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일시보호 D)

지자체 사업의 경우 후원금 및 물품 등에 대한 지원 또한 법적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해, 지자체 예산 외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더욱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들에 대한 법적 기준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적인 예산을 지원 받기가 쉽지가 않죠. 시설은 후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적 기준에 시설장의 역할에 따라서 후원이 많이 유치가 되가지고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법적 기준이 그대로 나가니까 후원 같은 거 안 받아요. 법적으로 기본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도 안 받아요. 다 예산으로... 법 상 못 받게 되어있으니까. (일시보호 D)

(3) 인력부족

기간 특성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도 제기되었다. 지자체 운영 시설의 경우, 시설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육시설이 아닌, 지자체 사업소로 분류되어 있어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법적 아동 대 보육사 총족 인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본 시설은 지자체 ‘사업소’로 분류되어, 아동복지법은 총족인원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지자체 조직 담당과에서 공무원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사자들은 시설이 종합시설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최소한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 대 보육사 배치 기준만이라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인원을 늘리려 하면 여기서 티오가 형성이 되어 하거든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거를 공무원보다 좀 완화된 개념으로 인력 보충 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거마저도 아주 엄격하게 엄청 통제를 해요. 우리 맘대로 늘릴 수는 없어요... 저희 센터에 정말 총원이 절실하거든요...결국은 아이한테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법적 인 총족인원이라도 해주면 첫 번째 아이한테 보육의 질도 높아질뿐더러 또 우리 보육사 선생님도 사실 24시간 교대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시보호 D)

현실적인 증원을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다각적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종사자 복지 및 근무 환경

(1) 근무 형태 및 시간

일시보호시설은 시설의 특성상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머물러야 하며, 특히 영아 같은 경우에는 보육사들이 무조건 함께 자야 한다. 이는 보육사들이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없는 환경임이 분명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주야간 24시간 근무형태는 보육사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높은 이직률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제 느낌으로 건강에서는 면역체계가 파괴되는 느낌입니다. 수면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거나. 주간을 쭉 하거나, 야간을 쭉 하는 게 아니라 주간했다가 야간했다가 내 상태가 항상 깨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긴장도가 높아요. 그런 걸로 보면, 병원비 벌러 다니는 느낌이다. (일시보호 E)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입되고 있는 52시간 제도에 대한 우려 또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는 결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동일한 기준의 52시간 적용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사들의 근무 형태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향으로, 충분한 인력 증원이 제시되었다. 근무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인력 증원을 통한 보육사들의 업무 강도와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보다 현장에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되고 있다.

(2) 인건비

인건비 개선에 대한 요구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 공무원 호봉을 따르고 있어 큰 불만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재단 운영 시설의 경우 개선 요구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운영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면담 참여자는 현재 종사자들의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보다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른 인건비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인건비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이번에 보니까 대구에 있는 어디 공동 생활 가정, 그룹홈이었는데 그 원장님이 인권위에 '저희도 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왜 급여를 이렇게밖에 못받냐' 이렇게 진정을 넣으신 게 있는데, 그게 판결 떨어진 걸 읽어보니까 80.9%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더라구요 저희가. (일시보호 A)

다) 양육 특성

앞서 설명한 시설 특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아직 상반기도 다 안 지냈는데 뒤에 아동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딱 3천만원만 써야 하는데 애한테, 벌써 애가 두 달을 있다 갔기 때문에 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나가고 싶어해요, 여기만 딱 갇혀 있으니까... 나가고 싶어하는데 써야되는 돈은 한정인 거예요. (일시보호 A)

2) 아동양육시설

가) 기관 특성

(1)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은 면담에 참여한 모든 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기관 특성에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직원을 배치를 해달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자체 재정을 가지고 해라' 인건비를, 인건비를 자부담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라고... 자부담해서 채용을 해라 (양육시설 D)

(2) 관리·감독체계

시설 운영에 관한 평가 및 관리 감독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몇몇 면담 참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어떤, 지자체 그분들과 담당자들과 지금의 현장하고,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분들의 태도라든지 지도방법이라든지 관리감독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우리에게 상처를 너무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주는 거예요.(양육시설 D)

작년에 감사 받으면서 인격모독을 하더라구요. (양육시설 A)

일례로, 한 시설장은 아동의 안전과 시설 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시설에 상주하였지만, 시설장의 시설 내 상주가 사회복지법상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을 부과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큰 인격모독을 경험했다고 설명하였다.

작년까지는 (상주하고) 있었어요. 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권장을 해야

해요. 가능하면 원장은 원에 있는게 좋다... 아동복지법 상에는 원장은 거주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이 진짜 사회복지사법에 의하면 원장이 무단침입으로 산다는거예요.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이 상위법이라는거예요... 엄청 내 인생에 내 진짜 자랑스럽게 사회사업 하는 사람인데 자살하고 싶더라니까. 진짜. 정말 모독적이었어요. (양육시설 A)

시설 대상 평가 및 관리 감독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 방에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정하고, 아동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이를 지키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 크기 상관없이 3명. 애들이 무서 잠 못잔다는데. 꼬마들 그렇잖아요. 그걸 잤대 재듯이 그러면 안됩니다. (양육시설 A)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설장은 후원금에 관한 과도한 관리 및 감독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원자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 몫이거든요. 종사자들 몫인데 왜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물론 감독하는 거는 맞습니다. 잘 쓰이는지 이런지는. 왜냐면 저희가 100%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관리 감독 받는 거는 저는 반드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는 맞죠...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후원금으로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것까지도 간섭을 한다는 거죠. (양육시설 D)

평가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개입이 아이들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필요 없는 개입에 의해 지금은 아이들도 제가,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제가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외부의 영향이나 계획 때문에 그 불신이 서로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양육시설 D)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이해와 올바른 평가 및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 공부를, 전공을 하고 공무원이 되어서 각 기관에 들어가면 현장을 관리감독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교육 가라 그래서 교육시키는데.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야한다

나) 종사자 복지 및 근무 환경

(1) 인력부족

일시보호시설의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양육시설의 종사자들 역시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앞선 일시보호시설의 인력부족 문제는 기관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했다면, 양육시설에서의 인력부족은 보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에 밀접해서 논의되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 분 선생님이 두세 명을 봐야하는 상황이니까... (양육시설 F)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보육사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 충분히 진행 되어야할 실습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선생님들마다 스킬이 다르고 양육방식도 다르고, 완전 처음 만약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면 아무 것도 모르고 오시는데 바로 투입을 해버리면 한계가 있더라구요, 실습해봤자 하루 이틀, 거기서 자고 바로 투입해버리니까. 아이들도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충분히 익힌 다음에 담당이 되어서 책임지는 게 맞는 건데.. (양육시설 K)

실습이라고 해봐야, 저희가 채용 전에 4박5일간 실습기간 있어요. 그 기간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인력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양육시설 F)

사무원에 대한 인력 보충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30명 이상 있는 시설은 아마 사무원이 다 있을 거고, 서울시에 있는 시설들은 거의 다 지금 30명 다 넘고, 50명 80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무원이 하나거든요. 근데 사무원이 지금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리가 아니라 이걸 전체 회계 다루는 건데 이렇게 낮게 하는 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양육시설 J)

(2) 근무 형태 및 시간

면담 참여자들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의 경우 명절 휴무는 물론, 연차 또한 사용하기 힘든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 참석 시 대체인력이 없어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도 하며, 양육 외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마저 부족하다고 전했다.

저희는 24시간 격일로 일을 하면 보통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양육적인 부분, 교육적

인 부분 많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외적인 서류들이나 아니면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나 저희가 들어야 하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매달려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외적인 시간에 그걸 해야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양육시설 I)

근무 형태의 경우 또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육사들에게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밤에 한숨도 못자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 생활이 아예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같은 경우는 밤에 두 명이 같이 근무를 하면, 번갈아 가면서, 좀 하면 조금이라도 반은 자고 반은 근무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때 인력적으로 지원이 안되어서 그냥 오로지 애들이 클 때까지만 버텨거든요 정말. 그러다가 제 파트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코피도 쏟고 몸에 두드러기 다 일어나고, 연세도 저보다 더 있으셔서 힘드셔서 결국 그만두셨어요.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 (양육시설 K)

반면, 이러한 근무 형태 및 시간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입되고 있는 52시간 제도에 대한 우려 또한 지적되었다. 양육자 변동이 현재보다 더욱 자주 있는 것은, 아동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한 변화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애기들이예요. 애기들이 낮잠 한 번 자고 나면 엄마가 바뀌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맞을까? 애기들 정서적으로 잘 키우라고 하면서 하루에 엄마가 3번이나 바뀌는 이 상황이 과연 아이들 정서에 그만큼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는 굉장히 커요... 아기들한테는 분명히 나빠요... 지금으로서는 애기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좀 커요. (양육시설 J)

저희도 3교대가 걱정이긴 해요. (52시간) 애기를 듣자마자. 어쩔 수 없이 바뀌고 따라가야 한다는건 알지만 아무리 엄마들이 방식을 맞춘다한들 아이들이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없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양육시설 B)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동일한 기준의 52시간 적용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양육 시설의 경우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육시설과 일반 양육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이랑 다르게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3교대가 좋긴한데 저희도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3교대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나라에서는 3교대 하겠다고 하고 저희 실제 생활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양육시설 B)

(3) 인건비

종사자들의 낮은 인건비에 대한 지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금액에 누가 이렇게 일을 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양육시설 K)

임금이, 이제 막 졸업해서 와서 보면 어쨌든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급여가 너무 낮으니까... 내가 저 정도 금액을 받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회복지 쪽은 아무래도 급여가 너무 낮다보니까... (양육시설 L)

종사자들의 인건비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최저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따라서 지자체 사이의 임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자체별로 종사자 간에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의 책임아래 동일한 기본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저희는 정부의 의무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다 똑같아야한다는 거죠. 왜냐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저희들 지원체계가 똑같아야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야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양육시설 D)

(4) 소진에 대한 지원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소진에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었다.

낮에는 자야하고 격일근무면 밤새 일하고 집에 가면 완전 소진되어서 계속 자고, 그 다음 날 또 출근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너무 소진이 빨리 되더라구요. (양육시설 K)

소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어려움이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법으로는 1인당 몇 명, 주 40시간 근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이상의 이상을 하다보니까 소진은 빨리 되는데 그건 다 개인의 몫이 되고, 그거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도 없고 보상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냥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내려놓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양육시설 I)

이에 따라, 일부 면담 참여자들에게서 소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교사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일이 끝나고 제가 다시 충전해서, 충분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자마자. 충분히 쉬고 오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아이들을 봐야 또 질적으로 좋은 부분이 애들에게 잘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소진 부분에 있어서. (양육시설 H)

아니면 저희 일하면서 소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외적인 부분을 들으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야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양육시설 I)

다) 양육 특성

(1) 인력부족

앞서 설명한 인력부족은 영아를 양육하는 보육사들 사이에서 수유, 목욕, 외출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한 명 목욕시킬 때 나머지 두 명은 방에 그냥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울고 불고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유하다가 돌쟁이 애들은 또 이유식도 해야 하니까 이유식 준비하고 이게 그니까, 세 명이면 세 명이 지금 조금 버거운 상태... 그리고 어디 나갈 때도, 동네 잠깐 외출하고 싶어도 한 명이 세 명을 못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래도 최대 얘기따 한 명하고 한 명 유모차 그러면 한 명이 꼭 남아요. 그러니까 외출을 많이 못 나가죠. 사람이 없으니까. 밤중수유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양육시설 L)

(2) 경제적 어려움

앞서 논의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양육비, 교육비, 치료비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부족함을 충당하기 위해, 자부담 및 후원금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 치료비, 교육비, 문화비. 우리 애들도 영화 한 번씩 보고 연극 한 번씩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봐야죠. 근데 정말 생계비만 나오니까, 그 생계비 외에는 다 후원금으로 충당하니까... 지금 우리 후원금도, 후원금 걱정은 안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양육시설 F)

이러한 어려움 및 후원금 유치에 대한 높은 부담감에 따라, 시설 운영비 및 양육비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후원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근본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할 애들을 시설에 이런 금전적인 것까지 책임지우는 것은 너무

하다. 아이들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전체는 나라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직원복지는 차치해두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는 국가보조금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운영비가 나오는데 시설장과 직원들이 후원금 걱정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책임져줘야 할 텐데... 왜 우리가 애 키우라 후원금 끌어오라... (양육시설 F)

내가 항상 우리가 쓰는거 말고 B란 아이가 A란 어린이집을 다니면 정부부담을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후원자 개발 안되면 못 보내라는 소리예요? 그건 말이 안되거든요. 숫자가 30명인데 월 380만원 들어가잖아요. 후원금이 안들어오면 못 들어가는거예요 입학금. 영어, 태권도, 스피치 뭐 그게 똑같아요. 후원자 뭉이예요. 후원자 개발 안되면 못 보낸단 소리거든요 (양육시설 A)

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비용을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비용을 지원을 하면, 그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아이들 양육에 필요한...근데 지금 애들 의식주 해결하고 나면 거의... 아이들 욕구에 못 따라간다는 거죠. 아이들 욕구에 못 따라가고, 사교육비라는 것도 있어야 하죠... 탄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주면 그렇게 해야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생계비 해서, 생계비 안에 먹고 남으면 뭐 해라. (양육시설 D)

아동수당이라고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 나이 대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쓸 수 있는, 잘 키우라고 주는 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보육원 아이들은 이 금액을 쓸 수 있는 선택권도 없이 딱 cda로 묶어주는지 이렇게 내려오는지... 저는 이런 기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는 자유권이 없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묶여져버리는 이런 정책은 정말 구시대적인... (양육시설 F)

(3) 국공립 시설 이용 어려움

면담 결과, 양육시설 아동들은 보육을 할 수 있는 종사자와 시설에 생활한다는 이유 및 입소 순위 점수에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등에 밀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국공립. 순위가 안돼요. 보육할 수 있는 이모가 거기 있는데 왜 어린이집을 보내요.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공부하라고 보내는데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하냐. (양육시설 B)

바로 옆에 큰 집 있잖아요, 우리 옆집인데도 우리 그림의 떡이예요. 우리 이 집을 못 들어가요, 점수가 안되서. (양육시설 F)

양육시설 종사자 G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저희가 어쨌든 아이들을 키우는 기관이지만 사회에서도 저희 아이들을 도와줘야하는데... 가정이 있는 애들은 어쨌든 부모님이 딱 지지를 해서 밑을 채워주고 있지만, 우리 애들은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부어도 부어도 그게 끝이 없이 부어줘야 하는데 그래도 새지만 그래도 보는 게 저희가 해야할 일인데.. 애들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양육시설 G)

(4) 맞춤형 양육 정보 및 교육

종사자들과의 면담 결과, 현재 접근 가능한 정보 및 교육은 모두 일반적인 가정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 양육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교육 외에도, 시설 아동 양육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래도 근접한 해결책이 좀 더 있었으면 싶은데 항상 듣는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교육은 이런 집단에 있는 시설 아이들에 대해 포커스를 준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가정의 한 명 두 명을 키우는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한테 접목시켜서 그대로 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이 들었을 때 '가정에서는 그렇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데 저희는 집단생활을 하니까. 애들한테 다 그게 적용이 되기가... 교육이 우리 시설에 좀 맞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양육시설 H)

협회에다가도 우리만을 위한 육아메뉴얼을 만들면 좋겠다고... 육아, 권위 있는 선생님들은 다 영유아 교육은 별거 없다... 애는 옳고 무조건 애 말을 다 들어줘라. 근데 우리는 집단생활을 하고 선생님은 한 명이고 애들은 여섯 일곱인데 어떻게 애 말을 다 들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론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양육시설 F)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 기관 특성

(1) 경제적 어려움

운영비 부족은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설장에게서 지적되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는 시설을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비를 도와주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쓰는 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끌어서 만들어 줄 수 가 있어요. 자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한 고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절대 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룹홈 G)

끝도 없죠. 30만 3천원이면 여름이나 요즘. 한 달 가스비도 안돼요. (그룹홈 D)

이제 거의 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요번도 뭐 한겨울에 50만 원 정도 나오죠. 애기들 있으니까 맨날 기어 다니니까 불 떼어놔야 되잖아요. (그룹홈 A)

이러한 운영비 부족 문제는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당 양육하는 적절한 아동의 수를 5명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나, 운영을 위해서는 7명의 아동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가 있었다. 종사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당 5명 정도의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나, 각 아동 당 지급되는 수급비로 생활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부족함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5명 이하는 빠듯하다고 전했다.

아무래도. 7명을 케어 하는 것 보다 5명을 케어 하는 게 좀 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고... (그러나) 운영 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운영상은 7명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먹거나 교육하거나 뭔가 아이들과 같이 나눈다거나, 기초생활수급비로 여기는 운영이 되어지는 곳이지 않아요. 그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5명을 데리고 살았을 때하고 7명을 데리고 살았을 때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룹홈 F)

(2) 관리·감독체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으며, 평가기준 미달 시, 운영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평가 기준이 미달하면) 운영비가 안나오죠. (그룹홈 F)

운영비도 이제 안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운영비가 안 나오면서 투입이 돼요. 솔루션이.(그룹홈 E)

면담 참여자들 사이에서 평가 및 감사에 따른 행정 업무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소규모 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업무의 특성상 행정 업무를 보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설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 또한 수행해야 하는 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저희는 그 평가 받을 때도 조금 화가 나는 게 똑같거든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저희 가이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다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일은 사회복지시설만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감사할 때 서류를 내놓으면 큰 복지관이나 큰 시설이나 저희나 서류 양은 같아. 저희 서류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룹홈 G)

서류 안하면 또 저기하니까 맨날 밤새요... 솔직히 저도 저 혼자 회계하고 저 혼자 서류 다 해요. (그룹홈 A)

나아가, 면담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무원들의 현장 이해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관심 및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근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설이 작으면 일도 적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예요. 하루 종일 회계만 하는 선생님은 출근하고 은행 찍고 회계만 하면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공무원들도 공동생활가정이 뭔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랑 항상 늘 같은 취급 받아요. 같다고 생각하죠...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만 원해요. 아이한테 관심 없어요... 그래서 되게 슬픈데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룹홈 G)

정말 현장에서 이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맨날 그래요. 정치하시는 분들, 한 달만 와서 아이들 데리고 좀 텅굴어 보시면... 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지 참다운 정책이 나오는 거라고. (그룹홈 F)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 (그룹홈 E)

나) 종사자 복지 및 근무 환경

(1) 인력부족

앞서 논의된 다른 가정 외 보호 유형과 마찬가지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종사자 인력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그룹홈의 가장 문제가 지금 인적 자원이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엔 저희가 다 집을 비우고 나온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여기 인력이 부족하고... 한명 키우는데 선생님들 여러 번 나가셨어요... 계속 나가셔서 작년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을 한 8번 채용공고를 냈어요. 한 자리가 계속 비어가지고... (그룹홈 C)

지금 이력서가 안 들어왔어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6명의 아이들, 만 3살부터 3고까지의 아이를 돌보고 있거든요. (그룹홈 B)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젊은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특히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지적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 지원자들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계속 시설이 늘어가요. 늘어간다는 것이, 원래 했던 시설장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를 불러오고 싶어도 너무 이게 열악하니까 부르기도 미안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룹홈 선생님들이 젊은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똑같이 열악한데 거기는 젊어. 그래서 제가 왜 젊나 보니까 거기는 일단 생활시설이 아니잖아요. 출퇴근이 되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설장이 24시간 한 주를 하면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젊은 친구들에게 오는 부담감이 엄청난가 봐요. 그런데 사실은 페이도 너무 적고 하니까. (그룹홈 G)

여기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 있는 사회복지사를 더 많이 채용을 못하거든요. 저희는 이쪽에서 기피하는 곳이에요 아동 그룹홈이. 사회복지사 사이에서.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밥까지 하니까. 그런 곳이라면 이쪽에 지원을 더 해가지고 처우도 낮고... 어떻게 되든지 재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진입해야지 그룹홈의 앞길이 밝다(그룹홈 C)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 근무 형태 및 시간

면담 참여자들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52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연장 근무 등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정말 근무하는 그 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잠자는 시간까지 합하면 훨씬 오바죠. (그룹홈 F)

52시간을 못 지키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것도 너무 행복한 비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희는 연장근무수당 하나도 못주는데. 어떻게 사람이 일이 딱딱 그 시간 맞춰서 퇴근이 돼요... 저희가 그 연장근무 개념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간근무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 급여가 연봉식으로 그냥 딱 돈이 뭉텅이로 나오면 거기서 n분의 1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근무수당도 없구요. (그룹홈 G)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일시보호시설의 보육사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생활시설이라는 근무 환경, 아동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사 일까지 병행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종사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종일 밥까지 하니깐. 그런 곳이라면 이쪽에 지원을 더 해가지고 처우도 낮고... 얼마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잠자야 돼, 밥하고 청소하고 해야 돼, 하다보니까 그런 걸 준비하고 하셨던 분들이 잘 안 오세요. (그룹홈 C)

나아가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도 내가 복지사로서 왔으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일반 주부하고 똑같잖아요. 주부의 일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페이도 작아. (그룹홈 G)

내 시간을. 보육사 선생님들이 내가 파출부 생각이 자주 든다는 거예요... 업무에 질을 개선 해줘야 되는데, 하루 3번 밥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맨날 하고 싶겠어요? 뭔가 내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운 사람들로서 뭔가 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룹홈 C)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가사 담당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은, 일전에 지자체의 일자리정책을 통해 파견 가사도우미를 지원받아 본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사도우미를 하루 4시간씩을. 5일을 파견해 줬었어요. 그분들은 나는 사회복지 실천기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쥐가지고 우리가 한 2년간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사 도우미를 파견해주면 사회복지사들이 훨씬 더... (그룹홈 C)

(3) 인건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부족 문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관심이 많은데, 어느 정도의 살 수 있는 페이는 맞춰줘야 들어올 수 있는데 나도 가끔씩 들어오라고 할 때 미안해. (그룹홈 G)

선생님들을 위해서 급여가 개선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못 구해요. ... 좋은 선생님 면접 하면 돈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룹홈 A)

현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의 경우, 최저 지급금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에 대한 금액은 경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차액은 대부분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른 필요 이상의 후원금 관련 업무와 종사자들 간의 급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후원금을 줄 때 직원 급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후원금으로 다 총당을 하겠어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해야지... (그룹홈 G)

하한선이 있어요. 얼마 이상 줘야 된다. 그 나머지는 그룹홈마다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요. 오래된 선생님은 좀 더 주고, 시설장은 좀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후원금이 절대 없는 집은 아예 그냥 N분의 1 이렇게 딱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해 보험비라든지 퇴직금을 후원금으로 할 수 있는 집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집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다 떼야 되니까 시설 차이가 있어요. (그룹홈 D)

시설 유형별 급여 차이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은 다른 가정 외 보호 유형 종사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우리 선생님이 있다가 보육원에 갔어요. 가보니까 다시 그룹홈 너무 좋다고 그룹홈에 다시 왔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월급이 70만원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만뒀어요. 사실 7만원도 아니고 70만원 이니까. (그룹홈 B)

저희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사회복지사고, 똑같이 교육받잖아. 같이 받는데 왜 누구는, 나는 20년을 일한 애가 갓 입사한 애랑 월급이 같아야 하나구요. 그럼 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들 받는 호봉만큼 우리도 받게 해주고 그 사람들 받는 교육만큼 교육해주고 그 사람들 인센티브 주는만큼 우리도 주고. (그룹홈 G)

면담 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운영 및 평가 면에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만큼,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차별 없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제일 급한 거는 저희가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사와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한 달에 13일에서 15일만 근무를 해도 저희보다 급여가 월등히 높거든요. 똑같은 급여 조건에 처우개선을 좀 해주셔서 정말 안정적인 보육사가 저희한테 들어와야... (그룹홈 B)

그러니까 저희는 뭐 다른 사회복지시설 돈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이면, 똑같이 평가받고 똑같이 감사받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심지어는 저희 회계, 국가정보시스템을 다 같이 쓰거든요. 똑같이 일하는데 왜 누구는 호봉제고 우리는 연봉해서 해마다 급여가 만원씩 오르나? 그것도 로또 사행기금이니까 불안한 거죠. (그룹홈 G)

다) 양육 특성

(1) 경제적 어려움

앞서 논의된 운영비 부족뿐만 아니라,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역시 자부담과 후원금으로 많은 부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들의 월급의 일부도 양육비에 쓰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족한 부분들은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고 애들 학습비도 줘야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문화 활동해야 되고 여름이나 겨울이면 아이들 데리고 가족여행이나 체험학습도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수급비로 한도 내에서 아이들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룹홈 F)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나라에서 cda통장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cda 통장에 아이들 돈 넣어주죠, 아이들 용돈 주죠, 그 다음에 아이들 학원 가야 하잖아요. 학원 끊고 나면 저희 기초생활수급금은 모자라요... 다 저희 후원하고 수급금으로 해요.(그룹홈 G)

(2) 법적 절차 및 권한

면담에 참여한 시설장들은 아동이 배치되는 순간부터 아동에 관련한 모든 법적 절차를 시설장이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토로했다.

아니니까 우리 애들이 전부다 호적이 없잖아요. 취득을 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전 처음 본 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적인 걸 가지고 그때부터 주민 센터, 구청, 여권등록 이러면서 하나 하나. (그룹홈 C)

아동에 대한 수급비 신청 또한 시설장의 몫이며, 이는 양육시설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통 이제 양육시설 같은 경우엔 보육원 같은 경우에 원장 하면 입소 수간에 바로 시설 수급이 되니까 수급비를 가서 양육할 수 있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수급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가정조사 같은 거 하고 나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그룹홈 C)

그룹홈에 오는 아이들은 우리가 신청을 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보육시설로 가면 가는 즉시 한 아이당 얼마가 딱 간다는 거예요... 니네가 신청을 안했으니 못준다는게 이해가 맞느냐? (그룹홈 B)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장이 아동의 법적인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법적인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통장도 저희는 못 만들어요. 통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래서 구청에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을 한 장 가지고 공문 하나에 통장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데서부터 저희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룹홈 G)

이러한 어려움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위급상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자해를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정신 병동에 이렇게 하는데, 원장님들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참 힘든 부분이에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룹홈 F)

우리는 후견으로 지정이 안 된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병원에 입원도 못 시켜요. 이 친 가족이 원 가족이 싸인을 해야지 애가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그룹홈 E)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아동을 어쩔 수 없이 양육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친권법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해요. 이 공동생활가정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인권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저희는, 저는 아무 권한이 없어서 큰 시설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를, 제 권한이 없어서. 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건데 그 아이가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장이 보호자가 되는데 우리 집은 내가 권한이 없어. 없어서 그냥 큰 시설에 이 아이를 전원했어요. 이 아이를 입원을 시켜야하니까. (그룹홈 G)

친권을 우선하는 제도로 인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 발생 사례들은 여러 면담 참여자들을 통해서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시설장은 아동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수급비 통장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한 뒤, 통장을 재발급 받아 아동의 수급비를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앞서 거론된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원치 않고, 원가정 분리가 아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아동을 원가정 복귀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태 또한 친권 우선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 수급비도 여기서 받아서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수급비를 우리가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 수 없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돈을 엄마가 잊어버렸다고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아이 수급비를 그 엄마가 쓰는 거예요. 빼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룹홈 F)

아까 말한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이라는 법은 다 알아봤어요 대충... 그랬는데도 친권이라. 학대기관에서 팀장이 왔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학대로 인한 것이 개입이 되는데 아니면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룹홈 A)

(3) 원가정 복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질 시에, 해당 아동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낼 때는 충분히, 지금 양육했던 시설장들의 얘기를 좀 듣고서 현재 있는 아동보호 전문가, 그 아이들을 의뢰했던 그 전문 기관들. 왜냐면 아보전은 아보전끼리 연결 되니까 그 분들도 그래서 아이들 근처에 가장 가까이 아보전들이 모니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부모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룹홈 C)

나아가, 원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 또한 논의되었다.

아이들을 분리한 다음에 반드시 그 가정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가정을 도와줘야 된다. (그룹홈 C)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아빠가 좀 더 이 아이를 케어 해 갈 수 있는 문이 좀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없어서 복귀를 시켜도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룹홈 B)

면담에 참여한 한 시설장은 아동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원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로 한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원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이거든요 복귀가 아니라... 그 가정을 아이를 분리한 다음부터 그 가정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아이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상담을 받고 컨설팅 받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서 그 가정을 지원해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회복되게 하면서 여기서 이 아이를 잘 사는지... 그런 복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룹홈 C)

4) 위탁가정

가) 가정위탁의 전반적인 어려움 및 개선 요구

(1) 법적 절차 및 권한

위탁부모의 법적인 권한에 대한 문제는 면담에 참여한 센터 종사자와 위탁부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한 종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위탁부모는 아이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보호자로서 행할 수 있는 역할에 따른 권한이 작다고 지적되었다. 위탁부모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아이의 법정 후견인이 되지 않는 이상, 아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이들 상황에 대해서는 붕 떠있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이들을 잘 못 케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센터 B)

이러한 아동의 법적인 지위에 관련한 문제는, 거시적 측면에서 법적 보호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양육에 따른 일상적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제한점이 드러났다. 예컨대, 아이의 통장개설, 수급비 출금, 진료 의뢰서 및 여권 발급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상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는 아동 통장 개설 같은 경우, 요즘 대포통장 때문에 일반인도 입출금예금통장 만들려면 까다롭고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엄마아빠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호자고 가정위탁으로 책정이 되어있어도 아이 통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죠. (센터 A)

아이같은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떼려고 하니가 못 떼는거예요. 후견인이 아니니까. 그쪽에서는 그게 처음이라 여기저기 확인하고. 저희 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있을꺼니까 후견인 신청을 한거거든요... 응급수술 할 경우에도 사인을 못 받아요. 법정대리인은 시설장님이신데... 연락이 매번 어려우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변경신청을 한거죠.(가정 B)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절차가 장기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위탁가정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위탁부모들이 법원에 가서 이런 상황이니 나한테 법적 대리인 자격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고 소송을 걸면, 엄청 빨리 하면 3개월, 오래 걸리면 6개월 걸려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아무도 이 아이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라도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떠있는 거죠. (센터 B)

진술서를 써야해요. 아이를 양육하는 철학 방향이런거도 써야해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워서 누가 대신 안해주시면 못하고 친권이 살아있는 경우는 더 못하고. 절차가 더 복잡해요. (가정 A)

후견인 신청과정에서 어느 쪽에서도 정확하게 순서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없었는데 거기서도 잘 모르시고. (가정 D)

나아가, 후견인 신청은 친부모가 있는 경우 더욱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왜냐면 친권이라는 게 권리가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행동책임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호자가 수감이 됐어요. 수감되면 친권자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학교도 못가고, 통장, 기타 등등, 주민등록증,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료보험은 주민등록 번호 대면 가능한데... 수술 이런 거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탁부모들이 법원에 가서 이런 상황이니 나한테 법적 대리인 자격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고 소송을 걸면, 엄청 빨리 하면 3개월, 오래 걸리면 6개월 걸려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아무도 이 아이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라도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떠있는거죠. (센터 B)

후견인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재산목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견인 했더니 법원에서 또 관리를 해주네.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 모자라고 더 들어가는 건 주냐고. 근데 일일이 어디에 썼는지 보고해야하는 것도 있고. (가정 B)

후견인이 지정되기까지의 절차상 복잡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적 또는 신청주의 후견인 제도가 제안되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그러면 친권을 영원히 주는 것 말고 임시적으로 6개월 정도 주는 것을 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행정기관에 넘겨주면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같이 쥐버리면... 전체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임시적으로라도 보내주면... 임시가 되게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줄 수는 없죠, 확인을 해야 하고, 적합판단을 해야하니까 법원이 책임을 가져야 하니까 그거는. 하지만 임시적으로 행정기관을 좀 믿어서 그걸 넘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센터 B)

시설장의 후견인을 우리도 받게 해달라고. 시설은 부모가 있건 없건 다 후견인이 되는데 구청에 신고만 하면 바로 후견인이 나오더라고요... 신청하면 되고 애가 퇴소하면 취소하면 되더라고요. 우리도 간편하게 위탁하는 동안에는 후견인 신청하고 이후 취소하면 되니까 업무상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권도 발급받기 쉽게 후견인이면 후견인 확인서만 가져가면 되는데 아니면 친부모한테 연락해야하고 저희도 행정상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훨씬 편하고 좋은데 왜 안해주시는지. (가정 B)

(2) 공공서비스 이용 어려움

면담 결과,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은 양육시설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입소 순위 점수에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등에 밀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민원을 복지부에 제기한 위탁모는 가정 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위탁부모는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순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가 애네들은 부모 형제가 없어서 가점을 줄 수가 없대요. 민원을 여러번 넣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서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고려를 매번 안 하더라고요... 아이가 수급자라서 점수가 있기는 한데 그 점수로는 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유치원에 다니는데 40만원이 넘어요. 수급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받을 수 있는 가점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가정 B)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사업 역시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위탁가정에서의 이용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저희들, 위탁이 되면 돌봄서비스를 못받는다고 되어있어요. 중복수혜라서 못 받게 되어있고. 위탁가정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센터 B)

(3) 관련 공무원 제도 및 현장 이해 부족

면담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무원들의 현장 이해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워낙 발령이 잦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협력은 해야겠고 하나까... 그러다보니 문제점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이랑 협조도에 따라 너무 달라진다는 것. 그게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것 같아요. 협조가 잘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이거를 잘 챙기시는 분은 어렵지 않게 그 지역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센터 A)

그리고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시군읍면 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야하는데 이게 심각성이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담당자들이 계속 변경되면서 이거를 놓쳐요. 우리가 해마다 교육을 하고 해마다 자료를 보내주고 해도 잘 몰라요. (센터 B)

가정위탁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공무원도 모르고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가정위탁 확인서를 내면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구청도 이렇게 처음인거예요.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고 공무원도 모르고 일반 사람들도 거의 모르고... (가정 B)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 위탁모는 전입신고 시 유관기관에 바로 안내가 가고, 아동 현황에 대한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 안된거. 서류로다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이가 와있는지도 기관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시청에서도.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해서 왔다고. 저희는 전입신고를 하면 단계적으로 시청도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가정 D)

지금까지 위탁가정의 전반적인 어려움 및 개선 요구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는 위탁지원센터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및 개선 요구를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가정위탁센터

(1) 배치에 따른 어려움

면담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시간 및 편의에 따른 배치로 인해 위탁가정에 배치되는 아동의 비율이 양육시설과 비교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종사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연계해주지 않으면 아동이 일반위탁에 배치되기 어려운 실정이라

고 토로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의뢰가 센터로 들어와도, 대기하고 있는 예비위탁 가정에 대한 재조사가 들어가야 함으로 그만큼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간과 편의를 고려한 배치가 우선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아이가, 가정위탁이 1순위가 되어야하는데 시설보호가 1순위예요. 더 많아지는 이유가. 왜냐면 제일 편하고 대기 안해도 되니까.... 저희한테 일반가정위탁 적합성 판단하고 하는데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동안 아이들 갈 데가 없어요. 서울하고 부산은 임시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데, 이 지방에는 없어서... 임시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이미 그쪽에는 학대받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보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설로 바로 보내버리는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위탁으로 오기가 좀 힘들어요. (센터 B)

반면,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위탁가정 또한 많다고 지적했다.

할머니가 그냥 키우는 가정도 사실 많아요, 제도권 안에 못 들어와서. 그 이유는 이 제도를 몰라서일 수도 있고... (센터 A)

그리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센터 B)

경제적 상황을 우선시하는 배치 기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은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아동을 배치하는 것은 아동의 안녕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아동이 조부모와 오랜 기간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유로 다른 가정 외 보호에 배치하는 것은 아동을 중심으로 두고 보았을 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위탁부모 자격요건에 경제적인 사건이 기초생활수급,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어려우면 안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기본적인 경제적 상황이 갖춰져야 되니까 어려우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고 상세내역에 기초생활수급은 경제적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경제적 상황도 중요한데 이 아이하고 오랫동안 애착관계를 형성해서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아이를 그 가정이 키우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센터 A)

이러한 경우, 아동을 다른 가정 외 보호로 배치하는 것보다, 친인척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이냐면 그 수급자가 대리, 친인척이 키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그 친인척의 보호 양육환경을 개선시켜주면 돼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집 이상하면 집 해주고 돈이 없으면 돈을 해주고 그래서 당신이 그래도 대신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해주면 되는데, 제 생각에 시설보호비용에 들 만큼을 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 분을 지원하면 제 생각에는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터 B)

(2) 규정 및 매뉴얼 부재

면담 참여 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은 가정위탁에 관련한 지침 및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확하고 명료한 지침 및 규정이 없는 것은 다양한 가정과 사례들을 관리해야 하는 센터의 입장에서 특히 어려운 점으로 제기되었다.

딱 지침 상에 1부터 100까지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으면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지침에 있는 내용은 조금 두루뭉술하게 되어있어요. (센터 A)

책자에 보면 아까 그 세 가지 분류로 설명을 해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이에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우리는 복잡해요.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것하고 그 다음 조치가 딱 정해져있는데, 저희는 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딱 한 개로 정리되면 좋은데... 또 기타 등등의 가야할 길에 셋 길이 너무 많아요. (센터 B)

이러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다고 설명했으며, 통합사례회의에 주체 또한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애매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라고 되어있냐면 대부분 명시는 안 되어있지만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통합사례회의의 주체가 누군지도 정해져있지도 않은 그런 회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된 전문가들이 하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지자체 공무원... (센터 B)

다) 위탁가정

(1) 경제적 어려움

다른 유형의 가정 외 보호와 마찬가지로, 위탁가정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인 어려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른 양육 어려움은 위탁 유형과 관계 없이 나타났다.

돈 들어가는 부분하고요 아이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거 두 개가 제일 큰 거 같아요. (친인척 C)

아이가 수급자라서 점수가 있기는 한데 그 점수로는 턱도 없는거예요. 그래서 동네 유치원에 다니는데 40만원이 넘어요. 수급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돈은 교재비 2만원 나와요. 문제집 하나 사면 끝이라고. (가정 B)

한 아동의 위탁모의 경우, 위탁 아동에게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 시작 전 대출을 받아 이사를 했다고 전했다. 초기정착금 지원이 있는지 몰랐으며, 현재는 아동이 등본 상 단독가정으로 되어 있어 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라고 밝히며, 가정 유지를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탁모의 아이 수급비로 양육은 가능하나, 부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경제생활에 할애해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아이 수급비 나오는 걸로 어느정도 아이 키우는거는. 제가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못해주니까. 일을 해야하니까. (가정 D)

친인척위탁가정의 한 참여자는 아동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격증 준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유족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허나, 유족연금마저 아동을 수입의 일부로 포함함에 따라 아동의 생계급여가 환수 조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생계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위탁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도 있는 반면,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지원금으로 다른 가구 구성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제 자기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 아빠가 약을 먹어야하는데 20만원씩 보내줘야하는데 자기 아빠 들어논 걸로 보내줘야할 수 밖에 없어 그렇게 쓰면 안된다는데도 내가 형편이 안돼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이자 돈하고, 이 돈이 아이들 돈에서 보내서 쓰고 있어요.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조사 나오면 어떤 일로 나올 지는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친인척 B)

면담에 참여한 한 조부모는 친부모가 지원금을 관리하고 그 중 일부를 아이 양육을 위해 조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동 대한 지원금 현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친부모에게서 받는 돈으로는 양육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은 삼촌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관리를 자기 엄마가 합니다. 내 추산에는 지민이 생계비하고 그 아동수당? 지금까지 모은거 아닙니까. 뭐 그런거인데. 잘 모릅니다... 미혼모인데 혼자 서 애를 돌이 키우고 낳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유수는 위탁을 안하고 친가에서 하는 거고 애 둘은 지금즈 엄마한테 다 올려져 있어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주는 거 없는데 지엄마가 주는데요.. 60만원. (친인척 A)

이러한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경우 지원금 이용 방식에 대한 어려움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이 카드로 하는 것이 내로서는 너무 힘들다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게 사는게 있고 아이들 과자사는게 있는데 그걸 또 따로 사야하고 이런것도 있고, 길 가다가 아이들 신발이나 옷 살 때 현금주고 사는데 그런거는 뭐 어떻게 하는건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좀 불편하다고 그걸 해결해주심 안되겠냐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고난 뒤에는 그걸 자체를 하니깐 그게 조금 무리가 신경이 쓰여서... (친인척 B)

(2) 양육 어려움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적인 아동양육에 따른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조부모 경우 아동의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나이가 몸이 70이 되다보니까 힘들고 요즘 아들 다 말을 안듣고 그래 합니다... 공부 같은거 할 때 아 무래도 엄마들은 젊으니까 학교 이런 것도 잘 챙겨주고 이래야하는데 나는 그게 그것도 너무 힘들어. 아침일어나 시키고 먹이고 숙제 챙기고 뭐 준비물 챙기고 이런거 하려면 막 갈 때까지 안 챙길라하면 뭐 전쟁이라. 갔다오면 또 시키고 먹이고 숙제하고 잠 잘 때까지 전쟁이고. (친인척 A)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수면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력적 고충이 일부 참여자들 사이에서 강조되었다.

(3) 체험 및 활동 지원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 및 활동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어, 아동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우리는 차가 없어서 못 움직이거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차 있는 가정이 별로 없더라고. 그니까 이런 행사 있지예 체험을 참 애들 체험이나 여행이나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애들은 이런거 하고싶잖아. 애들하고 이런거 1박 하고 하는 그거지예? 뭐 콘도로 어디로 간다든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 애들하고 뭐 못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못 누리고 살아...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좀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친인척 A)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워터파크를 간다는 행사도 뭐 모임같은거... (친인척 C)

또한, 이동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방문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아이가) 3명이잖아요. 나오는데 움직이는게 어렵거든요. 다 데리고다니게 좋겠는데. 나머지 애들은 또 케어를 해야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위탁지원센터에서 방문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방문 치료나 방문 지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도 방문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해보니까 더 좋았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친인척 C)

(4) 위탁가정 지원 확대

가정위탁 참여자들 중 몇몇은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홍보의 방법 중 하나로 현재 위탁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변에서 위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우선 홍보가 되게 부족하구요. 엄마들이 불편하지 않고 괜찮으면 주위에서도 할텐데 이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보이니까 엄두가 안나는거예요. 우리가 법원을 동사무소 다니듯 가니까. 애 서류도 못 된다고 하고. 그런걸 보면 엄마들도 불편해보이는거예요. (가정 B)

나아가, 정부가 위탁가정을 장려하려면 보육사 월급만큼은 위탁가정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자기 돈이 더 들어가요. 아이들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못 키우니까. 뭔가 이익이 되는 애한테 받는 행복감이 크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권하기가 각각의 집안 사정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보육사 월급. 시설에서는 시설장이고 뭐고 월급 받잖아요. 그런 식의 월급을 주고 제도적으로 만들면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가정 A)

그 현장에서 보았을 때, 차라리 정부에서 복지사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서 시설로 투입하니, 그런 선생님들께 줄 월급들을 차라리 위탁 부모들에게 주면서 이거를 활성화 시켜서 아이들을 가정으로, 지금 아동 복지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아이들에게 조성해서, 정서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교육적으로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위탁) 직업군으로 넣어야 되겠다고... (가정 B)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문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의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도 사실 고민을 안 한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아이돌보미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의 양육스킬이나 이럴 때, 전문적인 사회적 일자리의 인식이 있잖아요... 양육스킬이나 이런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안 한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정부가 가져가야 하는 정책중의 한 꼭지라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센터 C)

3. 소결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지자체 운영 일시보호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된 배치체계는 다음과 같다. 경찰, 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 배치되면,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아동이 배치된 주된 이유, 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후 배치에 관해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시청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전달되며, 이후 아동에 대한 배치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규정에 따른 배치 시 우선순위는 원가정이 가장 먼저이고, 다음으로 가정위탁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양육 시설로의 배치가 가장 많은 실정이며, 그 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원가정 순이라고 조사되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설명에 따른 가정위탁으로의 배치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준 위탁가정으로의 배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의뢰를 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센터에서 아동 및 대기 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아동 및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선정하여 지자체에 의뢰하고, 지자체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둘째, 이미 아이를 맡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 지자체에서 가정위탁센터에 적격여부 심의를 의뢰하여 배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각 가정 외 보호유형에 대한 시설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일시보호시설은 크게 지자체 사업으로 양육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 소규모 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일시보호시설의 주요 기능은 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임시적 보호 제공인 반면,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일시보호, 상담, 아동학대 예방 등 보다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양육시설은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및 양육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과 다양한 상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용이한 환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다양한 유형의 가정 외 보호를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역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해 있으나, 양육시설과 달리 최대 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가정 복귀 및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위탁은 지자체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업을 수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가정 발굴 및 양성, 아동 배치, 사례관리, 위탁가정 대상 교육 및 지원, 원가정 교류 및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시설별 종사자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 소규모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육사들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아동의 수와 연령이 유동적임을 감안해, 근무표 작성 시 비상근무조를 구성하여 보육사가 항시 대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모든 종사자들이 공무원이며, 순환근무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시설의 시설장들은 시설에 상주하지 않

며, 보육사의 근무 형태는 시설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주야 2교대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면담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의 대부분은 시설에 상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사의 경우 주 5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근무 형태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보호 시설의 사업비는 연간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시설 유형 및 실제 배치 되는 아동의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 금액이다. 이러한 사업비는 아동의 의식 주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아동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두 유형의 일시보호시설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에서 그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모든 종사자들이 공무원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지자체의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의 경우,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각 시설에 대한 한해 인건비가 지정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은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하다. 보조금은 운영비, 인건비 아동의 생계비 등을 포함한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거주하는 시설 자체는 시설장 개인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이며, 이에 따라 예산 심의는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각 시설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생계비 등은 아동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 지원받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비 및 인건비는 지자체와 후원금 유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지원센터는 지자체 수탁 사업임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지원 및 기관 기금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비, 사무비(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시설비 등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탁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살펴보면, 양육 보조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가정위탁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있으며, 이는 지역 및 위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초기정착 지원금 역시 위탁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가정 외 보호유형별 양육 현황 및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 배치의 주된 이유 및 과정부터 살펴보면, 일시보호의 경우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부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까지, 배치의 주된 이유가 보다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시설에 배치된 아동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먼저 배치되고, 이후 기관에서 시설로 의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유기 및 학대로 인한 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기로 인해 배치된 아동의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양육시설에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역시 학대와 유기로 인한 배치가 많으며, 배치 과정도 양육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아동에 대한 법적인 권한에서 양육시설과 차이를 보였으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시설보다 제한적인 법적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일반가정위탁 면담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계기로 위탁을 시작하였으며, 모두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정 외 보호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위탁 아동들은 다양한 배치 이유와 과정을 거쳤으나, 공통적으로 지자체 측의 연락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위탁의 경우 이미 법정 후견인이거나,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친인척 위탁의 법적인 책임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발달 현황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다각적 측면에서 발달이 더딜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배치 과정에 있어 아동들이 여러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분에서 오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양육시설 역시 보육사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아동의 정서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아동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발달이 언어, 학습, 정서 등 다각적 측면에서 조금 더딜 수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면담에 참여한 모든 시설에 상담치료 및 정서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또한 다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제행동에 대한 지적이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행동은 대체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부터 내재화 문제행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일반 가정위탁의 경우, 일부 아동이 수면 장애, 분리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인척의 경우 연령에 맞는 사회적인 발달이 더딘 것으로 설명된 아동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지원은 연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교육 현황의 경우, 재단 운영 소규모 일시보호에 배치된 아동은 원가정의 부모가 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해주지 않으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지자체 운영 시설에 배치된 아동은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 선생님을 통해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운영 소규모 일시보호시설은 아동의 욕구를 반영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에 따라 아동의 욕구를 전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태라고 지적했다. 생활 습관 훈련의 경우, 두 유형의 일시보호시설 모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육시설의 아동은 대체로 만 3세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입소 순위 점수에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등에 밀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시설이 있는 반면, 경제적인 이유로 사교육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시설도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 역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되었다.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모두 기본 생활 습관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훈육과 아동인권 사이의 딜레마를 지적하였다. 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분한 훈육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면담에 참여한 위탁 가정의 아동은 모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양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입소 순위에 따른 국공립 시설 이용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사업 역시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위탁가정에서의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일시보호시설에서의 원가정 교류 및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에 따르면, 원가정 교류는 아동과 아동 부모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유기 및 강제분리 아동의 경우 원가정 교류가 불가능하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 사이에서 아동의 원가정 교류에 대한 의견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종사자는 원가정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원가정 교류는 이상 속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종사자도 있다. 가정위탁의 경우, 면담에 참여한 일반가정위탁 아동들은 모두 베이박스를 통해 배치

되었음에 따라 원가정 교류 불가한 반면, 친인척위탁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담 분석 결과에 따른 가정 외 보호시설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배치에 관련한 어려움 및 개선 요구가 있다. 예컨대, 가정위탁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지적이 있겠다. 일시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은 반면, 가정위탁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 가정위탁에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아동에 대한 의뢰가 센터로 들어와도, 대기하고 있는 예비위탁 가정에 대한 재조사가 들어가야 함으로 그만큼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간 및 편의에 따른 배치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위탁에 배치되는 아동의 비율이 양육시설과 비교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나아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 또한 지적되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취지는 높게 평가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배치 이후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는 배치 상황에 따라 사례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 사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생애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질 시에, 해당 아동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정위탁 배치기준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경제적 상황을 우선시하는 배치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면담에 참여한 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은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아동을 배치하는 것은 아동의 안녕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필요시 아동을 다른 가정의 보호로 배치하는 것보다, 아동이 보호 받고 있는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복귀를 목표로 한 원가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원가정으로 복귀가 된 이후에도, 원가정에 변화나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가정 복귀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원가정 대상 교육, 지원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정위탁으로 배치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면담 참여자들 사이에서 있었다. 참여자들은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위탁을 고려하지 않는 가정이나 이미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위탁 가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면담에 참여한 위탁 부모들은 홍보의 방법 중 하나로 현재 위탁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주변에서 위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대상 재정적 지원 확대도 논의되었다. 정부가 위탁가정을 장려하려면 보육사 월급정도는 위탁가정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정위탁 대상 지원의 일부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과 법적인 절차에 있어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 및 권한에 따른 어려움 및 개선 요구는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위탁부모는 아이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보호자로서 행할 수 있는 역할에 따른 권한이 작다고 지적되었다. 위탁부모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아이의 법정 후견인이 되지 않는 이상, 아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위급상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절차가 장기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위탁가정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 위탁모는 전입신고 시 유관기관에 바로 안내가 가고, 아동 현황에 대한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시설장들 역시 아동이 배치되는 순간부터 아동에 관련한 모든 법적 절차를 시설장이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시설장이 아동의 법적인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법적인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아동이 친부모가 있는 경우 법적인 절차는 더욱 복잡하고 권한은 더욱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권을 우선하는 제도로 인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 발생 사례들 또한 여러 면담 참여자들을 통해서도 전해들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복잡한 법적 절차를 줄이고 아동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임시적 또는 신청주의 후견인 제도가 제안되었다.

면담 결과, 인력부족은 대부분의 시설이 겪고 있는 고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운영 시설의 경우, 기간 특성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시설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육시설이 아닌, 지자체 사업소로 분류되어 있어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법적 아동 대 보육사 총족 인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사자들은 현실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최소한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 대 보육사 배치 기준만이라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양육시설 역시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앞선 일시보호시설의 인력부족 문제는 기관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했다면, 양육시설에서의 인력부족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보다 밀접하게 논의되었으며, 인력부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강조되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젊은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특히 기피하는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다각적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종사자들의 근무 형태 및 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특히 영아 같은 경우에는 보육사들이 무조건 아동과 함께 자야 한다는 점에서 보육사들이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없는 환경임이 부각되었다. 주야간 24시간 근무형태 또한 보육사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 역시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육사들에게 특히 열악한 환경으로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참석 시 대체인력이 없어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양육 외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마저 부족하다고 전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52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시보호시설의 보육사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생활시설이라는 근무 환경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사 일까지 병행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종사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가사 담당 보조인력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근무환경 및 시간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입되고 있는 52시간 제도에 대한 우려 또한 면담 참여 종사자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아동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는 결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동일한 기준의 52시간 적용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한 인력 증원이 제시되었으며, 근무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인력 증원을 통한 업무 강도 및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현상이 변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인건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공무원 호봉을 따르고 있어 큰 불만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재단 운영 시설의 경우 개선 요구가 분명했다. 현재 종사자들의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지침보다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른 인건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양육시설 역시 낮은 인건비를 지적했으며, 지자체 사이의 임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자체별로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는 부적절하며, 정부의 책임아래 동일한 기본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도 제기되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최저 지급금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에 대한 금액은 경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차액은 대부분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른 필요 이상의 후원금 관련 업무와 종사자들 간의 급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아가, 시설 유형별 급여 차이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은, 종사자들이 다른 가정 외 보호 유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운영 및 평가 면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침을 따르고 있는 만큼,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차별 없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소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어려움이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아동 양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접근 가능한 정보 및 교육이 대부분 일반적인 가정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시설 아동 양육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아동에 대한 사

전 정보 부족, 특히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 부모의 유전적 요소, 태아 시절의 환경, 출산과정,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가정위탁의 경우, 일반적인 양육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일부 참여자들 사이에서 있었으며, 조부모의 경우 아동의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결과, 경제적 어려움은 모든 가정 외 보호시설 유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한해에 지정된 금액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방식의 운영비는 아동의 연령 및 그 수가 고정적이지 않은 일시보호시설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면담 참여자들은 지적했다. 양육시설의 경제적 어려움은 면담에 참여한 모든 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났으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역시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로는 시설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자부담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 운영비 및 양육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비용을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가정위탁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조부모들 사이에서 지원금 이용 방식에 대한 어려움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의 경우,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하였다. 일부 시설장들은 시설 운영에 관한 평가 및 관리 감독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으며, 시설 대상 평가 및 관리 감독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이해와 올바른 평가 및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면담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와 가정위탁 부모들 역시 공무원들의 현장 이해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및 가정위탁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발달 현황

- 01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한 발달 특성
- 02 아동보호시설의 양육자 면담을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 03 아동보육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 04 소결

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발달 현황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시설을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으로 정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의 발달 현황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현황에 관한 내용을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보호시설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가 직접 수행했던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하여 나타났던 결과를 중심으로 유아의 발달특성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발달에 관하여 성인의 보고 방식이 아닌 유아의 직접 수행을 통하여 알아보려 하고자 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영아는 제외하고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4가지 보호시설 유형 중에서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머무는 시간이 짧고 검사 이후 결과보고 등에 관한 수령자가 연계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제외되었다. 두 번째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운영자(부모) 및 종사자 대상 면담을 통하여 보고했던 영유아의 발달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양육시설의 아동보육사 대상으로 실시했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응답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에서 이상의 3가지 방식을 통하여 수집되고 분석된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발달 특성을 각각 살펴보려고 한다.

1.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한 발달 특성

MSSB 검사 대상 및 도구, 분석방법을 소개한 후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검사 대상

아동보호시설 유아와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협력진으로 MSSB

검사를 직접 수행했던 교수가 보유하고 있던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유아 대상의 MSSB 검사 자료가 포함되어 활용되었다.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유아는 서울과 경기도 2개 지역의 일반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고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만 5~6세 유아 중 보호자가 MSSB 검사 수행에 참여하기를 동의했던 32명의 유아 중 무선적으로 선정된 20명(신혜원, 2017)으로, 본 연구의 비교 집단에 포함된 연구 대상이었다.

본 연구 참여 유아는 일시보호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유아를 제외한 3개 유형인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총 15명이었으며, <표 V-1-1>과 같다.

<표 V-1-1> MSSB 대상 아동

사례	구분	성별	연령	기타
1	양육시설	여아	7세	수감
2	양육시설	남아	7세	베이비박스
3	양육시설	여아	7세	베이비박스
4	양육시설	여아	7세	베이비박스
5	양육시설	남아	7세	베이비박스
6	양육시설	남아	7세	베이비박스
7	일반가정위탁	남아	4세	베이비박스, 양육시설
8	일반가정위탁	남아	3세	베이비박스, 양육시설
9	일반가정위탁	남아	4세	베이비박스, 양육시설
10	조부모위탁	남아	-	미혼출산, 질병
11	조부모위탁	남아	-	수감, 재혼
12	친인척위탁	남아	-	이혼, 사망
13	그룹홈	남아	4세	베이비박스
14	그룹홈	남아	5세	학대
15	그룹홈	남아	4세	베이비박스

나. 검사 도구

1) 유아 내적 표상

유아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MacArthur Narrative Group이 개발한 이야기 완성과제(MacArthur Story Stem Battery, MSSB: Bretherton at al.,

1990)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를 다루며, 이는 부모와 애착, 가족 갈등, 친구 갈등,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13개의 에피소드와 시작부와 종결부로 구성되어 있다(Bretherton et al., 1990).

다. 검사 절차

이야기 완성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는 실시 지침(Bretherton & Oppenheim, 2003)에 따라 유아와 놀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 완성과제의 도입부에서 유아가 인형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를 하여 인형놀이에 친숙해지도록 한다.

이야기 완성과제 수행 시 검사자는 유아에게 함께 인형놀이를 하며, 어머니, 아버지, 손위 형제, 손아래 형제, 할머니, 강아지로 구성된 가족이 등장한다. 검사자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유아가 뒤를 이어서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야기 완성과제는 위탁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라. 자료 분석²⁵⁾

Robinson, Holmberg와 Klute(in press)의 코딩체계에 따라 이야기 완성과제의 녹화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Robinson과 동료들(in press)은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에서 Oppenheim, Emde, 그리고 Warren(1997)이 개발한 부모에 대한 표상 범주의 하위항목, Robinson과 동료들(2004)이 개발한 이야기 완성과제에서의 이야기 내용 주제, 감정반응, 이야기 일관성 범주에서의 하위항목, Warren, Oppenheim 그리고 Emde(1996)가 개발한 정서 코딩 범주의 하위항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요인분석한 후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 코드의 범주와 하위항목을 재조직하였다.

25) 본 연구 검사자는 이야기 완성과제의 실시 절차와 채점을 위해 JoAnn Robinson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본 연구의 검사자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 1주일 후에 본 연구자가 다시 분석하여 관찰자내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관찰자내 신뢰도(r)는 .93이었음.

Robinson과 동료들(in press)이 재조직한 범주는 공감/온화(Empathy/Warmth), 불안(Performance Anxiety), 회피/위축(Avoidant/Withdrawal),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Dysregulated Aggression), 정서적 통합(Emotional Integration) 범주이며 각 범주별 하위항목은 <부록 표 3-1>과 같다.

녹화된 자료에서 각각의 에피소드 별로 내용 주제에 해당되는 하위항목에 코딩 하였고, 코딩된 주제 안에서 <부록 표 3-1>에 제시된 점수체계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였다.

마. 자료 분석 결과

1) 보호시설유아와 일반유아의 내적표상 비교

아동보호시설 유아와 저소득층 유아의 내적표상 비교 결과는 다음 <표 V-1-2>과 같았다.

<표 V-1-2> 아동보호시설 유아와 일반 유아의 내적표상 하위 범주 평균 비교

하위범주	아동보호시설 유아 (n=15)	일반 유아 (n=20)	t
	M(SD)	M(SD)	
공감/온화	35.86(23.19)	25.80(7.25)	1.83
불안	22.72(15.23)	6.80(8.35)	3.96***
회피/위축	34.86(21.48)	4.85(4.35)	6.11***
비조절된 공격성	67.46(68.39)	5.85(4.10)	4.04***
정서	45.20(16.52)	4.05(3.66)	10.83***
정서적 통합	48.13(27.85)	91.35(21.54)	-5.18***
소계	93.33(31.48)	95.40(22.39)	-.22

*** $p < .001$

이야기 완성과제 시 보호시설 유아의 ‘공감/온화’ 수준은(M=35.86, SD=23.19) 일반유아의 경우보다(M=25.80, SD=7.25)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시설 유아의 ‘공감/온화’ 수준이 일반유아의 경우보다 높은 이유는

아동보호시설 유아 중 1명의 ‘공감/온화’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해석된다. 대상 유아는 시설(양육시설)에 있는 유아이었는데, 제시된 이야기 과제에서 도움을 제공하거나 양육자가 도움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내용으로만 이야기를 꾸몄지만, 갈등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공감은 나타나지 않았고 마치 도덕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패턴의 응답이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보호시설 유아의 ‘불안’ 수준, ‘회피/위축’ 수준,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은 일반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보호시설 유아의 ‘불안’ 수준($M=22.72$, $SD=15.23$)은 일반 유아의 ‘불안’ 수준($M=6.80$, $SD=8.35$)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t=3.96$, $p<.001$), 아동보호시설 유아의 ‘회피/위축’ 수준($M=34.86$, $SD=21.48$)은 일반 유아의 ‘회피/위축’ 수준($M=4.85$, $SD=4.35$)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6.11$, $p<.001$). 아동보호시설 유아의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M=67.46$, $SD=68.39$)은 일반유아의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M=5.85$, $SD=4.10$)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4.04$, $p<.001$). ‘비조절된 공격성’의 경우, 아동보호시설 유아의 표준편차가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아동보호시설 유아 중 몇몇은 비조절된 공격성 내용이 극단적으로 많이 나타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아동보호시설에서 배치되기 전에 가정 폭력, 부모의 죽음 등과 같이 극단적인 경험을 한 유아의 경우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이유 없이 부모나 양육자를 때리고 죽이는 행동, 갑자기 부모나 양육자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하늘로 날아가거나 공룡이나 칼 등과 같은 힘 있는 존재가 특정 대상을 날려버리거나 파괴해버리는 해리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베이비박스에서 보호시설로 즉각 옮겨진 유아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부정적인 경험이 없어서인지 비조절된 공격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보호시설 유아의 개별결과를 통한 내적표상 분석

아동보호시설 유아의 내적표상을 분석한 결과 아동이 해당 시설에 배치되기 이전의 경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는 현 시설 배치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표상이 잔존하고 있는 유형과 다음으로는 베이비박스 아동과 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첫 시설경험을 하여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이 적으나, 비논리적이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가) 아동보호시설 이전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표상 잔존 유형

아동보호시설에 오기 전에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경험으로 인해 여전히 부정적인 표상이 있는 유아의 경우 대체로 새로운 양육자와의 경험으로 인해 긍정적 표상이 형성되었으나,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표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체적으로 이들 유아의 경우에는 양육자에 대해 긍정적 표상과 부정적 표상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 형태로 나타났다.

(1) 부정 표상과 긍정표상의 혼재

양육자에 대한 긍정적 표상(훈육자로서의 표상)이 형성되었지만, 긍정표상은 적게 나타나며 여전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표상이 공존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표상이 반복되고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부정적으로 종결된다. 또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현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 표상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과 일반가정위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긍정표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공동생활가정 유아들의 경우,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상처 등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표상이 남아 있으나, 긍정적인 표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종사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유아에게 부정적 표상이 잔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 및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가정위탁 유아의 경우에도 양육자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룹홈 1) 할머니(양육자)가 흘린 주스를 닦아주고 목적지에 함께 가는 등의 양육자에 대한 긍정표상,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부정적으로 종결됨

(그룹홈 2) 모든 성인이 유아에게 올바른 규칙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내용이 반복 됨(엄마가 영수에게 닦으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영수에게 닦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수는 닦았어요. 지시 사항에 따르는 영수를 표상함)

(그룹홈 3) #6 아빠가 다시 미역국을 끓여서 가족들이 기다렸다가 먹음. #10 아빠가 차에 태워서 다 같이 여행을 갔어

(일반가정위탁 2) #1 엄마가 치워줬어. #5 아빠가 다 치웠어. 아빠가 다시 미역국을 끓여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었음. #8엄마랑 아빠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

(2) 정서 반응 존재

공동생활가정의 유아들 중 일부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표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특히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아동보호체계에 들어온 후 첫 시설로 양육시설을 경험한 유아들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베이비박스를 거쳐 양육시설이 첫 시설인 유아들은 부정적인 표상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공감 능력의 결여 등 정서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관찰되었다²⁶⁾.

(그룹홈 1) #7 엄마와 아빠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영수는 혼자 살아서 좋았어요

(그룹홈 2) #8 영수가 너무 너무 슬펐어요. 영수가 칼로 아저씨를 죽이려고 했어요. 엄마도 죽이려고 했어요. 엄마랑 아저씨도 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영수는 혼자 살으라고 했어요. 영수는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게 있어요

(3) 갈등 상황에 대한 무반응 및 회피

가정위탁 유아의 경우 갈등 상황에 대해 무반응하거나 회피하는 유형이 관찰되었다. 갈등 상황을 유도하는 에피소드에 있어서도 갈등 상황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파괴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거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잠을 자는 등의 방식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일반가정위탁 1) #3 친구랑 영수랑 씻었어. 목욕탕에서 씻었어. #4 같이 책보고 있어. 나중에 TV를 함께 보았어. 끝! #6다 같이 먹으면서 끝나
→ 갈등을 빼고 이야기를 하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반복함.

(일반가정위탁 2) #7 엄마, 아빠는 안 싸워요. 영수는 공원에 갔어
→ 갈등상황 부인하거나 회피함.

(그룹홈 4) #2 엄마가 사이 좋게 놀으라고 했어요 #4. 엄마가 잘 그렸다고 했어요. . #8 슈퍼 아저씨가 화났어. 엄마가 돈을 슈퍼 아저씨에게 주고 가져가라고 했어. 그런데 사탕은 안된다고 했어. 사탕은 여기 두라고 했어).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몰라! 모르겠어..”라고 반응함.
→ 갈등 상황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회피함.

(친인척위탁 1) #2 엄마가 보비를 찾으러 갔어. 찾아서 집에 와서 잤어.
→ 갈등 상황에서 잠으로 회피

26) 다) 아동양육시설 거주 유아의 내적 표상 참조.

(4) 비논리적이고 파괴적임

이야기 꾸미기의 논리성이 거의 없거나 부정적 종결과 갈등 고조가 자주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야기의 내용이 매우 부정적이고 공격적이었다. 등장인물 인형들을 바닥에 던지거나, 폭발하거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죽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되었으며, 갑자기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인척 위탁 유아들에게서 주로 관찰되었다.

(친인척위탁 1) #5 아빠가 영수를 돌봐주고 엄마가 영수를 때리고... 영수가 갑자기 없어졌어. 아빠가 영수를 찾으러 다녀. 엄마는 좀비가 되었어. 아가도 좀비가 되었어. #7 엄마가 집을 나갔어.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영수야 가져! 미친 아빠는 안 돼!'라고 말함. '영수는 내거야!' 엄마, 아빠가 싸워... 막 싸워... 그러다가 폭발해서 끝났어. #7 슈퍼아저씨 눈, 코, 입이 없어. 아~~ 무서워 엄마, 아빠!!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어.

→ 논리적이지 못하여 이야기 연결이 안 됨.

→ 갑자기 사라지거나 나타나고, 갑자기 갈등이 고조됨.

(친인척위탁 2) #1 아빠가 엄마한테 쓰러지기 많이 먹는다고 엄마를 넘어뜨렸어. #6 영수가 동생을 발로 차서 날라갔어. 피 터지게 때리고 발로 뺨 차서 날라갔다. #7 아빠가 엄마를 엄청 때리고 엄마는 죽었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 #10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서 할머니가 죽었어. 영수 인형이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말했어. 다시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시켜서 다 죽었어(이때 눈과 얼굴 표정에 분노가 가득함)

→ 부정적 종결과 갈등 고조가 자주 등장함.

(친인척 위탁 3) #3 영수가 엄마를 발로 뺨차서 날라감(반복해서 표현). #5 영수가 동생을 날려버렸어. 영수가 친구를 엄청 아프게 날려버렸어. 영수가 엄마를 날려버렸어 #6 모든 인형을 한 개씩 던져버림. #11 우주까지 엄마가 날라가버렸어(엄마 인형을 던져 버림) #12 해적이 돼서 날라가 버렸어. 아기 인형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엄마와 영수가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 그런데 아빠는 절대 안 떨어져서. 그러다가 아빠가 갑자기 떨어졌어. #13 영수가 가족들을 차에 태워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렸어(반복적으로 가족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다시 주워올려서 다시 떨어뜨리는 행동 반복함)

(5) 소결

본 연구에 한정되는 경우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 시설 배치 이전 유아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현 시설 유형별로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의 경우,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상처 등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표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공동생활가정 생활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회복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 유아에게 부정적 표상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치료 및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가정위탁 유아의 경우에는 불안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 표출 등과 같은 분노 행위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양육자와의 분리 불안이 심하여 MSSB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다른 일반가정 위탁 유아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놀이상황을 통해 살펴볼 때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 적은 것으로 보였다.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친인척 위탁의 경우, 조부모는 해당 유아가 문제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던 반면 실제 유아의 MSSB 검사 결과에서는 유아의 분노와 공격성이 내재해 있었으며 부정적인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부모가 유아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친인척 위탁의 경우에는 유아를 위탁하게 된 상황으로 인해 양육자 및 양육자의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유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외적인 지원과 치료 중재 등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가 많은 사례를 포함하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조심스럽게 친인척위탁만이 아닌 일반가정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관리될 때 보다 안정적으로 영유아가 성장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나) 아동양육시설 거주 유아의 내적 표상

본 연구에서 아동양육시설 거주 MSSB 검사 대상 유아의 대부분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발생한 보호필요아동이었다²⁷⁾. 일시보호시설을 거쳐 아동양육시설이 첫 시설인 유아의 대부분은 시설에 오기 전의 부정적인 경험이 없거나 적어, 부정적인 표상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은 이야기 전개 및 공감 능력의 결여 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에서 해당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27) 본 연구 대상 중에서 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의 대부분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발생한 보호필요아동이며, 한 명(양육시설 2)만이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하여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유아로 본 다)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1)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 전개

아동양육시설이 첫 시설인 유아의 MSSB 분석 결과 이야기의 논리가 없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갈등 상황에서 갑자기 훈육 받는 상황이 등장하고, 이후 훈육을 받는 원인이나 이유는 표현되지 않거나, 갑자기 양육자가 안아주는 등 논리적 일관성이 없었다.

(양육시설 1) #3 엄마가 공을 뺏었어요. 영희 울고, 친구 울고, 동생 울고, 엄마도 울고, 엄마가 따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손들고 벌서고 마주 보고 손 들라고 했어요. 영희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제 동생도 자고, 영희도 자고, 엄마도 자고... #4 아빠가 내 선물은 왜 없어? 라고 했어. 엄마가 영희를 안아줬어. 엄마가 고맙다고 했어. 다같이 슈퍼에 가서 껌을 샀어. 다 같이 잤어.

(양육시설 4) #5 엄마가 동생에게 위험하다고 안된다고 했는데, 영수는 친구랑 놀아. 동생이 넘어져서 병원에 엄마가 데려갔는데, 영수는 친구랑 공놀이 하다가 공이 없어서 엄마가 찾아줘서 다시 놀이 했어.

(2) 양육자에 대한 긍정표상, 정서적 윤택함 부족

이 유형의 유아들에게는 양육자에 대한 긍정표상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유아들에게 있어 양육자는 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훈육하는 존재,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로 나타났다.

(양육시설 5) #1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3 엄마가 TV 보지 말고 조용히 자라고 해서 영수는 자고 친구는 집으로 갔어. #6 엄마가 “영수가 괜찮아. 찬물에 씻고” 병원에 데려갔어. 엄마가 국을 다시 만들었어. #10 엄마아빠가 잘 다녀왔어.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주었어.

그러나 이 유형의 유아에게서는 정서적 윤택함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공감이나 감정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양육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야기에 구성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공감도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소결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보호필요아동이 된 아이들 중 양육시설이 첫 시설 경험인 유아들은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표상은 적은 반면, 전반적으로 정서적 공감

능력이 떨어진 교과서적인 표현이나 맥락에 맞지 않은 논리 전개 등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유아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경우에 사회적 생활에서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양육자의 잦은 변경이나 양육자 당 양육하는 유아가 많아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감정표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기술 훈련 등의 적절한 중재조치, 가정과 유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자 당 유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2019b: 4)가 2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 가정위탁 우선 배치 노력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위탁보호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2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보호시설의 양육자 면담을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면담을 통한 4가지 보호시설 유형에 따른 영유아 발달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 일시보호시설 영유아의 발달 현황

면담 참여 대상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일시보호시설에 배치된 아동들의 경우, 다각적 측면에서 발달이 더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달은 조금씩, 정상적인 아동보다는 어쨌든 다 떨어집니다. 그냥 딱 봐도, 어쨌든 정서적으로 다 충격을 받은 아동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동들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일시보호 A)

최근에 들어온 아이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고 대근육... 가는 게 안 되서 거의 작은 침대에서 한참 기고 6개월 이후에 그런 게 공간이 안되있는 집이었는데 가는 게 제대로 안됐고, 약간 갇혀서 큰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기에 말을 안 하고 계속 상호작용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약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에는 안타깝다. (일시보육 E)

배치 과정에 있어, 아동들이 여러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분에서 오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나. 아동양육시설 영유아의 발달 현황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일부 면담 참여자들은 아동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양육시설 D)

아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발달문제가 전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양육시설 H)

반면, 몇몇 다른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발달이 조금 늦다고 답하였다.

모든 발달이 조금 늦죠. (양육시설 B)

조금 더딘 편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미숙아 아이들도 오고, 저체중으로 해서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 오기도 하고, 거의 베이비박스 많기 때문에 엄마들 영양 상태도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 같고. (양육시설 K)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돌 된 애가 발달이 조금 더디다고 말을 많이, 그렇게 해서 뇌성마비 의심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점점 더딘 거지 뇌성마비까지는 아니고... 영유아 발달체크까지 다 했는데 그냥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딘 걸로 그렇게 나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느리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양육시설 L)

그런 아이들이 있고 저희 아이들 제일 걱정되는게 잘 자라는 애들 걱정되는게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많이 작아요. (양육시설 C)

면담 참여자들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언어, 학습, 정서 등 다각적 측면에서 발달이 더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발달에서도 아무래도 일반 가정 아이들은 엄마랑 아이들이 아이컨택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1대 다수이다 보니까 언어발달이 대체적으로 좀 느린 편이긴 한 것 같긴 해요. (양육시설 K)

(학습이) 거의 바닥이에요. 차이가 엄청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나면, 학원을 못 가서라기보다는,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정 환경들이, 좋지 않은 문제 행동 있는 아이

들이 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습의욕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아이들 몇 명에서 학습능력 저하로 해서, 특별반에서 공부하는 애가, 도움 받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지금 서너 명 있거든요. (양육시설 D)

요즘은 정서적으로 아픈 애들이 너무 많고 (양육시설 B)

특히, 양육 시설의 특성상 여러 명의 보육사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만큼,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들이 이제 베이비박스에서 와서 생활하고 나이가 먹어서 부모 밑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사들이 주는 사랑이나 애착 부분에서 양분이 충족되지 못하다보니 발달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폭 차이가 있어요. 충족감을 느끼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부분도 빠르고 학습적인 부분도 집중을 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안을 많이 보이고 애착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집중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담당 선생님한테도 애착을 갈구하는 행위만 집착을 보이고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양육시설 I)

너무 자주 바뀌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애착이 심한 거 같아요. (양육시설 K)

한 분 선생님이 두세 명을 봐야하는 상황이니까 애착관계부분이. 그리고 두세 명을 맡더라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모르겠는데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거든요. 24시간 교대근무니까. 선생님이 그냥 매일 바뀐다고 생각하면 아이들 애착문제가. (양육시설 F)

일단은 분리불안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만뒀서 바뀌는 경우가 있구요. 저희가 연령이 학교를 가야하면 반을 올려지기도 하고 선생님들끼리도 반을 나누면서 갑자기 애기가 들어오거나 조금 큰 애기가 들어오면 반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애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한테. 이직을 또 하게 되면 애들이 한 선생님하고 적응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이거든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거기 이제 큰 아이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애기들은. (양육시설 E)

나아가, 전반적인 심리적 불안과 우울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발달 특성이었다.

그리고 심리상태도 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아이들을 돌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부분도 많고, 저희가 애기 때 많이 안아주기도 하고 수유도 하는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 그 부분이 많이 크고... (양육시설 K)

심리적 기저에 있는 우울감이 아이들이 깔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낮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데, 원초적으로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출발을 하는데 뭉쳐있을 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도 문화탐방이니 밖에 데리고 나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기 죽는다 그러나요. 지레 기죽어서 있는걸 보면 제일 안타깝죠. (양육시설 F)

이에 따라, 면담에 참여한 모든 시설에 상담치료 및 정서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치료 많이해요. 표현하지 못하는거. 감정표현 못하는거. 불안해하는거... 여러명이 있으면 더 잘지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애들 있어요.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놀이치료. 아이들 중엔 정신적으로 정서 장애아이들을 치료 가야하죠. 우리 안에 상담실 있지만 상담사가 못하는건 외부치료를 받아야해요. (양육시설 A)

약 먹는 아이들 치료받는 아이들 많아요. (양육시설 B)

지금 심리치료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 열 명쯤 돼요. 주로 학대로 들어온 애들은 심리치료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되어야 하니까, 그 중 약물 복용하는 애들도 있고요. (양육시설 F)

애들이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었는데 최근, 정말 정서치료받는 애들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애는 이래서 그렇고 재는 분노조절이 안 되고, 뭐가 안되고, 놀이치료 해야하고 미술치료 해야하고. (양육시설 J)

한 종사자는,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의 특성상 한 아동의 발달 및 문제행동이 시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집중적인 치료 및 케어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아이만의 문제가 결국은 다른 아이들한테, 그 집이 통째로 흔들려요... 돌발행동이 발생하면 선생님이 애한테 신경 쓰느라 다른 애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애는 발달문제라던지 경계 급의 문제가 있는 애가 된다던지... 그런데 그 애들이 갈만한 시설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만한 시설이 없는 거예요... 자라면서 갈데가 없으니깐 이 안에서 문제 활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모든 시설 2~3명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최소한. (양육시설 J)

일부 면담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중적인 치료 및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앞으로 문제, 학대, 정서장애 아이들이 들어올 확률이 많잖아요. 일본이 80%가 학대잖아요. 우리도 부모학대 70~80%잖아요. 그런 애들은 일반아이들과 같이 키우면 안된다니까요. 전문가가 치료가 들어가야지. (양육시설 A)

그 안에 학교도 있고, 아이들 치료시설도 있고. 저희도 일본이나 어디 다른 선진국 가서 보면 아예 전문적으로 치료사와 아이와 상담사와 보육사, 의사 다 갖춰져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치료를 해서 결국은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각 시도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육시설 J)

다시 적응을 해야 하니까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바로 저희한테 이제 긴급하게 오더라도 저희한테 안 오고 바로 양육시설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들이 매번 가는 장소마다 다시 적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나이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보호 A)

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영유아의 발달 현황

면담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의 발달 상태는 각 공동생활가정(그룹홈)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다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가 일반적인 발달 궤도를 밟고 있는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일부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룹홈 E)

무난한 발달은 약간 아닌 것 같고... (그룹홈 F)

대부분의 면담 참여 종사자들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러한 행동은 대체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부터 내재화 문제행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위산만, 소리 지르기, 공격적 행동 등이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거론되었으며, 이에 따른 치료 및 상담을 받는 아동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오는 애들이 상처받는 애들이다 보니까. 외면화 시켜서 행동으로 막 나오니까 그래요. (그룹홈 F)

여기 구성원 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분노조절장애가 2명이나 있어요. ADHD, 정신과 약을 먹고.... 딱 보면 ADHD 아니야? 이럴 정도로 막. 아무데나 올라가서, 그게 위험하다고 몇 번을 얘기 해줘도 뒤돌아서면 똑같이 그 행동을 한다.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사회적인 일, 활동 속에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혼자서 돌아다니고.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우리 애가 어디에서 같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지 맘대로. 그게 틀어졌어요. (그룹홈 F)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도 제가 작년에 경계성 아동 교육도 받으러 갔었는데, 지금 저희가 회의를 가보면 전체적으로 경계성 아동이 되게 많아요. (그룹홈 G)

공격성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개네랑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기도 엄마가 말하는(나한테 엄마라 그래요.) 학습이 된 것 같다고.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맨날 술병 던지고 머리 찢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냄비 던지고 이런 것들을 봐서 자기가 그런 것 같다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룹홈 E)

새로운 아동이 배치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나, 평소에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지 않던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7살 같은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이 있죠. 때리고. 애가 막 말하면 때리고, 저기하면 물어버리고. 전혀 그 애 없을 때는 완전히 순둥이처럼 이렇게 됐는데, 애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룹홈 F)

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는 아동의 습관적인 절도 문제로 심리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데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심지어는 가장 심각한 게 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돈을 훔치고, 남의 물건을 가져온다는 것이 훔친다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거를 잡는 게 10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룹홈 G)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행동으로는 분리불안이 반복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아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의 성을 시설장의 성으로 바꾸거나,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의 성을 통일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제쯤 아냐면 세 살 네 살쯤 되면 느껴요. 물어 봐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 엄마 우리는 왜 앞에 글씨가 다 달라?? 성이 왜 달라? 성이 다른 거. 그러면서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게. (그룹홈 B)

이번에는 제 성으로 했어요. (그룹홈 C)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의지하고 살지. 애는 김씨고 이씨고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룹홈 A)

앞서 살펴본 발달과정이나 문제행동들은 아동의 입소 시기나 배치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입소 시기의 경우, 아동이 어릴수록 일반적인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우리로 7살짜리 24개월 때 왔잖아요, 그 다음 6살짜리가 6살 때 왔잖아요. 24개월짜리를 키울 때는, 어렸을 때부터 애는 정말 그 순서대로 컸어요. 자연스럽게. 그 발달 순서대로 모 나지 않게 컸는데, 6살 때 들어온 친구는 걸잡을 수가 없어요. 말의 어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데, 사회적인 인지나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뒤떨어져 있고... (그룹홈 F)

가정 외 보호를 받게 된 주된 이유와 배치과정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지금 5세가 미혼모 애기하고 베이비 애기는 또 달라요 성장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 품도 또 달라요. 애가 뭐냐면 정서적으로 불안이 더 있어요. 베이비에서 온 아기가. 그리고 분리불안증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집에 오기까지 애가 4번을 거친 거예요. 25일 만에 왔는데... (그룹홈 B)

저희가 생각한건 뭐냐면 이 아이들처럼 여기저기 갔다 오는 아이들은 일반 애들과 틀리다는 거지 정서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고 그 나오는 성향들이나 이런 것도 좀 폭력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과정들을 보면 미혼모에서 온 아이는 제가 안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그런 분리(불안)는 없어요. (그룹홈 D)

라. 위탁가정 영유아의 발달 현황

면담에 참여한 일반위탁 가정의 아동들 중, 수면 장애 및 분리불안을 겪는 아동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에 잘 때 폭 못 자요. 지금도 그래요... 떨어져서 못자고. 밤에 자다가 울고 불안해해서 그게 조금 힘들고... 처음에는 어린이집 다니는 것도 3달 걸렸거든요. 지금은 밤에 자는 것만 좀 불안해주고. 처음에는 저 아니면 안돼요. 요새는 많이 나아져서. 낮의 생활은 평범한데 밤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자는 동안 폭 못 자고 새벽 1-2시쯤 깨더라고요. 그럼 확인하고 자고. (가정 A)

지금도 같이자요. 야경증이 되게 심했어요. 새벽에 깨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펄쩍 펄쩍 뛰는데 아이는 몰라요. 깨워도 모르고 안으면 안았다고 화내고 그래서 떨어지지만 않게 잡고 그랬어요. 요즘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새벽에 3번 4번은 깨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자니까 키도 덜 크고 힘들긴한데 적응할 때까지는 저희가 잘 봐주고 해야할 것 같아요. (가정 B)

한 아동의 경우, 이러한 수면 장애로 인해 신체발달에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발달 검사를 했는데 키하고 몸무게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도 야경증이 있는 아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잠을 못자서 키가 안 크는 것 같다고 몸무게랑 차이 나는 건 안 좋다고 병원을 소개시켜주셨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가정 B)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언어발달 및 사회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체발달이 더디다고 전했다.

아이 특성상 발육이 조금 늦는. 데리고 오는 동안은 몰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혼모고 그래서 미숙아가 아니었다. 16개월 때 저희가 봤을 때 아직도 3등신인거예요. 조금 미숙아가 아닌가. 제가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더라구요... 아이가 신체조건이 또래보다 작고... 학업적인거에 관심이 없고 그림 그리는 것도 또래에 비해서 엉망이에요... 소근육발달이 느리다보니까 만들기 그리기 글씨쓰는거 이런거.(가정 D)

면담에 참여한 친인척 위탁 가정의 양육자들은 아동의 언어발달, 신체발달 등에 부진함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예, 없습니다. 그런건 전혀 없고요. 잘 크고 있고... 잘 크고 있고 엄마 아빠 밑에서 큰 애들 못지 않게 잘 크고 있습니다. (친인척 A)

(신체발달도) 크고요. 영어도 잘하고... (발달적으로) 이상없습니다. (친인척 B)

눈에 띄는 건 없고요 (친인척 C)

다만, 친인척 C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의 경우, 언어 및 신체적 발달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으나, 연령에 맞는 사회적인 발달이 더딘 것 같다고 전했으며, 어른을 우습게 보는 듯한 태도, 폭력적인 행동 등 문제행동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막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를 막 때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면 혼자 올라갈 수 있어야하는데 자기 교실까지, 그거를 못하고... 그런 것들. 혼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 그 나이에 해야하는 것들 그거를 좀 가끔씩 당황스러워요. 못할 때... 유치원에서 자주 연락이 와요. 어제도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소리지르고, 대든다는 걸 모자라 소리를 질러요 지르고 막 울면서... 거의 유아독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른도 안무섭고 이렇게 때려봐요. 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문제행동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친인척 C)

위 아동에 대한 검사 및 치료는 아직 아동의 나이가 너무 어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에서 지원되는게 있었는데 그거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못 받는데... 보내주시는 건 외부에서 보내주는 걸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걸려서 기회는 없었던거 같아요. (친인척 C)

이러한 연령에 따른 제한적 검사 및 치료 지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5살은 해당되는게 없어요. 6살 7살 때부터 좀 있구요. 5살은 거의 없어요. 5살이 갈데가 없더라고요. (가정 A)

면담에 참여한 다른 가정의 만 6세 아동의 경우, 바우처 지원을 이용해 미술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놀이 개념으로 받고 있는 심리치료라고 전했다.

수요일은 심리치료. 미술심리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마다. 그건 바우처 지원 받아서. 같이 모여서 노는걸 못 맞춰주니까 노는 법도 배우고, 혼자서도 놀 수 있는 방법도 배워라.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 정서도 좀 낫지 않나 해서. (가정 D)

3. 아동보육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아동보육사를 대상으로 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의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무, 유형, 재활프로그램을 받는 영유아 수를 질문한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 영유아의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1)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무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영유아 유무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5%,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7.5%로 나타났다. 있는 경우에 한해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 중 문제행동이 있는 영유아 수를 물어본 결과 1명, 2명,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2.1명 정도의 문제행동이 있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의 연령에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문제행동 영유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보다는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문제행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V-3-1〉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영유아 유무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52.5	47.5	100.0 (263)	37.0	39.1	23.9	100.0 (138)	2.1
시설규모								
50인 미만	57.3	42.7	100.0 (89)	51.0	37.3	11.8	100.0 (51)	1.7
50인 이상	50.0	50.0	100.0 (174)	28.7	40.2	31.0	100.0 (87)	2.3
$X^2(df)$	1.259(1)			9.370(2)**				-2.7**
연령								
20대	66.0	34.0	100.0 (97)	31.3	42.2	26.6	100.0 (64)	2.1
30대	50.0	50.0	100.0 (82)	34.1	41.5	24.4	100.0 (41)	2.1
40~50대	39.3	60.7	100.0 (84)	51.5	30.3	18.2	100.0 (33)	1.8
$X^2(df)$	13.154(2)**			4.056(4)				0.9
경력								
5년 미만	53.4	46.6	100.0 (131)	35.7	40.0	24.3	100.0 (70)	2.1
5~10년 미만	51.9	48.1	100.0 (77)	35.0	47.5	17.5	100.0 (40)	2.0
10년 이상	50.9	49.1	100.0 (55)	42.9	25.0	32.1	100.0 (28)	2.1
$X^2(df)$	0.111(2)			3.978(4)				0.2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51.4	48.6	100.0 (140)	36.1	37.5	26.4	100.0 (72)	2.1
대졸 이상	53.7	46.3	100.0 (123)	37.9	40.9	21.2	100.0 (66)	2.0
$X^2(df)$	0.131(1)			0.517(2)				0.8
돌봄 유형								
영아만	25.6	74.4	100.0 (90)	47.8	34.8	17.4	100.0 (23)	1.9
유아만	66.3	33.7	100.0 (101)	38.8	38.8	22.4	100.0 (67)	1.9
영유아 모두	66.7	33.3	100.0 (72)	29.2	41.7	29.2	100.0 (48)	2.3
$X^2(df)$	39.748(2)***			2.806(4)				1.3

* $p < .05$, ** $p < .01$, *** $p < .001$

2)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형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경우 유형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언어발달

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지발달 26.1%, 외현화 문제행동 13.0%, 신체발달 10.9%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대 보육사 비율이 2:1 미만인 시설의 경우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이 높게 나타났으며, 2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에는 외현화, 정서발달, 신체발달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의 경우 영아와 비교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영아의 경우 언어나 신체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3-2〉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형 - 1순위

단위: %(명)

구분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신체 발달	내재화	외현화	계(수)
전체	26.1	5.8	2.2	37.7	10.9	4.3	13.0	100.0 (138)
시설규모								
50인 미만	29.4	2.0	0.0	29.4	19.6	2.0	17.6	100.0 (51)
50인 이상	24.1	8.0	3.4	42.5	5.7	5.7	10.3	100.0 (87)
$\chi^2(df)$	13.681(6)*							
연령								
20대	14.1	4.7	3.1	40.6	12.5	4.7	20.3	100.0 (64)
30대	36.6	2.4	2.4	43.9	4.9	2.4	7.3	100.0 (41)
40~50대	36.4	12.1	0.0	24.2	15.2	6.1	6.1	100.0 (33)
$\chi^2(df)$	20.480(12)							
경력								
5년 미만	18.6	5.7	4.3	37.1	14.3	2.9	17.1	100.0 (70)
5~10년 미만	27.5	5.0	0.0	32.5	12.5	7.5	15.0	100.0 (40)
10년 이상	42.9	7.1	0.0	46.4	0.0	3.6	0.0	100.0 (28)
$\chi^2(df)$	18.345(12)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27.8	6.9	1.4	36.1	11.1	5.6	11.1	100.0 (72)
대졸 이상	24.2	4.5	3.0	39.4	10.6	3.0	15.2	100.0 (66)
$\chi^2(df)$	1.976(6)							
돌봄 유형								
영아만	21.7	0.0	0.0	43.5	21.7	8.7	4.3	100.0 (23)
유아만	32.8	9.0	4.5	28.4	0.0	3.0	22.4	100.0 (67)
영유아 모두	18.8	4.2	0.0	47.9	20.8	4.2	4.2	100.0 (48)
$\chi^2(df)$	35.472(12)***							

* $p < .05$, ** $p < .01$, *** $p < .001$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형을 1, 2, 3순위로 물어본 결과, 언어발달이 6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지발달이 47.8%로 나타났다. 이어서 외현화 문제행동 33.3%, 정서발달 27.5%, 신체발달 24.6%, 사회성 발달 22.5%, 내재화 문제행동 1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3〉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형 - 1+2+3순위

단위: %(명)

구분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신체 발달	내재화	외현화	(수)
전체	47.8	27.5	22.5	63.8	24.6	14.5	33.3	(138)
시설규모								
50인 미만	43.1	27.5	21.6	45.1	29.4	15.7	37.3	(51)
50인 이상	50.6	27.6	23.0	74.7	21.8	13.8	31.0	(87)
연령								
20대	40.6	28.1	18.8	62.5	25.0	12.5	45.3	(64)
30대	56.1	24.4	24.4	73.2	24.4	17.1	22.0	(41)
40~50대	51.5	30.3	27.3	54.5	24.2	15.2	24.2	(33)
경력								
5년 미만	40.0	24.3	20.0	60.0	27.1	11.4	42.9	(70)
5~10년 미만	52.5	35.0	20.0	60.0	32.5	17.5	27.5	(40)
10년 이상	60.7	25.0	32.1	78.6	7.1	17.9	17.9	(28)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48.6	30.6	22.2	62.5	26.4	13.9	34.7	(72)
대졸 이상	47.0	24.2	22.7	65.2	22.7	15.2	31.8	(66)
돌봄 유형								
영아만	39.1	13.0	21.7	52.2	43.5	17.4	21.7	(23)
유아만	49.3	35.8	23.9	59.7	9.0	14.9	44.8	(67)
영유아 모두	50.0	22.9	20.8	75.0	37.5	12.5	22.9	(48)

나. 재활프로그램을 받는 영유아

양육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 중 재활프로그램을 받는 영유아 수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평균적으로 1.4명 정도가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8%의 보육사가 재활프로그램을 받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3.2%는 재활프로그램을 받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 규모가 큰 경우, 보육사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영유아들이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었으며, 영아만 양육하는 보육사의 80.0%가 재활프로그램을 받는 영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유아의 경우 22.8%, 영유아 모두 돌보는 경우 38.9%가 재활프로그램을 받는 영유아가 없다고 응답하여 영아보다는 유아가 재활프로그램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3-4〉 재활프로그램 받는 영유아 수

단위: %(명), 명

구분	0명	1~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46.8	30.4	22.8	100.0	(263)	1.4
시설규모						
50인 미만	57.3	27.0	15.7	100.0	(89)	1.1
50인 이상	41.4	32.2	26.4	100.0	(174)	1.5
$\chi^2(df)/t$	6.678(2)*					-1.7
연령						
20대	34.0	34.0	32.0	100.0	(97)	1.8
30대	50.0	25.6	24.4	100.0	(82)	1.3
40~50대	58.3	31.0	10.7	100.0	(84)	1.0
$\chi^2(df)/F$	16.036(4)**					5.6**(a)
경력						
5년 미만	49.6	26.7	23.7	100.0	(131)	1.4
5~10년 미만	45.5	33.8	20.8	100.0	(77)	1.2
10년 이상	41.8	34.5	23.6	100.0	(55)	1.5
$\chi^2(df)/F$	1.923(4)					0.5
최종 학력						
전문대졸 이하	46.4	26.4	27.1	100.0	(140)	1.5
대졸 이상	47.2	35.0	17.9	100.0	(123)	1.3
$\chi^2(df)/t$	4.033(2)					0.9
돌봄 유형						
영아만	80.0	7.8	12.2	100.0	(90)	0.6
유아만	22.8	46.5	30.7	100.0	(101)	2.0
영유아 모두	38.9	36.1	25.0	100.0	(72)	1.7
$\chi^2(df)/F$	66.525(4)***					17.4***(a)

* $p < .05$, ** $p < .01$, *** $p < .001$

4. 소결

유아 애착 표상 검사(MSSB) 결과에서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 가정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수준, ‘회피/위축’ 수준,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배치되기 전에 가정 폭력, 부모의 죽음 등과 같이 극단적인 경험을 한 유아의 경우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이유 없이 부모나 양육자를 때리고 죽이는 행동, 갑자기 부모나 양육자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하늘로 날아가거나 공룡이나 칼 등과 같은 힘 있는 존재가 특정 대상을 날려버리거나 파괴해버리는 해리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 애착 표상 검사(MSSB) 개별 분석 결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 오기 전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 양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측면이 있는 반면, 여전히 부정적인 표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아를 위한 치료 및 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일반가정 위탁 유아의 경우에는 다소 불안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적대적 행위 등 부정적인 감정 표출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성장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아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유아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은 없었던 반면, 공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맥락에 맞지 않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후 성장 시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측면이 엿보였다. 이를 위한 치료 및 중재가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면담 참여 대상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일시보호시설에 배치된 아동들의 경우, 다각적 측면에서 발달이 더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양육시설 종사자의 면담 내용을 요약하면, 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언어, 학습, 정서 등에서 발달이 느리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여러 명의 보육사가 아동을 보육하는 양육 시설의 특성상, 영유아들이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심리적 불안과 우울은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많은 영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발달 특성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면담에 참여한 양육시설은 상담 및 정

서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영유아들이 다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많이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문제행동은 대체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부터 내재화 문제행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는 것으로 보고했다. 새로운 아동이 배치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갑자기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주로 나타나는 내재화 문제행동으로는 분리불안을 많이 언급하였으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아동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일반위탁 가정의 아동들 중, 수면 장애 및 분리불안을 겪는 아동이 일부 있다고 보고하였다. 위탁가정의 경우 한 위탁모는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언어발달 및 사회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체발달이 느리다고 이야기했다. 친인척 위탁의 경우, 언어 및 신체적 발달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으나, 연령에 맞는 사회적인 발달이 더딘 것 같다고 전했으며, 어른을 우습게 보는 듯한 태도, 폭력적인 행동 등 문제행동도 보인다고 했다.

아동보육사를 대상으로 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의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무, 유형, 재활프로그램을 받는 영유아 수를 질문한 결과,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반수 정도를 차지하였다.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문제행동이 있는 영유아가 보육사 한 명당 2.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적 장애로 언어발달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지발달 26.1%, 외현화 문제행동 13.0%, 신체발달 10.9% 순이었다. 양육시설에서 평균적으로 1.4명 정도의 영유아가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0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

02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VI.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

본 연구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시설을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으로 규정하고 이상의 4가지 유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의 발달 및 양육지원 현황 등을 아동보육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4가지 유형의 아동보호시설 운영자(위탁가정 부모 포함) 및 종사자와의 면담, 유아애착표상 검사와 같은 유아 수행검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내용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제안하였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대원칙은 이러한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호필요아동에 관한 대원칙은 선진국과 한국이 다를 바 없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대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에서 국가와 사회가 보호필요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현상에 관한 다각적인 원인 분석 및 불일치한 지점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에 대한 마련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원칙으로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재고와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에서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영유아들을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아동보호시설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가. 가정과 같은 성장 환경 제공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일상적인 경험과 나눔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및 부모-자녀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정서적 안정감 등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의 기회가 부분적이거나 단절됨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하기도 함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드러냈다.

본 연구 결과,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다소의 불안은 나타내긴 했지만,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 뿐 아니라 해당 유아는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은 거의 표출하지 않았다. 많지 않은 사례여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시 유아가 다른 보호시설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양육 환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원가정이 있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영유아 유기 등으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위탁가정에서 이러한 영유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장기적이고 내실화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원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가정의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여야 하는 원인(미혼모, 부모의 이혼, 학대, 수감 등)에 대한 분석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영유아의 생애 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영유아가 원가정이란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가정 회복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고, 원가정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모니터링 되거나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영유아가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권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 친부모가 아동보호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데리고 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함을 보호시설 종사자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 아동의 의사는 무시되고, 때로는 원가정에 돌아가서 더 부정적인 상황이 되어 다른 시설 등으로 다시 맡겨지거나 아동이 이전에 있었던 기관 등을 통하여 힘듦을 호소하여도 방치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 필요 영유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가정과 아동 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원가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원가정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가정 복귀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과 개입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조건적인 원가정 복귀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가 원가정에 복귀해서 성장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국가가 개입하여 원가정의 문제가 극복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원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거나 해결 된 후 등 어느 시점이 영유아가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원가족으로 영유아가 복귀되기 전에는 부모와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유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경우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위탁할 수 있는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 위탁가정 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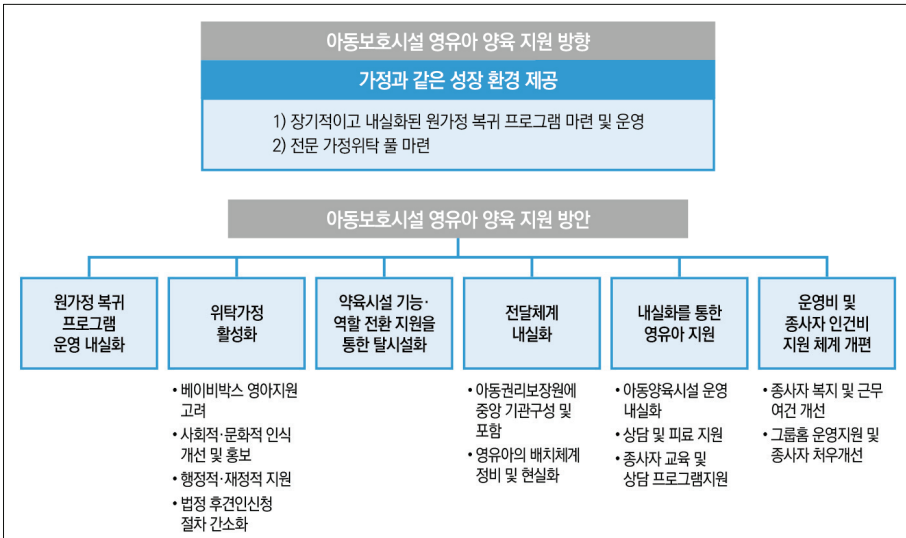
부모로부터의 유기, 학대, 부모의 수감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모가 돌보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영유아의 부모로부터 분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 정서적인 문제를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영유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이러한 영유아를 맡아서 돌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정 지원 및 영유아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가정 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탁가정에 대한 홍보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상시 일정 수준의 위탁가정 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정기적인 관리 감독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위탁가정을 모니터링하여 신뢰하며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가정 풀을 구축한다.

2.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하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VI-2-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가.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원가정 복귀 우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원가정에서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원가정에 복귀하기 전에 원가정의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원가정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웠던 요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관한 문제해결이 되어야 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

설정 및 모니터링을 포함시켜야 한다. 어느 시점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적절한 지 등에 대한 계획과 실천 단계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모의 폭력의 원인이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중독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영유아를 원가정으로 부터 분리 시켜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부모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영유아를 원가정으로 복귀 시키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해당 영유아를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이며,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문가, 공무원, 부모 및 필요시에는 영유아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사례 관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원가정 복귀의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영유아의 배치에 관한 책임이 시군구에 있는 만큼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이 내실화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해당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부서의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여 원가정 복귀를 위한 사례 관리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재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현 정부의 포용 국가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나. 위탁가정 활성화

본 연구에서 고찰했던 4가지 아동보호시설 유형 중, 가장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영유아가 성장할 수 있는 형태가 위탁가정 양육이다. 국가에서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순위로 위탁가정 배치를 제안하고 있음에도 위탁가정 양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위탁가정 양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다양한 원인 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 등을 포함하여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환경은 위탁가정으로 사료되어 다음에서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 지원을 위한 위탁가정 활성화

본 연구를 통하여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유기되는 영아가 보호필요아동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영아가 가능한 위탁가정 등으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 해당 부서에서 위탁가정 풀에 대한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 유기 영아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일시보호시설에서 영아가 보호되어야 할 경우에는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담당 복지사와 보조 인력 한 명으로 성인 두 명의 인력이 한 명의 영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돌봄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아 시기의 특성에 맞도록 함과 동시에 돌봄 인력의 소진을 막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유기로 인한 영아의 불안 등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초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한국의 경우, 혈연중심의 가족 문화를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가정에서 맡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위탁가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입양 전 위탁가정과 혼동하여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위탁가정에 대한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위탁가정 부모나 관련자들의 면담을 통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가정 위탁을 하고 있는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가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우리나라 아동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위탁가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입양의 경우에 비해 위탁가정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있음으로 인하여 양육자의 입장에서 좀 더 선호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위탁가정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사례비는 대체적으로 20만원 미만으로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실제 영유아를 위해 사용하기에 부족하기도 하고, 영유아의 미래를 위해 해당 비용을 저축하는 경우도 더러 많았다.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매년 영수증 처리 요구 등을 하는 경우도 지자체마다 있어서 이에 관한 불편함 등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위탁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호 필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위탁부모가 법적 권한 제한(법정 후견인이 아니면 영유아의 입원 및 수술 등에 친부모 동의를 얻어야 함) 및 복잡한 행정 절차(여권 마련 및 통장 개설 등의 어려움) 등으로 힘들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축적될 때, 위탁부모로서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주변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노출될 때, 위탁가정에 대한 주변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탁부모가 법적 후견인이 되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이들 부모에 대한 제도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위탁가정을 통한 돌봄 등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4) 위탁가정 부모의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의 간소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양육시설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양육시설의 장이 법정 후견인이 되는 절차가 간소한데 비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위탁가정 부모의 경우에는 법정 후견인이 되는 시간이 길게는 1년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아서 후견인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는다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는 질문 등으로 시간과 감정 소모가 많은 경험을 하는 등 가정 위탁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정 후견인이 되지 않으면 영유아가 입원이나 수술 등을 해야 할 때 친부모와 연락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통장 개설 및 여권 마련 등을 할 수 없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으로 영유아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에 제약이 가해지는 현실이다. 이를 간소화하고 간편화할 때 위탁가정 등이 활성화 될 것이다.

다. 양육시설의 기능과 역할 전환 지원을 통한 탈시설화

한국의 경우, 6.25 전쟁 등으로 인한 고아 발생 및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아동을 돌보아 왔던 곳이 양육시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양육시설이 오랫동안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포함한 아동 양육을 통하여 전수되어 온 경험과 경륜을 완전히 부인하기 보다는 이들 시설이 지역사회의 복합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정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놀이 및 도서 공간,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제공, 지역사회의 쉼과 휴식 공간 제공 및 다양한 부모교육 제공의 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을 매입하여 일부 시설 등을 개조 및 증축을 통하여 이를 실현한다. 현재 아동보호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시설을 축소시킬 수 있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위한 다기능적인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를 통해 탈시설화로 지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양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일했던 인력 등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흡수하여 새롭게 구축된 복합시설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보다 건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일부 양육시설에서는 스스로 보호필요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다른 기관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들이 시설에 한정되어 성장하기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도록 하고 있음을 본 연구의 양육시설 면담을 통해서 언급되었던 바 있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이후 청소년기를 지나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이 양육시설의 제한점임을 양육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드러난 바 있다. 양육시설의 영유아들이 부모와의 장보기, 부모와의 밥상 대화 등의 부재로 인하여 이곳에서 성장한 아동의 경우 반찬 이름 및 가격 등을 모를 뿐 아니라 혼자 물건 사는 것 등과 같은 일상적인 소소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이는 이후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립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여겨진다. 한 위탁가정모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모역할 습득 기회 부족을 안타깝게 여겨

시설에서 성장하는 유아를 본인의 가정에서 위탁해서 돌보고 있다고 한 바 있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육시설이 영유아의 발달에서 중요한 부모역할에 대한 습득 및 부모-자녀 관계 경험 부재 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는 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탈시설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에 그동안 한국 역사에서 보호필요아동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던 시설 등을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흡수하여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라. 아동보호시설 전달체계의 내실화

아동보호시설의 전달체계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보호시설 전달체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이에 현 정부에서 보호필요아동을 위해 새롭게 체계를 갖춘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양육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영유아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전 배치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올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1)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양육시설 중앙 기관 구성 및 포함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7월에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들어서 아동보호 체계를 하나의 통합 기관 형태로 만들어서 취약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있는 입양 및 학대 관련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통합된 기관에 포함되어 관리 및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보호필요 영유아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을 전담하는 중앙기관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형태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관한 조속한 해결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양육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주요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든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중앙 아동양육시설 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반드시 포함되어 한다. 이를 통하여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지체 수준에서 운영

됨으로 인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본 연구에서 많이 언급한 바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양육시설이 늦게 포함될수록 중앙 차원에서 관리 및 지원체계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영유아의 배치 체계 정비 및 현실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장이 지자체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조정하여 있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의는 위원회의 모임 일정 정하기 등의 어려운 점으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영유아의 배치는 일시보호시설에서의 관련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영유아의 배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방치되는 시간 지체를 막기 위해 편의 위주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특히, 위탁 가정과 같은 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보호필요 영유아가 발생하였을 때 준비된 위탁가정 풀이 없음으로 인해 주로 양육시설로 배치되거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마. 아동보호시설 내실화를 통한 영유아 지원

1) 아동양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가) 보육사 배치의 현실화

본 연구 결과, 영아 대상 보육사 배치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보육사들이 영아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유, 목욕, 기저귀 갈기 등과 같은 영아 돌봄의 특성 상 성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임에도 유아에

비해 영아를 돌보는 보육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아의 발달권과 보육사의 노동권 보호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임을 직시하게 된 결과였다. 이는 생애 초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행동과 치료를 요하는 아이로 키우고 있다는 현실을 사회가 직시하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지자체 수준에서 지원되는 지원비를 국비에서 일부 혹은 전액 보조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않도록 관리 감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영유아 담당 보육사 배치 전 사전교육 실시 의무화

현재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육사가 양육시설에 배치되는 경우, 몇 시간의 교육 등을 통하여 바로 양육 현장에 투입되거나 심지어는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양육 현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음을 본 연구의 심층 면담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특히 영아 담당 보육사의 경우에도 아이를 낳아보거나 키워본 경험이 없는 20~30대의 보육사들이 바로 영아를 양육하도록 하는 실정이다. 이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 영아를 누군가를 돌봐야 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영아의 울음 및 영아의 상태 등에 관한 발달 지식이 없이는 민감하게 영아의 돌봄과 발달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영아와 보육사에게 모두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영유아에게 양육 담당을 위해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현장 보조 실습 등을 포함하여 사전 교육을 최소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육사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촘촘한 방안 마련을 통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영유아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의 내적 표상 검사 및 면담과 조사 등의 결과를 통하여 살펴보았던 영유아 발달 현황에서 알 수 있었듯이 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많은 영유아들이 발달적 지연, 문제 행동, 애착 형성 문제 등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3)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종사자(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부모들도 양육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종사자나 위탁가정 부모들의 경우에는 영유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부재의 상황에서 영유아를 돌보아야 하고, 가정위탁이 아닌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여러 아이를 돌보는 데서 오는 피로와 소진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부모와의 분리된 경험이 있는 영유아를 돌봄으로 인한 힘듦과 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결되지 않을 시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소진을 해결하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종사자와 부모들은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영유아의 특성 이해 및 적절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이 있음을 아동보육사 대상 조사 및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특성 등에 관한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일부 위탁가정 부모는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각 대상별에 따른 적절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면 보다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부모)를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

지역의 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에서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부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아동보호시설 유관단체에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및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용 및 대체 인력 지원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탁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위탁 외 조부모 위탁과 친인척 위탁의 경우에도 아동 발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제공 및 양육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

바.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체계 개편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의 종사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없으면 그 대가는 돌봄을 받는 영유아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동보호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조로 가는 한 지원 비용의 개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현재의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 비용 대신 국비로 전환하든지 혹은 국비에 일부 지자체 비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중에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아동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위탁가정 부모들의 경우 대부분 영유아 발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영유아를 돌보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많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돌보고 있는 영유아 입장에서는 하루 양육자가 3번이나 변경되는 상황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호소하였다. 실제 이에 관하여 아동보육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 52시간의 원칙 고수보다는 기관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종사자와 부모의 소진이나 피로감 누적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 근무여건이나 처우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의 경우 3교대 근무 대신 보조인력 배치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 52시간이 애착형성의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의 소진 등을 막기 위한 근무 여건 향상 및 복지를 위해서 보조 인력 배치 등의 추가 인력 배치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국가에서 탈시설화를 목표로 시설에 비해 좀 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허용하고 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양육시설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국가가 탈시설을 목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하였다면 이러한 곳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동생활가정에 종사하는 성인 인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해서이기도 하며 더 중요한 측면이 영유아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시설은 운영자가 제공하도록 하고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수급비 지원을 통한 생활비 등을 하고 있는바 일정 수의 영유아가 충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구조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영유아 수급비 지원의 경우에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친부모가 영유아 수급비를 빼내어 가도 막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다.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인력들은 양육시설 종사자와 비슷한 노동 강도로 일하면서 급여는 최저임금수준으로 받고 있는 상황임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만과 갈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급여가 전적으로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특성 상 지자체마다 다른 급여 금액도 불평등 해소를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불만과 갈등은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특성 상, 아이들을 위한 돌봄뿐 아니라 세탁, 음식 만들기, 청소 등의 일상적인 일과 행정적인 업무 처리 등을 해야 함으로 인하여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대한 불만과 혼란으로 기피하는 직종이 되어 종사자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사실이 관련자 면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보호가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은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한 영유아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이다. 이에 비해 실제 현실에서는 가사노동에 준하는 일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이직 등이 많다는 점은 사회와 국가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

고 여겨진다. 가사 노동 제공 인력 지원 등을 통하여 이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회복, 중요한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직업 정체성 및 만족도 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0).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2003).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은경·도현심·김민정·박보경(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김형태·노혜련·김진석·이수천·조소연·이유진(2017).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기독대학교.
- 노충래·정익중·강현아·오승환·박은혜·신지현...정한나(2015).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이화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
-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2018a). 2018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8b).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보건복지부(2018c). 『요보호아동현황보고』 통계정보보고서.
- 보건복지부(2019a).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b).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신혜원(2017). ADHD 성향 유아와 일반 유아의 이야기 꾸미기를 통한 내적 표상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6(6), 559-573.
- 우석진·노충래·강현아·정익중·전종설·이혜경...노하나(2015). 대안양육제도 양육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지경제연구소.
- 장인협·오정수(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중앙입양원(2019). 외국아동의 국내로의 국제입양 관련 헤이그입양협약 이행준비 방안 모색 세미나(2019. 2. 26 개최).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15). *Making Meaningful Con-nections: 2015 Prevention Resource Guid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7-18*. Child welfare series no. 70. Cat. no. CWS 65. Canberra: AIHW.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 *The MacArthur Story-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 Bretherton, I., & Oppenheim, D. (2003).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liability, validity, and reflections about meaning,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 (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and parent-child narratives* (pp. 55-80). Oxford University Press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How the child welfare system work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6). *Concurrent Planning for Permanency for Childre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Foster care statistics 2016*.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8). *Placement of children with relativ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Protecting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s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 Retrieved from https://www.dss.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child_protection_framework.pdf

- Del Valle, J. F. (2015). Out-of-home care in Europe: An overview. *Rec-emption and Living with Families*. <https://engi.eu/wp-content/plugins/download-attachments/includes/download.php?id=400>
- Fernandez, E., & Atwool, N. (2013). Child protection and out of home car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connections Australia and New Zealand. *Psychosocial Intervention*, 22, 175-18.
- Harder, A. T., Zeller, M., López, M., Köngeter, S., & Knorth, E. J. (2013). Different sizes, similar challenges: Out of home care for youth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Psychosocial Intervention*, 22(3), 203-213. <https://dx.doi.org/10.5093/in2013a24>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7). *Kids in Care June 2017*.
- Nakatomi, T., Ichikawa, S., Wakabayashi, H., & Takemura, Y. C. (2018). Children and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versus traditional families: A quality of life comparison in Japan.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6(1), 151. <http://dx.doi.org/10.1186/s12955-018-0980-1>.
- OECD (2019). *Changing the odds for vulnerable children: Building opportunities and resilience*.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a2e8796c-en>
- Oppenheim, D., Emde, R. N., & Warren, S. (1997).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Their development and association with child and mother adaptation. *Child Development*, 68(1), 127-138.
- Peeples(2019). *Getting Paid to Be a Foster Parent: State-by-State Monthly Guide*. <https://wehavekids.com/adoption-fostering/What-does-being-a-foster-parent-really-pay> (2019.10.30. 인출)
- Petersen, A., Joseph, J., & Feit, M. (2014). *New Directions in Child Abuse and Neglect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Robinson, J., Mantz-Simmons, L., Macfie, J., Kelsay, K., Holmberg., &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 (2004). *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Steering Committee for the Review of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2019). Retrieved from <https://nla.gov.au/nla.party-642752>

Warren, S. L., Oppenheim, D., & Emde, R. N. (1996). Can emotions and themes in children's play predict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1331-1337.

[홈페이지]

보건복지부(2018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2019.6.20.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2.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1&CONT_SEQ=347826 (2019.3.11. 인출)

뉴질랜드 아동 복지부 홈페이지. Financial help. <https://www.orangatamariki.govt.nz/caring-for-someone/financial-help/> (2019.11.25. 인출)

뉴질랜드 아동 복지부 홈페이지.

① Types of caregiving.

<https://www.orangatamariki.govt.nz/caring-for-someone/types-of-caregiving/> (2019.11.25. 인출)

② Financial-help

<https://www.orangatamariki.govt.nz/caring-for-someone/financial-help/> (2019.5.9. 인출)

뉴질랜드 법무부 홈페이지. Ministry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t.nz/> (2019.11.25. 인출)

미국 아동국 홈페이지. Children's Bureau. <https://www.acf.hhs.gov/cb> (2019.11.25. 인출)

빅토리아 주 사회서비스부 홈페이지. <https://services.dhhs.vic.gov.au/support-home-based-carers-victoria> (2019.12.14. 인출)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2018.3.31.).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including adoptio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

- 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57922/Children_looked_after_in_England_2018_Text_revised.pdf (2019.12.5. 인출)
- 호주 사회서비스부 홈페이지.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 (2019.11.25. 인출)
- 퀸즈랜드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qld.gov.au/community/caring-child/foster-kinship-care/information-for-carers/money-matters/carers-allowances> (2019.12.14. 인출)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https://www.childwelfare.gov/>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2019.3.11. 인출)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7). Kids in care. <https://www.msdc.govt.nz/about-msd-and-our-work/publications-resources/statistics/cyf/kids-in-care.html> (2019.11.25. 인출)

[법률]

- 아동복지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27호, 2019. 6. 11.,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6호, 2019. 6. 12., 일부개정]
- 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 (1989)



Abstract

Individualized Care Support Plans for Vulnerable Children (V): Current Statu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Services and Plans for Future Service Provision

Jeong Rim Lee, Jung Won Choi, Yoonkyung Choi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current statu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services(temporary care facility; institution; group-home; and foster care)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on future service provision.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children's experiences and needs, with a view to making valuable recommendations for future service design and delivery that accommodate the specific need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number of different research methods. First,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us of, and programs and policies for children in out-of-home care were reviewed to provide a critical overview of the topic.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care providers working at child care institutions, where most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are placed in Korea. 263 care provid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o give insights into the lives of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Thir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current statu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service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1 care providers across different types of out-of-home. Finally, MSSB((MacArthur Story Stem Battery) was conducted to assess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15 children in all four types of out-of-home care services.

The study revealed child-to-carer ratio for infants exceeded the legal

standard in many child care institutions. Most participants of the study, regardless of the service type, identified abandonment(baby-box) as the primary reason children get placed in out-of-home care services. It was suggested that children's language, learning and emotional development can be negatively influenced by being placed in out-of-home care services. Difficulties around the process of placement, especially to foster care, was criticized by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Participants argued that in order to reinforce foster care as intended, there is an essential need for additional support, as well as improving the legal processes around it. Need for consistent life-long case management for the children, and systematic supports for their families to achieve sustainable family reunification were also communicated. Nevertheless, staff shortage and financial difficultie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challenges that most services are faced with.

Drawing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fundamental basis for care provision must be around providing family-like environment for children in need of out-of-home care. Priority needs to be given to supporti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o care for their children in their own homes. For those who cannot return to their own homes, they should be placed in the most family-like setting that provides the environment and care needed to meet their best interest. To do so, current process around placement needs to be restructured so that children can be placed in safe hands without delay, and continuous supervision must take place. Children in out-of-home care must be supported with professional, comprehensive therapy and counselling to achieve healthy development. Last but not least, care providers in all out-of-home care services must be systematically supported so that they can provide sufficient care for the children in need.

Keyword: Vulnerable Children; Out-of-Home Care; Child Care; Child Protection;



돌봄취약계층 아동

문1. 현재 귀하께서 돌보고 있는 아동은 모두 몇 명입니까?

아동 연령별로 인원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 연령 아동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구 분	인원 수
1. 만 0세(0~11개월)	()명
2. 만 1세(12~23개월)	()명
3. 만 2세(24~35개월)	()명
4. 만 3세	()명
5. 만 4세	()명
6. 만 5세	()명
7. 만 6세	()명
8. 만 7세 이상	()명
9. 영유아 합계	()명
10. 전체 아동 합계	()명
11. 영아 수	()명
12. 유아 수	()명

문2. 현재 귀하께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가 현 시설에 온 시기는 언제입니까?

입소 당시 아동의 나이별로 인원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 연령 아동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구 분	인원 수
1. 만 0세(0~11개월)	()명
2. 만 1세(12~23개월)	()명
3. 만 2세(24~35개월)	()명
4. 만 3세	()명
5. 만 4세	()명
6. 만 5세	()명
7. 만 6세	()명
8. 합계	()명

**문3. 현재 귀하께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가 현 시설에 온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아와 유아 각각 순서대로 2개씩, 보호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1. 사망	1. 사망
2. 이혼	2. 이혼
3. 질병	3. 질병
4. 가출	4. 가출
5. 수감	5. 수감
6. 학대(신체, 정서, 성적, 방임)	6. 학대(신체, 정서, 성적, 방임)
7. 경제적 어려움	7. 경제적 어려움
8. 미혼출산	8. 미혼출산
9. 베이비박스	9. 베이비박스
10. 베이비박스 외 유기	10. 베이비박스 외 유기
11. 기타()	11. 기타()
12. 없음	12. 없음

**문4. 현재 귀하께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의 주된 이전 보호 유형은 무엇입니까?
영아와 유아 각각 순서대로 2개씩 응답해 주십시오.**

※ 가정위탁에는 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양육, 일반가정위탁양육이 모두 포함됩니다.

영아	유아
1. 가정위탁	1. 가정위탁
2. 그룹홈	2. 그룹홈
3. 타 양육시설	3. 타 양육시설
4. 일시보호시설	4. 일시보호시설
5. 입양	5. 입양
6. 이전 보호시설 없음	6. 이전 보호시설 없음
7. 기타()	7. 기타()
8. 없음	8. 없음

문5. 현재 귀하께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 중 일반적인 발달이 느리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5-1
2. 없다 → 문5-3

문5-1. 일반적인 발달이 느리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영유아는 몇 명입니까?

()명

**문5-2. 일반적인 발달이 느리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주로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장 주된 영역부터 순서대로 최대 3가지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아동이 1명이고 문제 영역도 1가지인 경우는 1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인지발달
2. 정서발달
3. 사회성발달
4. 언어발달
5. 신체발달
6. 내현화 문제행동(우울, 불안, 강박 등)
7. 외현화 문제행동(공격적인 행동, 거짓말, 절도, 소리지르기 등)

문5-3. 현재 귀하께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 중 재활프로그램(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등)을 받고 있는 아동은 몇 명입니까?

()명

문6. 현재 귀하께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 중 어린이집, 유치원 이외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6-1
2. 없다 → 문9

문6-1. 어린이집, 유치원 이외 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몇 명입니까?

()명

**문7. 현재 귀하께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유치원 외 사교육 비용의 주된 출처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항목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가지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잘 모르신다면, 원장님께 확인하신 후 응답해 주십시오.

1. 후원금
2. 기관 운영비(보조금)
3. 학원비 감면
4. 학원비 면제
5. 기타()

**문8. 현재 귀하께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의 사교육 비용에 대하여 귀 기관이 느끼는 부담 수준은 어떠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2.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 적당하다.
4. 다소 부담된다.
5. 매우 부담된다.



원가족 교류

※ 돌보고 있는 영유아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9. 현재 귀하께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는 원가족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1. 교류하고 있다. → 문10
2. 교류하지 않는다.

문10. 영/유아는 주로 누구와 교류하고 있습니까?

1. 어머니
2. 아버지
3. (원외에 거주하는)친형제자매
4. 조부모
5. 친인척
6. 기타()

문11. 영/유아는 원가족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1. 1년에 1번 정도
2. 6개월에 1번 정도
3. 3개월에 1번 정도
4. 1달에 1번 이상

문12. 영/유아는 원가족과 교류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원가족이 시설을 방문함
2. 아동이 명절 등에 원가족을 방문함
3. 이메일/전화/SNS로만 교류함
4. 기타()

문13. 영/유아는 부모님과 연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1. 필요 시 바로 연락이 된다.
2. 연락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
3. 연락이 안된다.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문14. 양육시설 아동을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정책별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정책 내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1. 아동 양육비용 지원					
2. 유치원, 어린이집 추가 부담금					
3. 아동 입소 경로 체계					
4.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 아동 치료프로그램 배우처 이용					
6. 보육사의 보호자로서의 법적 권한 (법정후견인 제도 등)					
7. 아동복지법상 법정 인력배치 기준					
8. 아동양육시설 생활공간 기준					
9. 아동 권리보장					
10. 양육시설 종사자 권리보장					
11. 원가족지원체계					
12. 대체인력(교육이수, 휴가, 질병 등)					
13. 시설 평가기준					

문15. 양육시설 아동을 위한 다음의 국가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동 양육비용 지원
2. 유치원, 어린이집 추가 부담금
3. 아동 입소 경로 체계
4.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 아동 치료프로그램 바우처 이용
6. 보육사의 보호자로서의 법적 권한(법정후견인 제도 등)
7. 아동복지법상 법정 인력배치 기준
8. 아동양육시설 생활공간 기준
9. 아동 권리보장
10. 양육시설 종사자 권리보장
11. 원가족지원체계
12. 대체인력(교육이수, 휴가, 질병 등)
13. 시설 평가기준

문15-1. 위에서 제시한 13가지 정책 외에 양육시설 아동을 위한 국가 정책 관련 개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문16. 귀하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지원 및 연계를 위해서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유연성 있게 근무시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17. 귀하는 현재 영유아를 돌보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

문17-1. 영유아 돌봄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유아가 더욱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종사자 현황

문18. 귀하의 주된 근로시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8시간(미만)(주간근로)
2. 8시간(미만)(저녁근로)
3. 2조 격일제
4. 2조 2교대제
5. 3조 2교대제
6. 3조 3교대제
7. 그 외 교대제()
8. 기타()

문19. 영유아 돌봄 및 보육교육을 위하여 국가가 아동양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매우 충분하다

문20. 현재 귀하의 업무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 매우 과중하다
2. 과중하다
3. 보통이다
4. 적정하다
5. 매우 적정하다

문21. 현재 귀하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문22. 귀하께서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관으로 오기 전 이직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보육사로서의 시설 이직에 한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있다 총 이직 횟수()번
2. 없다

문23.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종사자 필수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까?

1. 있다 -> 문23-1
2. 없다 -> 문24

문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종사자 필수교육 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최근 1년 이내 총()회
2. 없다

문24. 보육사로서 근무 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배경 문항

배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배문2. 귀하의 만나이 기준 연령을 응답해 주십시오.

만 ()세

배문3. 보육사로서 귀하의 경력을 응답해 주십시오.

※ 만약 1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라면 1년이라고 응답해 주십시오.

1. 관련 업무 경력	총 ()년
2. 현재 기관에서의 경력	총 ()년

배문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1. 고졸 이하
2. 2~3년제 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 이상

배문5. 최종학력 기준, 귀하의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1. 사회복지
2. 심리학
3. 유아교육
4. 아동 보육
5. 교육학
6. 기타()

배문6.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사회복지사 ()급
2. 보육교사 ()급
3. 유치원교사 ()급
4. 기타()
5. 없음

부록 2. 면담 질문지(5종)

가정위탁센터 담당자 면접 질문지

1. 담당자 인적사항

- 귀하의 경력은?
- 귀하의 전공은?
-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2. 기관 현황

- 가정위탁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 가정위탁 현황은?(조부모, 친인척, 일반 위탁 비율 정도)
- 위탁가정 선정 및 배치 기준은?
- 위탁가정 관리 및 교류 정도는?
- 가정위탁기관으로 아동이 오게 되는 주된 배경 및 경로는?

3. 위탁가정 애로 사항

- 위탁가정에서 영유아 양육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 위탁가정에서 돌보던 영유아가 다시 가정위탁센터로 돌아오는 경우 및 대처 방안은?

4. 시설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 시설 운영비의 내용 및 금액은?
- 시설 운영비에 대한 만족도는?
- 종사자 급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에 관한 의견은?
- 시설 운영 관련 법, 제도 및 전달체계 등에 관한 의견은?

위탁가정 대상 면접 질문지

1. 위탁가정 특성

- 위탁 아동과의 관계는?
- 위탁 아동을 돌본 시기 및 기간은?
- 위탁 아동을 맡게 된 배경은?

2. 영유아 양육 현황 및 애로 사항

-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여부, 기타 학원 이용 여부 및 학원 종류 등)
- 영유아 발달 상황(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은?
- 원가정 교류 여부 및 교류 정도는?
- 영유아 양육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사항은?

3. 위탁가정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 가정위탁센터와의 교류 여부 및 빈도
- 위탁가정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는?

아동양육시설 기관장 면접 질문지

1. 기관장 인적사항

- 귀하의 경력은?
- 귀하의 전공은?
-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2. 기관 현황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총 몇 명? 영유아는 총 몇 명?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현 기관에 오게 된 주된 배경은?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배치 받게 된 주된 경로는?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사 수는?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사의 교대 근무 유형은?

3. 시설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아동양육시설 기관장)

- 시설 운영비의 내용 및 금액은?
- 시설 운영비에 대한 만족도는?
- 시설 운영 관련 법, 제도 및 전달체계 등에 관한 의견은?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면접 질문지

1. 아동보육사 인적사항

- 귀하의 경력은?
- 귀하의 전공은?
-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2. 영유아 양육 현황 및 애로 사항(아동양육시설 보육사)

-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여부, 기타 학원 이용 여부 및 학원 종류 등)
- 영유아 발달 상황(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은?
- 원가정 교류 여부 및 교류 정도는?
- 영유아 양육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사항은?

3. 시설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 종사자 급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에 관한 의견은?

그룹홈/일시보호시설 아동보육 담당자 면접 질문지

1. 아동보육 담당자 인적사항

- 귀하의 경력은?
- 귀하의 전공은?
-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2. 기관 현황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총 몇 명? 영유아는 총 몇 명?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현 기관에 오게 된 주된 배경은?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배치 받게 된 주된 경로는?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사 수는?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사의 교대 근무 유형은?

3. 영유아 양육 현황 및 애로 사항

-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여부, 기타 학원 이용 여부 및 학원 종류 등)
- 영유아 발달 상황(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은?
- 원가정 교류 여부 및 교류 정도는?
- 영유아 양육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사항은?

4. 시설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 시설 운영비의 내용 및 금액은?
- 시설 운영비에 대한 만족도는?
- 종사자 급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에 관한 의견은?
- 시설 운영 관련 법, 제도 및 전달체계 등에 관한 의견은?

부록 3. MSSB 주요 범주 및 점수 체계

〈부록 표 3-1〉 유아의 내적 표상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 코드의 주요 범주 및 조작적 정의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코드범주	하위항목	조작적 정의 및 예	점수화
공감/온화 (Empathy/ Warmth)	공감/도움 (Empathy/ Helping)	등장인물 혹은 유아가 행동을 통해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동일시하거나 이해를 드러낸다. 그리고 유아가 희생자와 무엇인가를 공유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키는 행동으로 희생자를 도움으로써 희생자의 주의를 다른 것으로 돌리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반응이 적절하거나 조절된 경우 2점: 반응이 과하고 꾸민 듯 할 때
	제휴 (Affiliation)	둘 이상의 인물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예: 엮질러진 주스를 아빠와 유아가 함께 치웠다.	
	애정 (Love)	안기, 보듬하기, 칭찬하기 등의 애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포함한다. 예: 여행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듬을 해주었다.	
	보상/죄의식 (Reparation/ Guilt)	죄의식을 보이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다시 고치려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언어적일 수도 있고 비언어적일 수도 있다. 예: 약장을 열고 약을 꺼내 사용한 후, 어머니가 돌아오면 스스로 어머니에게 말하고 다시는 안 만지겠다고 말하였다.	
	긍정적인 부모표상 (Positive Parental Representation)	실제 또는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돌봐주고, 달래주고 먹여주며 자녀의 일을 도와주는 행동을 포함한다. 예: 어머니가 자녀에게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해당 이야기 있음
불안 (Performance Anxiety)	대답 회피 (No Answer)	제시된 이야기에 대해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다. 실험자가 제시한 언어적 자극에도 대답하지 않는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해당 이야기 있음
	검사자에게 반응 없음 (No Response)	유아가 검사자를 응시하지 않고 물건도 바로 보지 않는다. 즐거운 표현도 없고 약간의 부정적인 표현만 있다.	
	불안 행동 (Anxious Behavior)	걱정이나 우려를 나타내는 신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다리를 떨거나 몸을 흔들거나 빨기, 입술이나 물건 씹기 등과 같이 자신을 달래는 행동을 한다.	0점: 불안 행동이 없다 1점: 한 번 이상의 불안 행동이 있다. 2점: 두 번 이상의 불안 행동이 있다.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코드 범주	하위항목	조작적 정의 및 예	점수화
회피/위축 (Avoidant/ Withdrawal)	공감/도움의 수동적 거부 (Refusal of Empathy/ Help Passive)	도움이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캐릭터에게 가지만 그 캐릭터는 반응하지 않는다. 예: 친구와의 싸움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부모는 반응하지 않는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해당 이야기 있음
	가족 배제 (Exclusion Family)	이야기 속에서 가족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경우이다.	
	부모와의 분리거부 (Refusal of Seperation)	유아가 부모로부터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체크된다.	
	갑작스런 수면 (Sudden Sleep Onset)	중요한 정서적 주제/표현을 포함한 에피소드를 할 때 중반 혹은 끝에 갑자기 잠이 든다고 한다.	
	주제이탈놀이 (Off-Topic Play)	유아가 인형이나 소품을 가지고 놀이를 하다가 아예 조작적인 놀이에 빠져든다. 이야기 완성 과제를 진행하지 않는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이야기하지 않고 하는 조작놀이 2점: 주제를 벗어난 대화를 하는 조작놀이
	해리적 행동 (Spacing Out)	멍한 표정으로 검사자를 쳐다보거나 다른 세계에 빠져있는 듯 하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해당 이야기 있음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Dysregulated Aggression)	공격성 (Aggression)	대인간 공격적 행위들이 포함된다. 예: 열쇠 이야기에서 부모가 서로 때린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언어적 공격성 2점: 신체적 공격성 3점: 정당한 이유 없는 비전형적 공격성 4점: 아동이 성인에게 가하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5점: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경우
	개인적 상해 (Personal Injury)	한 캐릭터가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상해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해당 이야기 있음
	위험 (Danger)	이야기 중에 위험스런 장면이 나오거나 그 위험이 더 악화된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제시된 이야기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야기 한다. 2점: 새로운 위험이 생기거나 더 악화시킨다.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코드 범주	하위항목	조작적 정의 및 예	점수화
	파괴 (Destruction)	이야기를 하며 물건이 파괴되는 장면을 이야기한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아동이 무엇인가를 파괴한다. 2점: 주변 물건이 모두 파괴되면서 혼란스런 상황이 묘사된다.
	부정직 (Dishonesty)	캐릭터가 거짓말을 하고, 훔치고, 속이고 하는 경우이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해당 이야기 있음
	갈등의 고조 (Escalation of Conflict)	처음 제시된 공격성 수준을 넘어 공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이다.	
	부정적인 이야기 종결 (Negative Final Content)	마지막 반응이 부정적인 것 뿐 아니라 중간 정도의 당황스러움이나 처벌도 포함한다.	
	부적절한 유아의 힘 (Child Power)	유아가 자신을 부모나 작은 어른처럼 나타내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이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아동이 자신을 부모나 작은 어른처럼 묘사한다. 2점: 아동이 자신이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고 묘사한다.
	검사자 통제 (Control)	이야기 하는 동안 유아가 검사자의 행동이나 제시를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0점: 해당 이야기 없음 1점: 해당 이야기 있음
정서적 통합 (Emotional Integration)	기쁨 (Joy)	유아가 기쁨 혹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말을 하거나 신체적 흥분이 동반된 기쁨의 표시를 한다.	0점: 중립적인 표현을 한다. 1점: 부분적인 혹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미소만이 보인다. 2점: 신체적 흥분을 동반한 활발한 웃음이나 즐거운 비명 등이 포함된다.
	슬픔 (Sadness)	유아가 슬픔을 나타내는 말을 하거나 입이 처지면서 슬픔을 표현하거나 운다.	0점: 중립적인 표현을 한다. 1점: 슬픔을 뜻하는 말을 하거나 입이 아래로 처지는 등의 표현을 한다. 2점: 보다 강하고 지속적으로 슬픔을 표현한다.
	분노 (Anger)	유아가 분노를 나타내는 말을 하거나 스타카토식의 목소리로 표현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0점: 중립적인 표현을 한다. 1점: 인상이 찡그러지거나 스타카토식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2점: 보다 긴 시간 스타카토식으로 말하고 울음을 포함하는 심한 분노를 표현한다.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코드 범주	하위항목	조작적 정의 및 예	점수화
	디스트레스 (Distress)	유아의 목소리가 흔들리거나 위축된 모습 보이거나 두려움을 표시한다.	0점: 중립적인 표현을 한다. 1점: 눈이 커지고 눈썹이 올라가는 등 약간의 두려움을 표현한다. 2점: 아동의 부정적인 소리가 확장되고 격해지고 완전한 울음을 울 정도의 두려움을 표현한다.
	염려 (Concern)	유아가 입을 열고 아래를 쳐다보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	0점: 중립적인 표현을 한다. 1점: 얼굴표정이 서서히 변하고 입이 살짝 열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염려를 표현한다. 2점: 보다 긴 시간동안 염려의 표현을 한다.
정서적 통합 (Emotional Integration)	일관성 (Narrative Coherence)	유아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논리적 순서로 문제를 다루고 얼마나 풍요롭게 이야기하는지를 본다.	0점: 반응이 없거나 “몰라요”라고 대답한다. 1점: 일관적이지 않고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 오지 않는다. 2점: 주어진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이야기의 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갈등은 다루지 않는다. 3점: 갈등을 이해한 듯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야기의 종결도 하지 않는다. 4점: 제시된 부분을 변화시키면서 갈등을 다루나 비일관적인 전환이 있다. 5점: 보다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갈등을 간접적으로 다룬다. 6점: 최소한으로 갈등을 다루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비 일관적이다. 7점: 최소한으로 갈등을 다루나 조각난 이야기들로 엮어진다. 8점: 정서적으로 약간 풍부한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모순된다. 9점: 정서적으로 약간 풍부한 이야기를 하나 모순되지 않는다. 10점: 매우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정서적으로 풍부하다.

연구 협력 진

신혜원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